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학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인정투쟁의 중일관계
: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 분석
(1949-1972)

정 치 외 교 학 과
오 승 희
2 0 1 6

인정투쟁의 중일관계
: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 분석
(1949-1972)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 치 외 교 학 과 오 승 희

오 승 희 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 도 교 수 최 은 봉 _____

심 사 위 원 이 원 덕 _____

서 승 원 _____

민 병 원 _____

윤 지 환 _____

최 은 봉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B. 분석대상과 기존연구 검토	2
C.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1
II. 주요 개념과 연구의 분석틀	13
A. 인정투쟁	13
B. 국가 차원에서의 인정투쟁	23
C.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	28
D. 본 연구의 분석 틀	39
III. 사례 1: 샌프란시스코, 1951-1952	42
A. 문제제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국의 어느 정부를 초청할 것인가?	42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이념대립형	46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의 권리승인	56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다중해석	61
E. 소결	65
IV. 사례 2: 도쿄, 1962-1964	67
A. 문제제기: 도쿄올림픽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할 수 있을까?	68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지역협력형	75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	88
D. 외교적 위선: 쌓아가기, 경계짓기	93
E. 소결	95

V. 사례 3: 뉴욕, 1970-1971	97
A. 문제제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98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103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 중화민국 권리존중	116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118
E. 소결	121
 VI. 사례 4: 베이징, 1972	 123
A. 문제제기: 일화평화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 ...	123
B. 일본의 인정투쟁: 국제규범형 X 역사문화형	125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 권리확인	135
D. 외교적 위선: 다중해석, 미뤄두기	145
E. 소결	149
 VII. 결론	 150
 참 고 문 헌	 156
 부록 1. 중일관계 기본 연표 (1949-1972)	 179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관련 자료	186
부록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외교관계 수립현황	189
 Abstract	 195

표 목 차

표 I-1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존연구 유형	5
표 II-1 호네트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19
표 II-2 연구자별 인정, 불/비인정 개념 비교	22
표 II-3 일본의 중국 인식 과정 유형 분석	31
표 II-4 자기정당화의 표상 유형	34
표 II-5 일본 자기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외교의 기술	37
표 III-1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국가 (1949-1954)	43
표 III-2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1952년)	58
표 V-1 연대별 중화인민공화국 국교수립 국가/정부 수	98
표 V-2 1970년대 일본 내 대중 접근의 다양한 입장	110
표 VI-1 중일공동성명 관련 주요 회의 (1972년)	136
표 VI-2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일중공동성명)	136
표 VII-1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중일 인정단계	154

그 립 목 차

그림 II-1 인정, 불/비인정의 개념화: 영역과 행위	21
그림 II-2 전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정당화 발생 원인	33
그림 II-3 텍스트 분석: 1957~1973년판 외교청서 중 중국 관련 내용	35
그림 II-4 본 연구의 분석틀	40
그림 III-1 1951-1952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66
그림 IV-1 1964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95
그림 V-1 1971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122
그림 VI-1 전쟁상태 종료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종료로의 조정 과정	140
그림 VI-2 1972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149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전후 외교정책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국가 승인을 둘러싼 정치성에 주목하고, 승인을 확대한 인정 개념으로 전후 중일관계를 설명하였다.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이 중국 승인 정책에 미친 영향을 네 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의 국제규범을 중시하는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중국 인정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인정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이상적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권 회복과 강화를 내세우는 대내적 자기정당화를 강조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중시하겠다는 대외정당화도 일반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자기정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외교적 위선은 패전국 일본의 인정투쟁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낸다.

일본의 자기정체성은 주권국가라는 이상적 자아와 패전국으로서 제한된 주권국가인 현실적 자아의 간극을 좁히려는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확인된다. 또한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라는 타자가 가진 ‘하나의 중국’ 주장과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외압과 기회 사이의 간극이 중첩되면서 보다 복잡한 사고과정을 요구한다. 전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괴리는 일본정부가 국가행위자로서의 인식과 국내 인식의 괴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자기정당화에 내재된 자기정체성 확인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서 확인한 결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패전국에서 독립국으로,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에는 아시아 경제선진국으로서, 1971년 유엔에서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1972년에는 평화적 우호국가로서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이 전개되었다.

일본은 중국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투쟁의 맥락

에서 중국에 대한 인정 혹은 불인정을 행사한다. 1950년 초반부터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항상 하나의 중국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언급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하나의 중국론을 인정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본 연구의 세분화된 인정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아시아 일본의 자기정체성이 자유세계 일원인 일본의 정체성과 중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 단계를 심화하였다. 그러나 아시아가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제3자화되면서 아시아로의 협력이 중화인민공화국 승인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 일본’과 ‘이웃국가 일본’의 자기정체성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가 아시아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속의 일본과 중국이 재확인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내의 위계서열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지역인식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것에서도 일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를 포함한 보다 넓은 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여전히 전후 극복을 위해 인정투쟁 중이다. 일본은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일본과 중국이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상호 인정을 심화시켜나갈 수 있을 때,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 간 인정(recognition)에 대한 정치학적 설명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인정은 국가 승인을 포괄하는 확대 개념이다. 왜 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가? 한 국가의 행동에 대한 인정여부, 상대 국가에 대한 인정여부, 역사문제 등에 대한 인정여부 등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권력투쟁, 이익투쟁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던 국제관계를 인정투쟁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물질 중심적 시각에서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두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인정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가들 간에 인정을 부여하고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일본은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는 반대하지만,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인정-불인정의 이분적 접근으로는 일본이 1972년이라는 시점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급격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가 전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것이며, 1972년의 중국 인정정책이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점진적 변화로 나타난 것임을 주장한다. 전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는 중국 인정정책의 점진적 변화과정을 인정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초반 일본의 외교정책은 데탕트기 미중접근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 종속적인 일본 외교정책의 한계 속에서 설명된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요인들은 일본 외교정책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환경 혹은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요인과 과정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왜 1972년에 일본과 중국은 국교를 수립한 것인가? 데탕트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만으로는 일본이 다른 공산권 국가인 소련과 1956년에 국교정상화를 한 것과 비교하여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는 왜 시기적으로 뒤쳐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미국 종속적 일본정책으로만 살

펴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79년에 비교해 볼 때 왜 중일국교정상화는 시기적으로 앞서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국제정치적 요인과 미국의 영향력만으로는 중일관계의 맥락과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분석 수준은 중일관계 차원이다. 국제정치적 차원과 국내정치적 차원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중일 양자관계 수준에서의 정부 간 교류와 교섭에 주목한다(부록1 참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분석 수준을 국제수준과 양자관계수준 그리고 국내수준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본 연구는 특히 양자관계에 주목하여 정책 결정과정과 요인을 검토하는 중범위 수준의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관계에서 인정문제를 이론화하고 이를 중국 인정문제라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사례에 접목하여 설명을 시도한다. 우선, 국제관계 차원에서 국가 간 인정문제의 세분화된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국가승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논의를 포괄하는 국제정치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또한 중일관계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인정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차원에서 인정투쟁의 분석틀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외교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도덕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전후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중일국교정상화 관련 연구에 새로운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1945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일 간 협력과 갈등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B. 분석대상과 기존연구 검토

1. 분석대상: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

중국 공산당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PRC)을 수립한 뒤 중국대륙을 통치하고, 중화민국(中華民國, ROC) 국민당 정부가 대만

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중국 인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One China Policy)’ 론을 제시하였다. 자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반드시 한 정부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정부와의 관계를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principle)로 규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상대국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둘째, 중화민국 문제는 중국 국내문제이며, 셋째, 중화민국과 단교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해나가기 시작했다(石井明 2003). ‘하나의 중국’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곧 중화민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단 하나의 정부만을 중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대표권 문제(Chinese Representation Issue)’라는 명칭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중국대표권이라는 명칭은 결국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민국 중 한 정부만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전까지 ‘하나의 중국’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조건들은 중국이 원칙화하고자 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1949년 이후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이 제기하는 하나의 중국론을 둘러싼 대안적 움직임에 대해 ‘두 개의 중국(两个中国)’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个中国, 一个台湾)’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일본정부의 다양한 해석과 전략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명칭이 ‘하나의 중국(一つの中国)’, ‘중국대표권 문제(中国代表権問題)’이다. 그런데 일본은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하나의 중국’이라는 도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중국대표권 문제보다는 ‘중국문제(中国問題)’ 또는 ‘대만문제(台湾問題)’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유엔에서 중국문제를 언급할 때에만 ‘중

국대표권 문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정책이 중국의 주장대로 사실상 '두 개의 중국(二つの中国)' 혹은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一つの中国, 一つの台湾)' 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를 '중국 인정문제'라고 통일하여 사용한다. 중국문제나 대만문제라는 명칭은 광범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엔에서 사용된 '중국대표권 문제'는 양자택일의 논의로 전개되어 하나의 중국만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1949년 이후 전개되어 온 중국의 '하나의 중국' 론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의 해석과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1949년 이후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유지된 부분과 변화한 부분이 공존한다. 1972년 9월 29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는 중국 인정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후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연속성과 변화의 복합적 특성과 일본의 다양한 해석의 시도를 분석한다.

2. 기존연구 검토

중일관계에서 중국 인정문제는 전후 중일관계 전반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에 관한 연구나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중일관계의 연구 접근 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기존연구의 시각을 관계의 차원과 행위자를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관계의 차원의 기준은 중국 인정문제를 다자관계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와 양자관계 차원의 논의로 다루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위자에 따른 기준은 국제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의 중국 인정문제를 다루는 연구와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I-1〉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존연구 유형

행위자 수 관계의 차원	국제사회 (국제기구, 국가 등)	일본
다자적 관계(유엔가입 등)	I	III
양자적 관계(국교정상화)	II	IV

우선 첫 번째 분류(I)는 국제사회 내 다자적 관계로 중국 인정문제를 다루는 연구이다.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치에 관한 논의로, 중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과 자격문제에 관한 중국대표권 문제를 다룬 연구가 대표적이다(張紹鐸 2006,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알바니아의 주장과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반대의 역사로 서술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입장은 부각되지 않았으며, 1971년 이후에는 중국의 유엔 가입이 역사적 사실로 다루어져서 더 이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외, I 유형의 연구에는 제3세계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로 접근하는 연구(Chai 1979),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의 지위를 다룬 연구(Huang 2003; Damrosch 1992; Chang 1996; 台灣教授協會 2009, 2010 등), 양안관계와 통일문제의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김옥준, 정창 2010; 장공자 2006) 등이 있다.

기존연구의 두 번째 유형(II)은 국제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이 양자 관계로서 중국 인정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정책과 양안관계의 측면에서 ‘하나의 중국’ 문제를 다룬다. 국제법상 정부승인의 하나의 예로 언급하는 연구(多喜寬 2014)와 국제정치적으로는 미중접근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Foot 1995).

‘하나의 중국’ 논의 기원에 대해 다룬 후쿠다(福田円)의 연구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논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설명하였다(福田円 2014).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대만해협위기(1954, 1958) 전후로 하나의 중국 원칙의 내용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초기 ‘대만해방’론에서 시작하여, 점차 국가안전보장이 중시되고 국가건설과 애국주의의 근거가 요구됨에 따라, 국제적 지위와 정통

성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양안관계와 대내 선전, 국제적 지위 등의 논의들을 내포하고 있는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화민국의 한족 계승 의식을 반영한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론과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론은 비교적 유연성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함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福田門 2014).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논의들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Harding 1992; Shambaugh 1993; Xia 2006; Tucker 1990; Ross 1995, 2001, 2006). 비교적 중화인민공화국을 일찍 인정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福田門 2011 등).

세 번째 유형(III)은 일본이 다자적 관계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룬 연구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독자적 연구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일본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강화외교, 안전보장외교, 경제외교를 추진하였다(조양현 2013). 미국과의 안보협력과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요시다 독트린’이 냉전기 일본의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정립되었다. 안보영역에서의 미국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은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대미기축 외교로 인해 일본의 외교정책은 외압반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Calder 1988, 40).

그러나 냉전 이후의 일본외교가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과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 하에서 요시다 독트린이 가진 전략성을 재평가하려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최희식 2008; 전진호 2005; 최은봉·오승희 2011 등).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 외교정책의 적극적 측면을 재조명하는 연구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의 비자율적 특성을 전제로 하는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III 유형의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중일관계를 설명하는 연

구들이 많다. 이는 중일관계의 국제환경 변수에 주목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정책과 일본정책에 따라 중일관계가 변화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이 1971년의 닉슨의 중국방문과 1972년의 상하이 커뮤니케 발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모리 카즈코(毛里和子)나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를 비롯한 중일관계의 대표적인 연구들이 미중관계의 개선을 1972년 중일공동성명으로 가는 전환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1952년 일본과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으며, 1978년의 중일평화우호조약도 1979년의 미중국교정상화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중일관계의 역사적 분기점이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 분기점과 매우 유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중화해와 중일국교정상화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과정에서 1971년 유엔의 중국가입이라는 다른 국제환경적 요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중화해의 부산물로 간과되어 왔다. 중국의 유엔 가입은 일본의 중국정책 변화에 또 다른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이 1971년 중국 유엔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임을 확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중일관계와 국교정상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유엔 가입에서 일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의 입장에 주목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중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72년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역할에 보다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우에(井上正也 2007, 2010)의 연구는 중일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일 간 국내외 사건과 주요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특히 각 내각별 유엔에서의 중국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케다(池田直隆 2004)의 연구는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정합성에 주목하여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 다나카 내각의 ‘두개의 중국’ 정책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 분류(IV)는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자적 관계를 다룬 연구로, 주로 중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중일 간 양자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크게 행위자 중심적 설명과 경제분야 중심적 설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적 요인에 주목하여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냉전기 일본의 외교정책을 재조망하고 중일관계를 새롭게 읽어내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殷燕軍(2007)은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와 배상문제를 중심으로 중일국교정상화를 연구해왔다. 하토리(服部龍二, 2011)는 중일국교정상화에서 일본의 다나카 수상과 오히라(大平正芳) 외상, 관료들의 노력을 기록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나카 내각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가 주목되어왔으며 일본외교의 성공스토리로 평가하는 반면(毛里和子, 2013), 상대적으로 사토 내각은 중일관계 개선에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한다.

중일 민간 경제교류에 주목한 연구들은 국내 다양한 행위자를 조명한다. 일본이 중국을 인정하기 전까지 정부 간 교류는 단절되어 있었지만, 재계를 비롯한 민간영역에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류가 발전되어 왔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접근할 수 있다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입각한 민간 경제교류가 중일관계 개선의 전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2년의 일본과 중국의 국교정상화 이전의 중일관계는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간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조명동(1989)은 ‘민간외교’ 개념을 도입하여 1950년대 중일 민간경제협력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나카(田中明彦, 1996)는 20여 년간의 일중 민간무역이 ‘형성-단절-재개’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며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배경 하에서 민간무역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리(毛里和子, 2006)는 냉전 상황, 일본의 대미관계, 대만과의 관계 등 다양한 제약 속에서도 민간관계가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외교(人民外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孙乃民, 2006; 刘建平, 2010 등), 정경불가분(政經不可分) 원칙에 기반하여 경제교류가 중화인민공화국 인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 보았다.

1970년 이전까지 정치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진 이른바 정경분리에 입각한 접근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당시 미중관계와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중일 간 경제교류는 일본 내에서 국교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압력을 형성하며 중일 관계 개선의 주요

추진 동력이 되었다.

네 번째 유형(IV)의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중일국교정상화 50년,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와 국교정상화에 대한 재검토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센카쿠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魚島)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중일 간 마찰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중일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중일관계의 긍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2013년 10월 발족한 ‘새로운 일중관계를 생각하는 연구자의 모임’(新しい日中関係を考える研究者の会)이 대표적이다. 이 모임의 심포지엄 내용을 엮은 책인 『일중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1972년 체제의 재검증』은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중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중일국교정상화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高原明生外 2014).

중일국교정상화 관련 중국인 연구자로는 주지엔룽(朱建榮)과 리우지엔핑(劉建平)이 있다. 주지엔룽은 배상문제를 포함한 중국 측 정책결정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진행해왔다(朱建榮 1998, 2014, 2015). 중국 측의 외교 사료를 발굴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억류되기도 하였다(朝日新聞中文網 2013). 재일 중국인 연구자인 주지엔룽은 중일관계에서 중국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리우지엔핑은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가 결국 일본의 전후처리와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이 정치해결적 사고와 법률해결적 전술이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劉建平 2010). 정상성과 비정상성, 그리고 전후극복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중일 간 전후처리와 국교정상화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劉建平 2014, 2015).

그러나, 중일국교정상화의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중국 인정문제에만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 다룬 연구로 히라카와(平川幸子 2012)의 연구가 있다. 히라카와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접근이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이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일본방식’으로 불릴 만큼 독자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본의 중국정책은 당시 일본이 직면했던 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외교의 ‘승리’였다고 평가한다. 두 개의 중국 원칙을 어

떻게 다루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일국교정상화에서 일본외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화해의 불충분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천자현 2013, 최은봉·오승희 2012b 등). 그런데, 왜 중일 간에는 화해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인정투쟁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과연 일본은 중국을 인정하고 있는가? 중국은 일본을 인정하고 있는가? 위안부 동원, 강제 노동, 역사해석, 영토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일본정부의 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중일 관계의 개선이나 화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해당 논의들을 인정할 것인가, 일본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인정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해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유형의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문제의식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중국 인정문제는 중국의 주장으로 최우선 순위의 쟁점으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중일 간 전후처리가 미흡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전후처리의 불완전성을 가져온 중국 인정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일관계 연구나 중일국교정상화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후 중일관계, 그리고 오늘날의 중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국 인정문제는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측에서 중국 인정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으며, 일본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자관계 차원과 양자관계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제기되어 온 중국 인정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분석한다. 국제사회(I)와 다른 국가들(II)의 중국 인정문제를 배경으로, 일본정부가 중국 인정문제를 국제적(III)으로, 그리고 양자적으로(IV) 어떻게 연계하여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기존연구에서 부각되어 온 다나카 내각과 미중관계의 구조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요시다 내각, 이케다 내각, 사토 내각, 다나카 내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속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을 접목하여 중국 인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일본의 외교정책과 중일관계의 독자적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C.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인정문제를 중심으로 전후/냉전기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중국 인정문제에 직면하게 된 네 가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간 인정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중일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개념으로 일본이 중국 인정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정투쟁’을 ‘자기확인’, ‘자기정당화’, 그리고 ‘외교적 위선’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일상적 용법과 헤겔과 호네프의 ‘인정투쟁’ 이론을 접목하여 구체화한 인정단계의 개념틀을 제시한다(호네프 2012; Honneth 2012). 또한 호네프의 이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헤겔의 인정투쟁과 미드의 사회심리학 논의를 재검토하여 일본의 ‘자기정당화’로 재현되는 인정투쟁 분석틀을 제시한다(헤겔 2013, 미드 2010). 분석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특성은 스티븐 크라스너의 조직된 위선(organized hypocrisy)¹⁾의 논의를 발전시켜(Krasner 1999, 2001, 2013), 일본외교에서 기술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외교적 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제III장에서 VI장에 걸쳐 제시되는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사례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요 외교 사료들과 기록을 검토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청서(日本外務省 『外交青書』 1957-1973)와 일본 수상과 외상의 국회의사록 발언 내용(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1949-1973)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1차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전후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요시다 시게루의 회고록(吉田茂 1958, 2012, 2015), 미국 FRUS(Foreign

1) 크라스너의 *organized hypocrisy*의 한글번역은 국내 연구에서 ‘조직화된 위선’(신옥희 2008; 박홍서 2010), 조직적 위선(이혜정 2009), 조직된 위선(김미경 2010; 전재성 2014; 배병인 2014)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된 위선’으로 표기한다.

Relations of United States) 기록을 검토하였다. 제IV장에서는 국제올림픽 위원회 공식 보고서(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ames of the XVII Olympiad 1966), 일본 올림픽 위원회(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기록, 중국 올림픽 위원회(中国奥林匹克委员会)의 홈페이지 기록, 도쿄올림픽 관련 국내외 간행본과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다(동아출판사 1964, 국립중앙도서관 1982). 제V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유엔에서의 발언과 투표 기록이 사용되었다(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1950-1972). 제VI장의 중일국교정상화 사례연구는 미국 FRUS,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정상과의 회담기록(『外交青書』 1973), 중일국교정상화 외상회담과 실무회담 기록(石井明外 2003), 교섭 관련자 회고록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2.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7장으로 구성된다. 제I장은 서론으로 연구대상, 기존연구 검토,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II장은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도입한다. 제III장부터 제VI장은 일본이 중국 인정문제를 직면한 네 가지 사례 설명한다. 제III장은 1949년부터 195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위한 중국정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 일본 요시다 내각의 입장을 분석한다. 제IV장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석 여부를 둘러싼 일본 이케다 내각의 논의를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당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일본 사토 내각의 입장을 살펴본다. 제VI장은 1972년 9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체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 다나카 내각의 중국 인정문제를 설명한다. VIII장은 결론으로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과정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전후 일본 외교정책과 중일 관계 연구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II. 주요 개념과 연구의 분석틀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정받으며, 필연적으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인간 자체는 인정 행위로서의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이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를 극복한다. 즉 인간은 인정 행위이다.” (Hegel 1969, 206; 호네프 2012, 97 재인용)

A. 인정투쟁

1972년 9월 29일,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성명’의 본문 제2항에서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일본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성명〉 본문 제2항

- 영문: The Government of Japan recognizes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sole legal Government of China.
 - 일문: 日本国政府は、中華人民共和国政府が中国の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ことを承認する。
 - 중문: 日本国政府承认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中国的唯一合法政府。
- (* 출처: 日本外務省,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5. 기울임/밑줄 필자)

문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행위는 중국이 유일합법정부임을 ‘recognize/承認’ 하는 것이다. 이 행위의 주체는 일본정부이고, 행위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다. 행위의 주체와 대상은 명확하다.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recognize/承認’ 했다는 것의 의미를 정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일공동성명의 제2항을 가능한 한자음을 유지하여 한글로 옮기면,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가 된다. 여기서 사용된 승인이라는 표현은,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새로 인정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국제법 용어이다. 이는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교전단체의 승인 등으로 나타난다.

‘승인’ 행위를 가리키는 영문표현은 ‘Recognition’ 인데,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the *act of accepting* that something is *true or important* or that it exists
- 2) the *act of accepting* someone or something as having *legal or official authority*
- 3) the *act of knowing* who or what someone or something is because of *previous knowledge or experience* (Merriam-Webster 2015).

첫 번째는 사실이거나, 중요하거나,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행위로, 두 번째는 사람이나 사물이 법적인 공식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수용하는 행위, 세 번째는 이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이나 사물에 대해 그 사실의 존재, 권위, 인식의 영역에서 수용하거나 인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승인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 중에서도 두 번째 의미에 한정되어 있다. *recognition*의 다른 두 가지 의미는 승인을 포함하는 ‘인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어국립원의 『표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승인’을 ‘어떤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인정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국립국어원 2015). 영문의 ‘recognition’에 해당하는 한국어 개념으로 승인과 인정이 존재하는데, 승인은 권리의 측면이 보다 강화된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용어이다.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 보다는 ‘인정’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recognition’은 승인 혹은 인정 중에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에서 나타난 일본의 중국에 대한 ‘recognition’만을 살펴본다면 공동성명 2항의 한 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일본의 중국 ‘승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단지 1972년의 법률적 승인만이 아니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나타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정’ 문제를 보다 폭넓게 살펴본다. 오늘날 국가 간 ‘승인은 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혹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승인은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승인과 인정

사이의 개념적 괴리를 포괄하여 국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 승인문제나 정부 승인문제로 다루어왔던 국제법학의 접근과는 달리,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어떻게 인정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국가들 간의 ‘recognition’은 주로 국제법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한 국가가 인정되었는가의 문제는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나 정부를 법률적으로 승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제법학자 한스 켈젠은 인정의 결정 부분에서 국제법학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인정이 정치적 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Kelsen 1941, 605-617; Honneth 2012, 29).

국가들 간의 정치학적 관계로서의 인정은 단지 법률적 관계로서의 승인만을 다루지 않는다. 정치적 행위로서의 인정은 한 정부는 다른 국가를 국제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우한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고(Honneth 2012, 29), 다른 한 국가에 대해서는 누가 인정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의 ‘승인’만이 아닌 국가 간의 ‘인정’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recognition’은 ‘인정’으로 표기하며, 법률적 ‘승인’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다. 외교관계 수립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승인’으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인정이란 무엇인가? ‘인정’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정’의 일상적 화법과 학술적 개념 규정을 통해 인정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우선, 일상생활에서의 ‘인정’의 의미를 짚어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인정(認定)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

예) 소유권 인정 / 자치 의회의 입법권 인정 여부를 협상하다. / 나는 그의 성실성만은 인정을 해 주고 싶어.

2. 『법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

명사로서의 인정에서,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는 첫 번째 의미는 ‘확실하다’는 것과 ‘그렇다’는 것과 ‘여긴다’는 뜻이 복합되어 있다. 확실하다는 것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긍정적 판단을, 여긴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법률적 의미도,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점으로 볼 때, 첫 번째 의미와 마찬가지로 인정의 기본적 개념으로 ‘사실’과 ‘긍정’ 그리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공통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인정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사용양식을 좀 더 살펴보면, 인정은 ‘인정하다’와 ‘인정받다/되다’가 함께 사용된다. ‘인정하다’는 주체의 부여 행위로서의 인정이다. ‘인정받다/인정되다’는 주체의 타자에 대한 인정의 획득을 가리킨다. 주체의 인정 부여 행위를 통해 타자는 인정을 획득한다. 인정은 그 행위의 부여자와 획득자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인정은 자아와 타자가 존재하고, 자아와 타자 간의 상호관계가 나타나며, 인정의 부여와 인정의 획득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사회적 개념이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부분에서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통해 자아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정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의식은 단일한 즉자존재로서 모든 타자를 배제하는 자기동일성을 갖는다. 자아는 자기의식의 본질이며 절대적 대상이다. 자기의식은 자아와 직접 어우러지면서도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타자는 자기의식과 맞서있는 것으로 부정적인 성격으로 규정된 비본질적 대상이다. 그러나 타자 또한 자기의식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형성된다. 자아와 타자는 자립적 형태를 띤 두 개의 의식으로서 서로를 마주한다. 상호 간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를 의식하게 되고, 자아라는 단순한 통일체는 해체되게 된다. 순수한 자기의식과 사물의 형태를 띠고 존재하는 의식이 정립되고, 이 양자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식형태로 존재한다. 전자는 독자성을 본질로 하는 자립적 의식으로서의 ‘주인’이고, 후자는 타자에 대한 존재를 본질로 하는 비자립적인 의식으로서의 ‘노예’이다(헤겔 2013, 133).

노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립성을 감지하게 된다. 노동하는 의식은 사물의 자립성을 곧 자기 자신의 자립성으로 직관하게 된다. 노예의 의식은 자신이 즉자대자적인 완전한 존재임을 의식하게 되면서, 노동 속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를 재발견하는 주체적인 고요

의 의미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평등한 인정관계를 개선시켜나가게 된다(헤겔 2013, 136-138).

즉 헤겔은 ‘타자 속에서 자아를 인식’ 하는 상호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자신을 자신의 타자 속에서 인식한다는 자아-자신의 타자-타자 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 헤겔은 자기의식이 ‘즉자대자’ 적으로 이중화되면서 대치의 상태를 겪고, 결국 인정운동을 통해 자기의식의 정신적 통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중화한 두 개의 자기의식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인정의 순수한 개념이다(헤겔 2013, 131). 헤겔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유물에 대한 투쟁이 자기주장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 해석하였다(호네프트 2012, 99).

자기의식이 갖는 사회적 속성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이다. 자아는 사회 안에서 다른 개인들과 맺는 관계의 결과로 나타난다(미드 2010, 223). 미드는 자아의 ‘객체로서의 자아(me)’와 ‘주체로서의 자아(I)’의 관계를 통해 인정관계를 설명한다.

‘I’는 타인의 태도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며, ‘me’는 스스로 가정하는 타인의 태도를 조직화한 세트이다. 타인의 태도가 조직화된 ‘me’를 구성하고, 사람은 그 ‘me’에 ‘I’로 반응한다. ‘me’가 우리 자신의 태도에 존재하는 분명히 조직화된 공동체의 표상으로서 반응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반응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반해 ‘I’는 인간의 경험에 포함되는 사회적 상황에 자발적이고 자의식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me는 특정한 종류의 ‘I’를 요구하기도 하고, ‘I’가 ‘me’에 반응하기도 하며, ‘I’가 ‘me’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아는 ‘I’와 ‘me’의 두 가지 식별되는 측면을 동반하며 진행되는 사회적 과정이다(미드 2010, 270).

자아와 타자의 관계는 사회적 과정이며 자아의 이중적 구조로 인해 타자 인식은 타자의 시선에 의한 자아의 내적 재구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자아의 타자 인식은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헤겔과 미드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네프트는, 예나시기 헤겔의 자아와 타자의 대립과 화해로 나타나는 인정운

동과 미드의 ‘I-me’ 간에 나타나는 사회화 논의를 보완하여 인정투쟁 이론을 발전시킨다. 호네프는 초기 예나시기의 헤겔의 1802년 『인륜성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갈등의 도덕적 특성을 살펴본다. 고립된 주체가 아닌 주체들의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륜적 결합관계를 강조하고, 서로 대립되는 주체들이 인정운동을 통해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타자와의 화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 다시 대립하게 되면서 인정관계의 논리 속에 ‘투쟁’이라는 내적 역동성이 존재하고 있다. “주체의 개인적 정체성 발전은 타자에 의한 특정한 방식의 인정이라는 전제와 결합되게 된다”(헤겔 2007; 호네프 2012, 88).

호네프는 헤겔의 인정대상과 인정방식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인정의 단계이론을 재발견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직관을 통해 경험하는 ‘가족(사랑)’, 인격체의 인지적 개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시민사회(권리)’, 그리고 주체의 특수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적 직관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연대)’의 형태이다(호네프 2012, 68).

호네프는 헤겔의 인정의 단계이론을 바탕으로, 미드가 제시하였던 주격 나(I)와 목적격 나(me)의 내적 대립과 마찰이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갈등 형태라고 보았다. 여기에 호네프는 인정투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불인정으로서 무시(Missachtung)²⁾의 유형을 보다 상세화한다(표 II-1 참조). 정서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적 무시가, 인지적 존중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권리 부정이나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모욕하는 무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무시의 폭력들을 극복해나가는 인정 단계를 인정투쟁으로 구체화하였다. 주격 ‘I’와 사회적 자아 ‘me’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적 자아가 무시와 비인정을 경험하게 되면, ‘I’와 ‘me’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긍정적인

2) 호네프의 한국어판에서는 ‘Missachtung’과 ‘non-recognition’을 ‘무시’와 ‘비인정’으로 번역하였다. 인정의 사회적 개념을 고려할 때 인정받기와 인정하기가 부정된 것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인정부여를 부정하는 행위로서의 무시는 ‘불인정’으로,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서의 ‘비인정’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아가 타자를 불인정하면 타자는 비인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타자가 자아를 불인정하면 자아는 비인정 상태가 된다. 또한 자아 스스로의 비인정을 극복하기 위해 인정투쟁으로 나아간다.

자기 지향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인정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정투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호네프는 인정(Anerkennung)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화한다. 호네프는 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관계가 크게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헤겔의 사유모델에서 추출한 세 가지 인정 형태인 사랑, 권리, 연대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여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부여라는 방식으로 인정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표 II-1〉 호네프의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

인정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 부여
개성의 차원	욕구 및 정서 본능	도덕적 판단 능력	능력, 속성
인정 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권리관계 (권리)	가치 공동체 (연대)
진행 방향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실천적 자기 관계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부정, 배제	존엄성 부정, 모욕
위협받는 개성 구성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

* 출처: 호네프 2012, 249.

호네프의 인정관계를 바탕으로 웬트는 인정으로의 욕구를 ‘얇은 인정(thin recognition)’과 ‘두터운 인정’ (thick recognition)으로 분류했다. 얇은 인정은 공동체 법 내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인식되는(acknowledged) 것이다. 두터운 인정은 주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존중(respect)하는 것이다(Wendt 2003). Allan and Keller (2006)와 Strömbom(2015) 역시 얇은 인정과 두터운 인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얇은 인정이 일반화와 실질화로 나타나는 권리관계 수준의 인정단계로, 두터운 인정은 개성화와 평등화까지 나아간 인정단계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인정 개념과 학술적으로 다루어진 인정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정과 불인정/비인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우선, 대상의 무엇에 대해 인정 혹은 불/비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존재 영역, 권리 영역, 가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정과 불/비인정은 어떠한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권리 영역은 대상이 가진 권리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에 관한 것이다. 가치의 차원은 대상이 갖는 가치를 긍정할 것인가 혹은 부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논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논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각각 상이한 인정을 가리킨다. 논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존재의 유무에 관한 것이며, 논문의 권리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것이며,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논문의 내용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논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되는 것, 논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되는 것, 논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되는 것은 각각 불/비인정의 목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부정의 경우 존재의 부정이 될수록 불/비인정의 강도가 더 심화됨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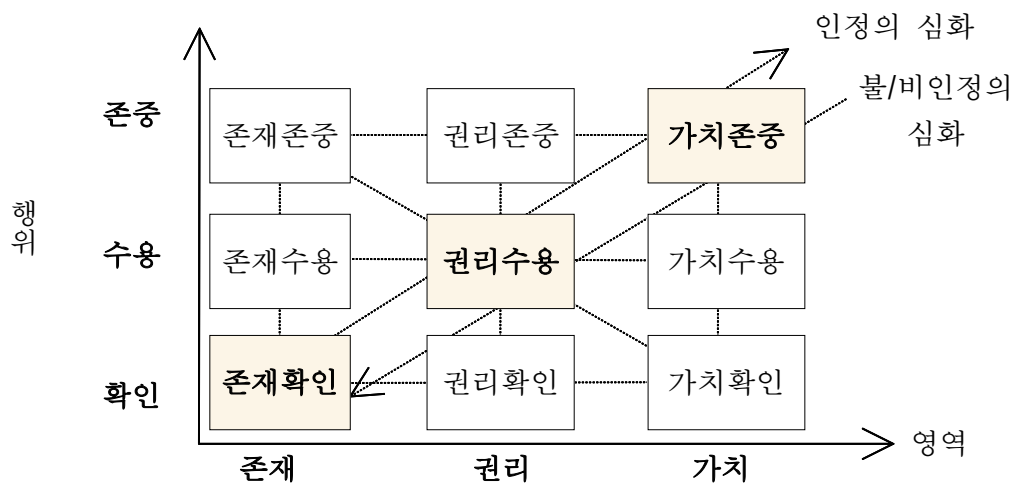
또한 인정과 불/비인정은 행위의 차원에서도 구별된다. 각각 확인, 수용, 존중의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확인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을 판단하는 기점이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확인하는 것은 인정의 첫 단계이다. 수용은 확인에서 좀 더 나아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일반성과 동등성의 인정이다. 존중은 수용을 넘어 대상에 대한 차별화나 특별함을 인정하는 단계이다. 확인에서 수용, 존중으로 갈수록 인정의 심화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확인의 인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으로 시작되고, 동등한 존재로서의 수용의 인정,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의 인정으로 나아갈수록 인정의 단계는 심화된다. 불/비인정의 경우에는 확인의 부정, 수용의 부정, 존중의 부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차원에서 중요한 행동의 조합은 인정과 불/비인정 각각 9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존재-권리-가치>영역에서 나타나는 <확인-수용-존중>의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II-1 참조).

기본적으로 각각의 유형은, 거론되는 인정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보다 적합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중국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인 경우와, 일본이 중국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중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중국이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 존재를 수용하는 것, 존재를 존중하는 것 역시 행위에 따라 다르게 지칭할 수 있다.

<그림 II-1> 인정, 불/비인정의 개념화: 영역과 행위



9가지의 인정 개념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존재존중과 권리수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권리수용이 나타날 경우 존재확인 내지 존재수용이 동반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층적 발전 과정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존재에서 권리로 그리고 가치로 나아갈수록 인정 관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치확인의 경우, 존재확인이나 권리확인이 전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치수용의 경우, 존재수용과 권리수용이 수반되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치존중의 경우, 존재존중과 권리존중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각각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단계적 중층화가 나타난다. 존재 차원에서, 존재의 존중은 존재의 확인과 존재의 수용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권리의 존중은 권리의 확인과 권리의 수용 이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가치의 존중은 이미 가치를 확인하고 수용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 차원이 오른쪽으로

나타날수록, 행위가 위로 나타날수록, 인정관계는 보다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확인 의 인정 단계는 존재존중의 인정 단계보다 심화된 것인가? 차원의 심화 단계와 행위의 인정 단계의 관계는 어느 것이 심화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권리확인을 하더라도 존재를 반드시 존중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존재를 존중하더라도 권리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확실하게 인정 단계의 심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각각의 차원에서 변화의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9가지 유형 속에서도 인식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확인의 행위가 존재하는가는 인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 존재확인 의 이전단계는 존재 부정으로 인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단계이다. 권리적 측면에서는 특히 권리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기점이다. 권리를 수용하는 행위는 특히 법이나 각종 규정들로 제도화가 수반되어 나타난다.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의 외교관계 수립 단계가 권리수용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차원에서는 확인, 수용보다도 존중의 단계가 중요하다.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가는 인정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다른 9가지의 모든 유형의 인정을 포괄하는 단계로 상정된다. 헤겔이 사회적 연대로 나아간다는 지향점이 해당하는 단계이다.

〈표 II-2〉 연구자별 인정, 불/비인정 개념 비교

연구자	인정/비인정 단계		
헤겔	사랑, 우정	권리 인정	연대
호네프	정서적 배려 학대, 폭행	인지적 존중 권리부정, 배제	사회적 가치 부여 존엄성 부정, 모욕
웬트 등	얕은 인정		두터운 인정
본 연구	존재확인 의 인정 존재확인 부정	권리수용 의 인정 권리수용 부정	가치존중 의 인정 가치존중 부정

* 출처: 헤겔 2006, 2007, 호네프 2012, Wendt 2003, Allan and Keller 2006, Strömbom 2015 참조 필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헤겔과 호네프의 인정개념과 마찬가지로 인정의 단계적 발전을 수용하고 있지만, 큰 차이점은 인정 단계가 반드시 심화와 진전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인정의 획득을 위해서는 인정의 심화를 추구하지만, 인정의 부여 측면에서 인정 단계는 반드시 심화,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더 낮은 차원과 행위로 후퇴될 수도 있다.

‘존재확인의 인정’, ‘권리수용의 인정’, ‘가치존중의 인정’은 기존의 인정 개념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표 II-2 참조). 그러나 그 외의 존재수요의 인정, 권리확인의 인정 등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인정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인정(recognition)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부여와 획득의 상호주관적 관계이다. 인정은 존재적, 권리적, 가치적 차원에서 확인, 수용, 존중 등의 행위로 살펴볼 수 있다. 인정단계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중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아의 인정투쟁은 심화를 향해가지만, 타자에 대한 인정부여와 타자에 의한 인정부여는 심화될 수도, 불/비인정 상태가 심화될 수도 있다.

B. 국가 차원에서의 인정투쟁

국가들 간의 사회에서도 역시 인정을 향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의 역사는 인정투쟁의 역사”인 것이다(Ringmar 2012, 11).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추구하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인정투쟁을 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첫째,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상호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을 시도한다. 둘째, 국가 행위자는 한 국가의 집합적 정체성을 대표하며 국민으로부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기정당화’ 발언과 서술이 나타난다. 셋째, 자기정당화는 도덕적 속성을 나타낸다.

우선 국가는 자신의 존재와 권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정투쟁은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집합적

정체성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인정투쟁의 즉자-대자 구조와 동일하다. 국가의 자기정체성 형성은 개인의 자아와 마찬가지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호네프는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을 존중에 대한 욕구(need for respect)로 보고 있으며, 하나의 공동체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문제로 개념화를 시도한다(Honneth 2012, 27). 집합적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이나 즉자 관계(relation-to-self)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인정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웬트는 집합적 정체성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Wendt 1992, 1994). 집합적 정체성은 공유된 규칙, 규범, 원칙들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정체성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웬트는 구성주의와 제도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집합적 정체성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주권국가들의 인정투쟁의 결과 세계사회로까지 나아가는 연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Wendt 2003).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형성의 내생적 요인과 전환가능성에 공감하며, 외교정책 결정자가 자기정당화를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기, 일본의 자국 중심적인 인정투쟁은 일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로, 초국가적 연대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음을 확인한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구성주의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당화 발언과 서술이 등장한다. 국가가 스스로 행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대리하는 행위자는 그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자가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정통성(legitimacy) 문제이다.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한 국가에 대한 배제, 비난 등은 인정투쟁을 향한 국가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한다(Honneth 2012, 29). 그들의 자기주장(self-assertion)은 공식적 언급, 간접적 표현, 상징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상들은 정당화의 내러티브(narrative of justification)로 나타나는 것이다(Honneth 2012, 31-32).

국가 차원에서의 인정문제에는 외교정책 행위자의 인정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정으로 대표되는 과정이 추가된다. 외교정책 행위자는 자국민에게 자신

의 인정, 불인정 견해를 설명을 하게 되고, 자신의 인정, 불인정 입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 내 개인들의 생각과 목표가 상당히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를 해석 하는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당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가 간의 인정행위에는 도덕 규범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행위자의 자기정당화는 도덕적 가치를 표면화하고 있다. 또한 인정행위에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패브리(Fabry)에 의하면 인정행위는 고정되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안보적 고려사항들이 관계된다. 따라서 결정만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결과만이 아니라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게 된다(Fabry 2013, 168). 주권국가와 인정은 모두 역사적 구성물이다. 특히 유럽 중심적인 근대성의 산물이었던 주권국가 개념과 인정행위가 점차 보편화되고 세계화된 것이라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Fabry 2013, 168).

그런데, 국가가 형성하는 집합적 정체성, 즉 국가의 자기정체성은 무엇인가? 패브리가 지적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주권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주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장보맹은 단일주권(unitary sovereignty)을 제시하였다. 국가에서 궁극적 권위는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장보맹 1577). 이러한 주권국가론은 17세기에서 20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 및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45년 이후 세계는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다루어져 왔다. 마치 국가들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명확하게 규정된 영토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Jackson 1993, Krasner 1999; Caspersen 2012). 그러나 현실에는 국제적 권리와 책임을 행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정치 단위체들이 존재한다. 이른바 ‘준국가’(quasi-state), ‘사실상의 국가’(De Facto States), ‘비대표 국가(Unrepresented Nations)’ 혹은 ‘비인정 국가(Unrecognized State)’ 등이 있다(Jackson 1993; Caspersen 2012).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인정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

다. 세계 1차대전 전후로는 영토의 실효적 지배를 중요시하였고, 세계 2차대전 이후에는 탈식민지화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발생의 기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Caspersen 2012, 12-16).

기존의 주권국가에 대한 신화와도 같은 믿음은 주권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고정적인 것이며, 주권의 부재는 국가로서의 비인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주권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닌가? 주권과 국가성(statehood)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기존의 주권국가론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웨버(Weber)의 표현을 빌리면, 주권은 내생적이며 국가들의 현실에 따라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것이다(Weber 1995, 84).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주권에 대한 개념규정이 다양화된다. 크게는 주권을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와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으로 나누어 이해한다(Jackson 1993, Wendt 2003). 여기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은 대외적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크라스너는 주권이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세분화된 주권 개념을 통해 제시하였다. 주권이 단일한 것이 아니며, 주권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Krasner 1999, 2001). 첫 번째는 베스트팔렌 주권(Westphallen sovereignty)으로서, 주어진 영토 내에서 권위적인 구조로부터 외부적인 행위자들을 배제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정치적 조직을 가리킨다. 베스트팔렌 주권의 규칙은 사실상이든 법률적이든, 한 국가로부터 외부적 행위자의 배제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주권은 국제법적 주권(international legal sovereignty)으로 상호승인과 관련된 관행들을 가리키며, 주로 공식적인 관할권을 갖는 독립적인 영토적 실체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국제법적 주권의 규칙은 승인이 공식적인 사법 독립권을 가진 영토적 실체로 확장되는 것이다. 국제법적 주권과 베스트팔렌 주권은 권위와 정당성 문제를 포함하지만, 통치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분명한 규칙이나 적절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국내적 주권(domestic sovereignty)으로 공식적 조직을 가리킨다. 국내적 주권은 권위와 통치를 모두 포함하며, 한 정치체 내에서의 정당한 권위의 구체화와 그 권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기존에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상호의존적 주권(interdependence

sovereignty)은 국내적 주권에 포함될 수 있다.³⁾ 정보, 아이디어, 상품, 사람, 오염물질이나 자본의 국가 경계의 흐름을 규제하는 공적인 권한의 능력을 가리킨다. 국가들 간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과 물건에 대한 통제가 해당한다(Krasner 1999). 상호의존 주권은 오직 통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와 관련없이 그 국경을 넘나드는 움직임을 규제하는 국가의 능력이다(Krasner 1999).

이러한 다양한 국가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주권은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은 반드시 완전한 것이 아니며, 국가들마다 주권의 충족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권국가의 신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주권이 완전하게 충족되어야만 주권국가인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들은 완전한 독립성과 절대성을 상징하는 주권국가로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권의 일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는 주권을 보다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주권국가’라는 이상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주권국가는 도덕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1945년 이후 독립을 꿈꾸던 국가들은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내세우며 주권국가로의 투쟁을 이끌어왔다. 그와 동시에 주권국가는 권위와 통치에 관한 것인 만큼 권력의 속성이 강하다. 정당성, 권위, 통치는 주권국가가 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정치와 도덕의 미묘한 공존이 나타난다.

크라스너는 국가들의 정치성과 도덕성의 미묘한 공존에 착목하고, 국가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조직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크라스너는 마치(James March)와 올슨(Johan Olsen)의 용어를 빌려,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은 두 가지 행동의 논리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결과의 논리(logic of consequences)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이다. 결과의 논리는 정치적인 행동과 결과에 대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의 산물이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반면 적절성의 논리는 규칙, 역할, 그리고 정체성에 따라 정치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적합한가

3) 크라스너에 보낸 이메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함. 2015년 10월 21일.

를 생각한다(March and Olsen 1989, 24-26; March 1994, 57-58; March and Olsen 1998, Krasner 2001, 175-176). 이러한 적절성의 논리와 결과의 논리가 충돌할 때 도덕적인 언행과 정치적 계산이 조합되어 조직적 위선이 나타난다.

크라스너는 주권 개념과 국가 간 인정에 대해서도 조직된 위선이 드러남을 지적하였다. 크라스너는 국가 주권의 조직적 위선성이 국가 인정의 문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복잡성(complexity), 규범 충돌(competing norms), 도구적 계산(instrumental calculation)으로 인해 조직된 위선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원칙과 규칙이 지켜지는 것은 결과의 논리가 적절성의 논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고려가 나타날 때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권은 국가들이 동등하고, 상호 내정 불간섭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되지만, 현실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는 협력의 논리와 갈등의 논리의 양면성에서 발생하는 위선이다(Krasner 2013).

이에 앞서 한스 모겐소는 1970년대 이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문제를 도덕적 접근이 정치적 접근보다 우선시하여 나타났던 실패 사례로 설명한 바 있다(모겐소 2014). 그러나, 1970년대 이전까지의 관찰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겐소의 의도도 크라스너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인정문제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고려에 대한 것이었다. 모겐소와 크라스너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와 도덕적 고려 간의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의 인정문제는 인정 부여와 획득의 정치성과 국가 행위의 도덕적 표상에 대한 검토로 다루어짐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C.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

헤겔은 국가 간의 인정투쟁이 후진국이나 비인정 국가들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민주화된 서구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인정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 보았다(Honneth 2012, 25-27).

이에 반해, 호네프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비민주주의 국가에

서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정체성의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투쟁과 그에 대한 기대를 국가 행위자가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국가 간의 인정투쟁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호네프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인정투쟁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보았던 헤겔도 제한적 주권국가들은 인정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민국가 형성과 독립국가로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국가들은 사실상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주권국가라는 이상적 자아상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전후 중국과 일본도 제한적 주권국가였다는 점에서 인정투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반식민지 국가로부터의 탈피는 1949년 분단국가로 이어지면서 민족에 기반한 국민국가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주권국가로서의 이상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장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 ‘하나의 중국’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베이징과 타이베이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1945년 패전을 수락하고 미군정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일본은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었다. 연합국으로부터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연합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와 미일안보조약으로 제한된 안보부분에서의 자율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명예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이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의 외교 3원칙으로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유엔 중심주의 둘째,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셋째, 아시아의 한 나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外交靑書 1957).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시도를 통해 기존의 냉전 구조를 중심으로 중일관계를 바라보았던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을 재발견할 수 있다.

국가들 간의 인정투쟁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작동기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의 확인, 자기정당화, 도덕적 표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각각의 기제를 ‘자기정체성 확인’, ‘자기정당화’ 표출, ‘외교적 위선’의 특징으

로 개념화하여 인정투쟁의 중일관계를 설명한다.

1. 접근방식: 자기정체성 확인

일본은 중국 인정문제가 제기되면, 타자로서의 중국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인정투쟁을 위한 목적에 맞게 중국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이라는 타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을까?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을 다룬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미국의 외압(外圧)에 수동적이었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 경우 일본은 미중관계나 미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정책을 변화시켰다고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외압 중심적 시각은 미국의 영향력을 중시하며, 일본이 미국의 중국정책이나 아시아정책과 협력하거나 연계하여 움직이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는 상이한 중국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던 시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시각은, 일본이 중국을 인식하는 데 상호관계가 주요했다고 보는 것이다. 미중관계나 미일관계가 일본의 대중국 인식 변화를 촉발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 간 상호인식이 매개변수로 작동하였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상호 인식에 기반한 시각은 중일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한다. 일본의 대중정책이 중국정부의 대일정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으로써 미국과 상이한 정책을 추구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이 상호협력을 추구하였음에도 왜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시각은 본 연구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으로, 인정투쟁의 첫 번째 메커니즘이 반영된 시각이다. 일본이 중국이라는 타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미중관계나 미일관계, 또는 중국의 대일인식이 변화를 추동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일본이 일본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일본의 중국 인식과 대중정책이 변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중국인식 과정을 통해 일본이 자기정

체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정체성 확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정, 불인정 행위를 변화시킨다.

〈표 II-3〉 일본의 중국 인식 과정 유형 분석

일본의 중국인식	외압적 인식	상호적 인식	복합적 자기 인식
인식과정	미중, 미일 -> 일중	(미일, 미중 ->) 중일 -> 일중	(미일,미중,중일->)일일->일중
특징	미국 중심적	중국 중심적	일본 중심적
설명가능 사례	1952 1971, 1972 일부	1964 정경분리, 1972	1951, 1964 1971, 1972
한계	미국과 상이한 중국정책 시도 사례 설명에 한계 (1951, 1964, 1972)	중일 협력에도 불구하고 불인정한 사례 설명에 한계 (ex. 1971, 1952 1964)	구체적 사례연구 필요
그림			

세 번째 시각은 앞선 두 시각과는 달리 일본의 자기 인식에 집중함으로써 일본의 중국 인정 행위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일본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표 II-3은 세 가지 인식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전후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국가로서의 이상적인 자아를 상정하는 동시에, 주권국가로서의 요건이 결핍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적 주권국가가 아닌 자신을 확인함으로써, 주권국가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현실의 자아에 대한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이익으로 발현된다. 그리고 주권국가로 도달하기 위한 노력, 즉 주권국가로의 인정투쟁과 밀접하게 연관될수록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형성하게 되어 당면한 외교정책들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게 된다.

인정투쟁의 첫 번째 메커니즘을 중일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다시 타자에 대한 인정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인정, 불인정 행위는 다시 또 자아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압적 인식과 상호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일본의 자기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한다.

2. 표출방식: 자기정당화

인정투쟁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국가행위자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당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서도 외교정책 결정자는 일본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수상과 외상을 비롯한 외교정책 결정자들은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발언을 통해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중국정책은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는데, 모리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국내문제’였다고 지적하였다(모리 2013).

이에 더해, 전후 일본과 중국의 국가적 특성이 반영된 자기정당화가 추가된다. 미드의 사회심리학적 인정 개념에서 다루었던 현실의 주체로서의 자아(I)와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아(me)의 괴리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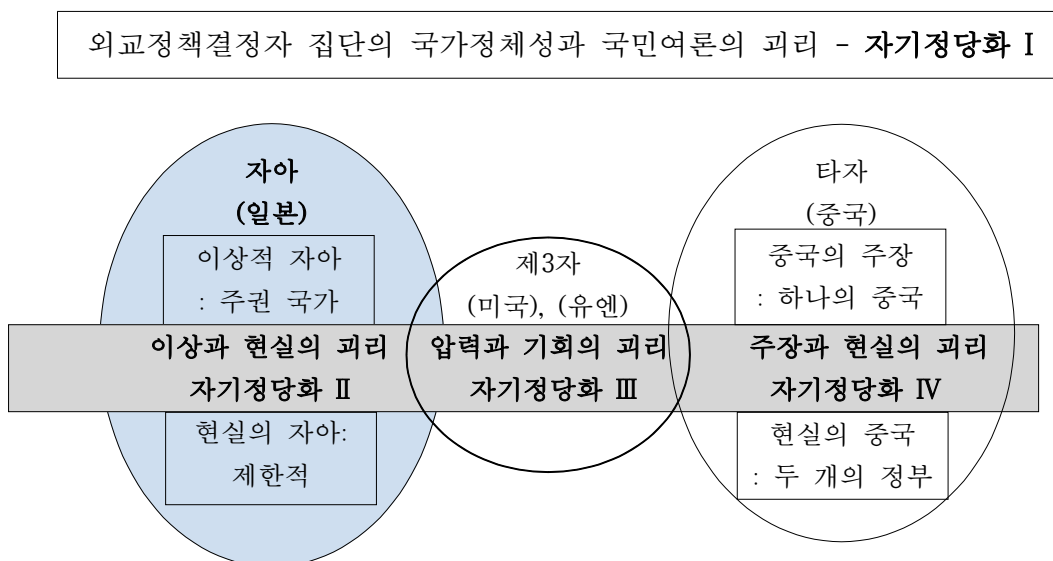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태도, 신념, 의견들 사이에 심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두 가지 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는 긴장상태이다(애런슨 2014, 281). 인간은 자신의 삶이 부조리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정당화(self-justification)이다. 자기정당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는 외적 정당화와 자신의 내면적 태도를 변화시켜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적 정당화이다.

일본의 중국 인정 과정에서 일본 외교정책자들은 1) 국가정체성과 국민 여론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자기정당화 I), 2)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자기정당화 II), 3) 냉전이라는 환경에서 비롯되는 외압과 자기 선택의 괴리의 축소를 위해(자기정당화 III), 4) 중국이라는 타자가 주장하는

이상적 타자와 현실적 타자 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정당화 IV) 자기정당화 서술이 나타나게 된다(그림 II-2 참조).

네 가지 자기정당화 발생 원인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중국 인식과정 분석(표 II-3) 중 복합적 자기정체성 확인은, 제3자로부터의 외압적 시각과 상호적 인식이 자기정체성 확인을 구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타자에 대한 인정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타자에 대한 자기정당화(III, IV)를 고려하면서 자아에 대한 자기정당화에 영향(II)을 미치고 상호작용하여 인정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정당화 서술(I)로 대내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림 II-2〉 전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정당화의 발생원인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자기정당화를 국회의사록과 외교청서, 유엔연설, 교섭문서, 회고록 등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유형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자기정당화 서술이 다자관계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가, 양자관계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가에 따른다. 두 번째 기준은 자기정당화 서술에서 나타나는 가치가 보편성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특수성을 강조하는가이다.

우선, 일본정부가 다자관계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경우 ‘국제 규범형’ 자기정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엔외교 중시원칙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일본정부가 중국을 다자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아시아 선진 공업국’으로서의 일본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표현과 함께 등장한다. 이 유형은 ‘지역협력형’ 자기정당화로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념대립형이다. 일본은 중국을 양자관계에서 바라보지만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립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이다.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인식하면서, 미일협력과 반공정책이 함께 나타난다. 1952년 미일안보조약 체결과 일본과 대만의 평화조약 체결의 사례에 해당한다.

네 번째 유형은 ‘역사문화형’이다. 중국을 양자관계에서 바라보면서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우 나타난다. 일본을 중국과 일의대수를 마주하는 이웃국가로 보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는 경우이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자기정당화 서술 유형이다.

〈표 II-4〉 자기정당화의 표상 유형

자기정당화	보편성 강조	특수성 강조
다자관계	국제규범형 유엔외교 중시 “국제사회일원”	지역협력형 경제협력 중시 “아시아 선진공업국”
양자관계	이념대립형 미일 협력 중시 “자유세계 일원”	역사문화형 일중 양국 중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인접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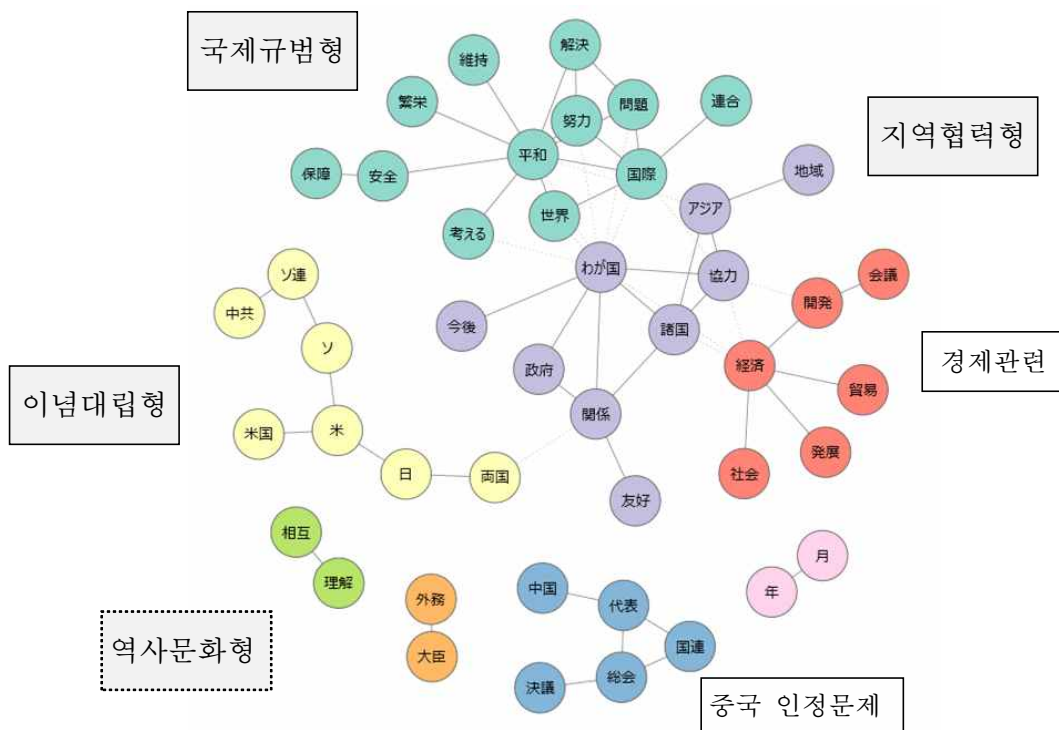
1957년부터 1973년까지 외교청서에서 중국 관련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네 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발생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공기네트워크)를 살펴보면,⁴⁾ 일본의 중국에

4) 본 연구에서는 R프로그램을 그래프 패키지 igraph를 사용하는 KH Coder를 이용하여 분석하

대한 인식에서 중국 인정문제의 비중이 높으며, 주로 경제분야와 관련된 서술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わが国)를 중심으로 보는 자기정체성 인식의 접근 방식이 나타난다.

일본정부의 중국과 관련된 발언은 <세계-국제-연합-평화-노력-해결-번영-안전-보호>로 대표되는 국제규범형 단어 군집, <여러 나라(諸国)-아시아-협력-지역-우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형 단어 군집, <중공-소련-미국-미-소-일-양국>의 이념대립형 군집, <상호-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형 단어 들로 유형화할 수 있다(그림 II-3).

<그림 II-3> 텍스트 분석: 1957~1973년관 외교청서 중 중국 관련 내용



* 출처: 1957~1973년관 외교청서 텍스트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 사이중심성 기준 분류

였다. KH Coder는 특히 일본어 텍스트 분석에 특화되어 있으며, igraph 패키지는 그래프의 가시성이 뛰어나고, 특히 동시발생 네트워크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매년도 외교청서의 네트워크 분석의 변화를 살펴보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국제규범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제규범을 중시하고, 국제 규범 관련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회복으로의 인정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다. Hagström은 일본의 자아 정체성이 한편으로는 미국/서구,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아시아를 타자화 하면서 ‘예외성’(exceptionalisation)을 획득하였다고 보았다. 미국/서구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사회화(socialisation)가, 중국/아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안보화(securitisation)가 작동하였다(Hagström 2015). 일본이 국제규범형을 중시한 것은, 일본이 미국과 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화를 추진하려고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 인정투쟁의 속성: 외교적 위선

인정투쟁의 세 번째 작동기제는 자기정당화 서술에서 나타나는 도덕주의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도덕주의적 접근이 표면화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 간 인정행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을 수 있다(Krasner 1999). 일본의 중국인정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 도덕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양자 간 외교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외교적 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외교적 위선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규범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가리킨다. 크라스너의 조직된 위선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나타나는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위선을 가리킨다면, 외교적 위선은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위선의 다양성을 집중하여 살펴보기 위한 개념이다. 또한 크라스너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이익추구의 일환에서 양국 간 규범이 표면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규범으로 내세우는 특징을 지적하고,⁵⁾ 다시 규범 속에 자리하고 있던 자기 이익이 표출된다고 보았다. 단기적

5) 전재성(2015)은 크라스너의 ‘조직된 위선’이 가진 정치와 도덕의 문제제기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크라스너가 제기한 ‘결국 법적 평등에도 불구하고 왜 베스트팔렌 주권이 부당하게 위

으로는 협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를 외교적 위선이 가진 규범과 이익의 양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들과 다른 중일관계의 외교적 위선의 특수한 측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인정부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스스로의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은 일본이 주권투쟁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자기정당화 과정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적절성의 논리를 표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위선’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일본의 중국인정은 ‘중국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의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일본의 하나의 중국 불인정은 인정을 회피하고 유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위선은 보다 구체적인 외교의 기술로 발현된다. 일본 외교의 기술은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의 네 가지로 나타난다. 외교적 기술은 규범적 표현을 강조하는가, 이익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관련 문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나누어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5〉 외교적 위선의 구체적 외교의 기술

외교의 기술	규범 강조	이익 중시
소극적 해석	미뤄두기	경계짓기
적극적 해석	쌓아가기	다중해석

반되는가?’ 보다는 ‘베스트팔렌 주권의 불평등성 속에서 왜 법적 주권의 원칙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규범적 정당화가 받아들여졌는가?’가 올바른 질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제성이 제기한 국제사회 조직 원리의 계보적 접근의 문제제기는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후 중일관계의 맥락에서 조직된 위선을 조망함에 있어, 두 가지 질문 모두 중요하다고 본다. 결과의 논리와 적절성의 논리의 선후관계보다는 두 논리 간의 비정합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일본외교의 기술은 일본외교의 애매모호함 속에 가려진 일본의 외교적 위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미뤄두기는 해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에 도달하려는 기술이다. 일본어로는 다나아게(棚上げ) 방식으로 표현된다. 다나아게란 문제를 미해결인 채로 일시적으로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민감한 문제에 반응하는 일본정부의 외교전략 중 하나이다(최희식 2008; 최은봉, 오승희 2012).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합의 도달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그 논의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미뤄두기는 일본의 대중 외교정책에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불언급론’, 이후에 다루기로 하는 ‘차후 연기론’,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다음 세대로 논의를 넘기는 ‘차세대 해결론’ 등으로 표현된다(손기섭 2011). 미뤄두기는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소극적 해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규범을 강조한다. 갈등 쟁점을 미뤄두는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쌓아가기는 관계를 중층적으로 겹쳐가고 단계적으로 진전시켜나가는 과정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 외교적 기술이다. 일본에서는 쓰미아게(積上げ)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중국어로는 이에 해당되는 단어로 지엔쥘(渐进)이 있다(최은봉, 오승희 2012). 어떠한 문제를 단일하게 단절적으로 보기보다는 양립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존을 추구한다. 과정에 의미를 두고 양립가능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 해석과 규범 강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경계짓기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분리시키거나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분리와 조합, 잘라 붙이기 등의 의미를 가진 키리바리(切張り)로 표현할 수 있다. 분리될 수 없는 문제를 별도로 다루려고 하거나, 반대로 서로 다른 이슈들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연계/비연계(link/delink) 기술이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정치적 이익 계산을 반영하여 일본의 이익에 적합한 단일한 해석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해석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다중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기술이다. 일본 외교정책의 다마무시이로(玉虫色)의 기술이다. 다마무시이로, 즉 ‘비단벌레색’이 빛에 따

라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에서 유래된 ‘어느 쪽으로든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관용표현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한 결과의 논리 중심적인 이익확보를 위한 설명이다. 또한 해석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해석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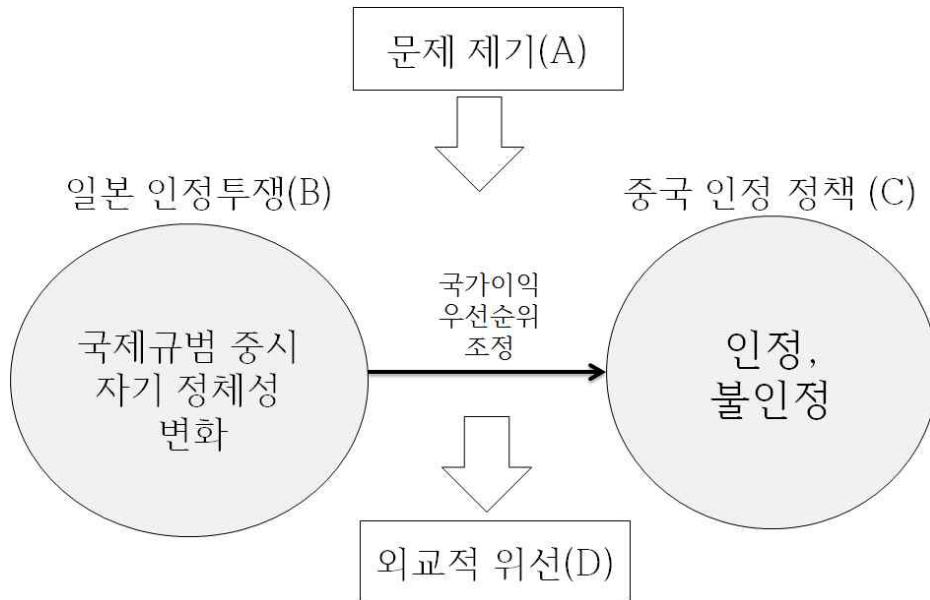
조직된 위선의 개념을 제시한 크라스너는 결국 국가들의 규범적 표상화의 이면에 정치적 계산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았다(Krasner 1999). 크라스너는 정치적 계산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속성을 강조하였지만, 크라스너가 위선의 개념을 차용했던 브룬손(Brunsson)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위선이 협력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위선은 여러 가지 충돌되는 가치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하고, 국가들이 표방하는 위선적 가치들이 실제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Brunson 1989). 협력적인 측면이 중요한가, 갈등 유발의 측면이 중요한가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니버 2015). 양국의 협력을 위해,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추진된 중일국교정상화는 어느 시점에서, 규범적 속성과 정치적 속성의 복합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D. 본 연구의 분석 틀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개별자로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이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인정투쟁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서는 자기정체성 확인, 자기정당화, 외교적 위선이 작동한다.

제 III장부터 제 VI장까지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정책 형성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각각의 장에 적용되는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II-4와 같다.

〈그림 II-4〉 본 연구의 분석틀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우선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과 관련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작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의 중국정책에 대한 변화 혹은 유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일본 외교정책 결정자는 중국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한다. 제한적 주권국가로서 일본이 국제사회 지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정투쟁 과정에서 대내적, 대외적 자기정당화가 표출된다. 여기서 자기정당화의 표상은 국제 규범형, 지역 협력형, 이념 대립형, 역사 문화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제규범형은 일본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규범형 일본이 자기정체성 확인이 다른 유형과 어떻게 접목되어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규범형 자기정체성’의 변화가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본의 인정투쟁은 일본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중국 인정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중국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각각에 대한 인정은 9가지의 인정과 9가지의 불/비인정 개념을 통해 미세한 변화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이 자기정당화로 표출되고 중국 인정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외교적 위선의 특징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제Ⅲ장부터 VI장까지의 사례연구는 문제제기(A절), 일본의 인정투쟁(B절), 중국 인정정책(C절), 외교적 위선(D절)의 순으로 설명한다.

III. 사례 1: 샌프란시스코, 1951-1952⁶⁾

일본과 연합국 간의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⁷⁾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정부는 중국 인정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패전국 일본이 전쟁 상대국들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표로 어느 정부를 초청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 평화조약 체결 당사자인 중국은 전쟁기간 동안 상대하였던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의 정부인가, 아니면 1951년 시점에서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있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정부인가?

이 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개최 전후로 나타난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과 자기정당화가 어떠한 중국 인정정책으로 연계되는지 살펴본다. III장의 분석을 위해 외교청서,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회의 참석 발언, 요시다 수상⁸⁾의 회고록(吉田茂 1958, 2012, 2015)과 관련자 회고록(張香山 1998), 그리고 미국의 FRUS에 기록된 샌프란시스코 관련 문서들을 참고하였다(FRUS 1951).

A. 문제제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국의 어느 정부를 초청할 것인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참석문제를 두고 연합국 내 각 국가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의견이 상반되었다.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

6) III장의 내용은 필자의 공동연구인 최은봉, 오승희, 2011. “냉전 초기 일본의 중국 정부 선택 문제와 대중 등거리 전략.” 『아시아연구』 14(2), 189-216. 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7) 일본 내의 정식명칭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日本国との平和条約)’ 혹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サンフランシスコ対日講和条約)이다. 본고에서는 일화평화조약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8) 요시다 시게루(1878년 9월 28일~1967년 10월 20일)는 일본의 제45, 48, 49, 50, 51대 총리이다. 도쿄 출신으로, 92대 아소 다로 수상의 외조부이다. 도쿄 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외교관으로 주영대사, 외상을 역임하였다. 제1차 요시다 내각은 1946년 5월 22일부터 1947년 5월 24일, 제2차 요시다 내각은 1948년 10월 15일~1949년 2월 16일, 제3차 요시다 내각은 1949년 2월 16일~1952년 10월 30일, 제 4차 요시다 내각은 1952년 10월 30일~1953년 5월 21일, 제5차 요시다 내각은 1953년 5월 21일~ 1954년 12월 10일까지로 재임통산일수는 2,616일이다(日本首相官邸 2015).

하였고, 미국은 중화민국 정부의 참석을 주장하고 있었다. 의견차는 쉽게 조율되지 않았고, 결국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면서 일본은 중국 인정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제적 합의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영국은 일본이 대만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 할양되었다고 해석하고 1950년 1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대표정부로 인정하였다. 반면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 대만을 중국에 할양한다는 직접적인 기설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대만 및 평후제도(澎湖諸島)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며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고 있었다.

중국대표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영국과 중화민국을 지지하는 미국 사이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 1951년 6월 19일 미영 외상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가담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영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극동위원회 참가국 3분의 2 다수가 승인하는 국가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시키자고 제안하였다. 극동위원회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1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영국 연방에 속한 나라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이며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국가들은 버마(미얀마), 소련, 인도, 영국, 파키스탄이다. 영국 측 주장대로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대표 정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표 III-1 참조).

〈표 III-1〉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국가 (1949-1954)

년도	국가 수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국가
1949	10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북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몽골, 알바니아
1950	9	남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스웨덴, 덴마크, 버마,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핀란드
1951	1	파키스탄
1952년, 1953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국 없음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참조 필자 재구성 (수교일순, 강조는 극동위원회 국가)

호소야(Chihiro Hosoya 1984)는 일본과 중국과의 강화문제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4개국 관계에서 다루며 요시다 서한과 관련된 각국의 상이한 이해 관계를 밝혀냈다. 호소야는 미국과 영국의 중국 인정문제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영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지지한 주요원인으로는 홍콩에 대한 이권 유지와 동남아시아 시장의 선점 및 독점이 걸려있었다.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강화조약을 맺으면,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덜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 때문에 더욱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기를 희망했다고 보았다(Hosoya 1984).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반공주의자였던 덜레스 개인의 성향과 세계 1차대전의 강화조약인 베르사이유 조약이 상원비준을 얻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문제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았다(Hosoya 1984).

미영 간 중국 문제에 관한 주요 쟁점은 첫째, 중국대표의 선별성과 둘째, 일본의 외교주권의 행사 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영미 간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중국 인정문제 때문에 일본의 강화조약 체결이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덜레스와 영국의 모리슨(Herbert Morrison) 외상은 첫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초청하지 않는 것과 둘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을 때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덜레스-모리슨 합의(Dulles-Morrison Agreement)이다.

그런데 덜레스-모리슨 합의 중 두 번째 내용인 외교주권 행사시점의 문제, 즉 ‘일본의 중국에 대한 향후의 태도는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상태에서 일본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사항에 관해 이후 미국과 영국 간의 해석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는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상태’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두고 상이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후 일본이 독립하게 된 다음이라는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약 발효 이전이라도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미 독립적인 상태라고 보고 1951년 당시에 이미 일본이 중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정부에 가능한 빨리 중화민국을 선택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미국이 일본의 중국대표 선택을 재촉했던 이

유는 첫째, 딜레스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중화민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는 것이 미국 상원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을 수월하게 할 것이고, 둘째, 일본과의 강화조약의 상대국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중화민국이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殷燕軍 1996, 234).

한편, 영국정부는 일본이 국민당 정부를 중국 전체에 대한 합법적 정부로 인식하는 것에 ‘심각하게 반대’했다. 또한 일화평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이루어지면, 미국이 영국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 불만을 표출했다(FRUS 1951, 1343-1344).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 간에 이루어진 중국문제에 관한 딜레스-모리슨 합의는 사실상 중요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다. 1951년 12월 26일 딜레스가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는 ‘딜레스-모리슨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대중정책에 맞출 것’이라 생각했으며 ‘영국 정부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치명적인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방어할 수 없고, 미국에 의지해야 하고 그래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FRUS 1951, 1467-70).⁹⁾

중국대표 선택문제가 일본의 추후 선택으로 미루어진 가운데, 1951년 7월 12일 미국정부는 대일평화조약안을 발표하였다. 7월 20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회의 정식초청장을 중국대표를 제외한 관계각국에 발송한다. 일본정부는 24일 수락 회답하였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수상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재무장관, 토마베치 기조(苫米地義三, 국민민주당 최고위원장),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자유당상임총무), 도쿠가와 무네요시(徳川宗敬, 참의원 료쿠후카이 회원 총회의장), 이치마다 히사토(一万田尚登, 일본은행총재)으로 구성된 전권 회의단을 구성하여 9월 2일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였다(吉田茂 1958).

9) FRUS의 문서는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외교의 미국 의존성을 결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시다 서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영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에 의해 보다 강화되었는데, 버클리(Roger Buckley 2003)는 일본의 대중정책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갈등에 집중했고, 페레티(Valdo Ferretti 2003)는 일본정부와 영국 정부 간 정책적 유사성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엔커친(袁克勤 1992)은 요시다가 원래부터 국민당정부와 강화체결 의사를 이른 단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요시다가 중국 인정문제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에 이용한 구실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중 한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중국은 참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날 일본은 중화민국과 평화조약¹⁰⁾을 체결하였다.

B. 일본의 인정투쟁

1. 일본의 중국인식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중화민국에 대한 것이 우선했다. 일본과의 전쟁 상대국은 ‘중화민국’이었다. 요시다 수상은 회고록에서 일본은 장제스 총통을 지도자로 한 국민정부 즉 중화민국을 교전상대로 하였고, 장제스의 관대한 배려로 군대 및 거류민의 안전한 철수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중화민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吉田茂 1958).

그러나 요시다 수상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간단히 배제할 수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97%의 중국대륙과 당시 약 5억 명의 인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중국 대륙에 남겨진 약 3만 5천 명의 일본인들의 귀환문제(히키아게, 引揚) 해결(外交靑書 1957)을 위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요시다 수상은 중화민국과의 관계유지도 중요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불인정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피하고 싶었다. 급하게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고 정세의 변화를 살피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1951년 10월 29일 요시다는 국회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등거리 전략을 구체화한 일본의 중국정책 원칙을 밝혔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선택을 가능한 한 연기한다는 것이다.

10) 일본 내 공식명칭은 ‘일본국과 중화민국과의 간의 평화조약(日本国と中華民国との間の平和条約)’이고, 이를 줄여서 ‘일화평화조약(日華平和条約)’으로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후 ‘일화평화조약’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중국 중 어느 쪽을.....중국정부를 초청할지, 혹은 중공을 초청하는가에 대해 관계 연합국 사이에 일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일본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가능하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금후의 문제이며, 어느 쪽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관계는 조금도 없습니다.(1951.10.29, 참의원발언, 平和条約及び日米安全保障条約特別委員会 5호: 5)”

“중국정부의 선택권문제는 이는 표현이지만, 저의 기분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연합국 사이의 논의가 정해진 경우에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선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1951.10.29, 참의원발언, 平和条約及び日米安全保障条約特別委員会 5호: 20)

다음 날 위원회 발언에서도 요시다 수상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으며, 가능한 한 정부 선택을 피하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중국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까라는 것은 객관 상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중국 내부 사정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일본과의 장래관계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만약 권리가 있다고 해도 쉽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1951.10.30, 참의원발언, 平和条約及び日米安全保障条約特別委員会 6호, 4 괄호와 밑줄 필자)

요시다는 국제사회의 중국 선택문제의 불일치 속에서 일본의 국가목표를 최대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선택의 공간을 확보해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핵심에는 두 정부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수용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며, 일본의 선택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압박을 가했다.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으로 유엔 총회의 결의에서 침략국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점과 소련과의 동맹조약에서 일본을 공동의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요시다 수상은 당시 상황에서는 중화민국 정부를 상대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한다(吉田茂

1958).

그런데, 요시다 수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배제하지 않고자 하는 언급이 자주 확인된다. 중소동맹조약에 관해서도 요시다 수상은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대만과의 사이에 우호관계가 생겨, 경제관계도 심화되는 것이 원래부터 바라고 있었지만, 그 이상 심화되어 베이징 정부를 부인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피하고 싶었다. 이는 중공정권은 현재까지도 소련과 밀접하게 손잡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중국민족은 본질적으로는 소련인과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는데, 문명이 다르고, 국민성이 다르며, 정치 정세도 역시 달리하는 중소양국은 결국에 서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공정권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吉田茂 1958, 72 밑줄 필자).”

요시다 수상은 중국이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련에 배타적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중국은 소련보다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한 관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통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베이징을 모스크바에서 떼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Ferretti 2003). 이후 실제로 전개된 중소갈등을 볼 때 외교관 출신이었던 요시다가 정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殷燕軍 2007).

요시다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정부와 일본정부 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공산주의, 중화민국=자유주의라는 일본은 중소갈등의 가능성을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미국과의 시각차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경제적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1951년 10월 30일 요시다는 의회에서 어떤 중국 정부와 평화조약을 맺을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중국 본토와의 무역증진을 위해 상하이에 일본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중화민국에게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큰 충격이었다. 딜레스는

요시다 수상과의 회담을 요청했다.

1951년 12월 12일 덜레스는 일본 외무성 외무사무차관 이구치 사다오(井口 貞夫)와의 회담에서 중화민국을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만을 통치하는 정부로 한정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다음날 요시다는 덜레스에게 중화민국과의 조약 체결을 약속했다. 일본의 구두합의를 얻은 덜레스는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해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역시 중국선택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할 뿐이었다. 결국 영국은 미국을 설득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주일 영국대사였던 드닝(Sir Esler Dening)은 ‘미국은 우리가 좋아하던 말든 상관없이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조약을)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분명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압력 하에서 내줄 것이다.’ 라고 보고했고, 영국정부는 덜레스와의 회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Hosoya 1984).

요시다 수상의 중국 인정문제에 관한 입장은 1951년 12월 4일 요시다 수상이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성 고문에게 보낸 ‘요시다 서한(吉田書簡)’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1951년 12월 18일 덜레스는 한국을 방문한 뒤 요시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때 덜레스는 요시다 수상에게 요시다 서한의 초안이 되는 덜레스의 메모를 건넨다.¹¹⁾

“저는 일본정부가 중국 공산정권과 2국간 조약을 체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언합니다.”

요시다 수상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받아들여지기 쉽다. 하나는, 반공주의자인 요시다 수상이 중국의 ‘공산정권’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해석과,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요시다 수상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불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요시다 서한은 중화민국을 선택하라는 덜레스 고문의 압력을 요시다 수상이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미국 추종외교에 대한 사례로 거론된다. 그러나 요시다 서한에 나타난 위의 언급은

11) 미국의 기록에 따르면 요시다 서한은 덜레스 메모를 일본수상이 편지 형태로 다시 작성한 것이었다고 한다(FRUS 1951, 1445-6). 이로 인해 요시다 서한이 덜레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행위만 강조되어, 일본정부의 미국에 대한 추종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게 되었다.

좀더 복잡한 정황적 이해가 필요하다. 요시다 수상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으며, 이에 따른 일본의 자기 인식과 자기정당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의 중국 선택문제에 대한 교섭의 전후배경을 살펴보면, 이미 일본정부의 입장과 중화민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시다 서한이 딜레스 메모와 거의 일치한다면, 딜레스 메모 역시 이미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요시다 서한은 딜레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요시다의 각서가 아니라, 사전 교섭에 의해 절충된 중국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국의 필요에 의해 문서화한 것이었다는 추측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서한에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만이 아니라 중화민국 정부의 입장이 담겨져 있어, 이 세 정부의 입장이 절충되는 과정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일관되지 않는 입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 요시다 서한의 핵심내용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본 서한에는 동시에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우선, 가장 주목된 요시다 서한의 핵심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명시되어 있다. 중국 공산정권은 중소 동맹을 체결하며 일본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위협세력이므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2국간 조약을 체결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1950년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중소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은 실제상 일본을 향한 군사동맹입니다. 실제, 중국의 공산정권은, 일본의 헌법제도 및 현재의 정부를 강력한 힘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일본공산당의 계획(企圖)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고려에서 저는 일본정부가 중국 공산정권과 2국간 조약을 체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470, 밑줄 필자)

요시다 서한은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핵심으로 대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불인정하고 일화평화조약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각서로 인식되

어왔다. 분명 이 문구만 본다면 일본정부가 중국대표로서 중화민국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요시다 수상 역시 서한을 작성한 당시의 상황 하에서는 중화민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대만 국민정부는 그 현실에 지배하는 범위는 좁아도 전에 기록한대로, 중국 사변 이후의 우리 교전상대 정부이며, 유엔을 점하는 위치도 중요한 이상, 종전 시 우리 군민을 무사히 중국에서 인도해준 정의(情誼)를 생각하면, 강화의 대상으로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아울러 당시 나로서는 이 선택의 문제는 서둘러 이를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연장하여 정세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1. 미국의 평화조약 비준과의 연계
2. 유엔에서 베이징정부를 침략자로 낙인하여 교전상태가 됨.
3. 소련과의 동맹조약에서 일본을 공동의 가상적국으로 취급하고 있음.

따라서 조급하게 태도의 표명을 필요로 하는 한, 반드시 국민정부를 상대로 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당시 나아갈 곳이 없었다”(吉田茂 1958: 73).

그러나 요시다는 여전히 등거리 전략의 내용을 견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능하면 이 선택의 문제를 피하고 연장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등거리 전략은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요시다 서한의 다른 문장들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느 한 정부가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전면적인 정치적 평화 및 통상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한다고 기술함으로써, 중국을 대표한다면 두 정부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유엔에서의 대표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의 선택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근거는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표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이후 1972년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에서도 주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유엔에서 중국의 의석, 발언권 및 투표권을 갖고, 약간의 영역에 대해 실제로 시정능력을 행사하고, 또한 유엔가맹국의 대부분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산정권에 관해서는, 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침략자로 현재 비난되고 있어, 그 결과, 유엔은 그 정권에 대한 특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일본은 현재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국간 평화조약의 효력발생 후에도 그 제5조(a)(iii)의 규정을 따라 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일본은 유엔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유엔이 온갖 원조를 제공함과 동시에, 반대로 유엔이 방위행동 또는 강제행동을 취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원조의 공여를 보류해야 할 것을 약속합니다.”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469-470).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유엔의 결정에 기반한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이 국제사회의 선택을 고려하여 중국 인정문제에 대처해 갈 것을 밝히고 있다.

셋째, 요시다 서한의 핵심 내용이며 이후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에서 거의 그대로 조문화된 다음의 문구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2국간 조약의 조항은,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배 하에 있고, 또는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469)

이 표현은 현재 또는 미래에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지배 하에 있는 영토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배 하의 영토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타자로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식보다 더욱 복잡적이었다. 요시다 수상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산국가라는 한 차원에서만 인식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시아 국가이며 더욱이 일본의 주요 무역국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요시다는 중국 본토의 상하이에 무역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미국의 반공주의자들

을 놀라게 하였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요시다 서한이라는 약속으로 나타난 것이다.

요시다 서한은 1952년 1월 16일 공표되었다. 서한공표 직후 국민정부에게서 일본과의 평화조약교섭 개시의사가 공표되어 2월에는 전 재무대신 카와다 이사오(河田烈)을 단장으로 한 전권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요시다 서한은 미국상원의 대일평화조약심의 촉진에도 효과가 있었다. 미국상원은 1952년 1월 21일부터 심의를 개시하였고, 3월 20일 비준안이 의결되었다.

요시다 서한에 명시된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불인정 확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차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소지를 남겨두기 위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요시다 서한 이후에도, 1952년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인식은 지속된다. 또한, 일본의 타자에 대한 인식은 자국에 대한 인식으로 연계된다.

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독립국으로의 권리수용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의 주체를 명시하고 미국과는 다른 시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려는 일본정부의 견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문예춘추』의 긴급 중간호에서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전 수상은 “여기까지 오면 일본은 두 세계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入江昭 1993, 196). 그는 중국의 공산화를 일본의 위기로 인식하고 재군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若宮啓文 1996, 59). 소련대표는 일본과 연합국의 강화조약이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비난하였고, 일본 국내에서도 “이 강화에 의해 일본은 아시아의 고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吉田茂 1958).

중화인민공화국 불인정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확산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의 재무장, 헌법개정, 강화조약 체결 등 일본의 국내외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공산권과의 관계설정과 일본의 명확한 자기 인식을 요구하며 사회 내 이견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었다.

전후 일본의 정체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전후 요시다 정부는 정

치적인 면으로는 강화조약 체결을 통한 독립 획득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국가 목표로 확립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패전국 일본의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정치적 독립은 미군정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미국 점령 하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과 경제 지원을 통해 이 두 가지 차원의 목표를 추구해나가고 있었고, 이러한 ‘요시다 노선’은 이후 ‘요시다 독트린’으로 정립된다(Pyle 2008).

요시다 독트린은 경제와 통상 중심 정책이 부각되고, 외교분야에서 일본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이해되었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주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면, 정치적 독립과 경제발전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일본은 패전국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는다. 요시다 수상은 1951년 9월 8일 강화조약 조인식에서 일본이 연합국의 “친구”가 된 순간을 기록하였다.

연합국대표는 알파벳순으로 서명하였고, 베네수엘라 전권을 최후로 서명이 종료되었다. 우리 전권단이 서명하였고 그 후 에치슨 의장의 폐회인사 중 “우리 친구 일본”이라는 말을 하였다. 정확히 오전 11시 44분이었다. 그날 저녁 5시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조인도 완료되었다(吉田茂 1958).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강화조약의 의미만이 아니라 독립선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의 독립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였으며, 중화민국을 인정한 것도 일본이 독립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45년 9월 항복문서에 서명한 뒤 평화조약 조인까지 만 6년이 경과되었다. 6년으로 강화, 독립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늦은 것은 아니었다. 대일점령관리의 주도국이 미국이었다는 행운이 크지만, 일본인이 내뱉하면서 국가재건과 부흥에 정진하고 포츠담선언의 취지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미국과 각국정부에게 인정받게 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吉田茂 1958).

요시다 수상이 1951년 9월 14일 하네다에 도착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 요시다 정권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평화회의의 우호적 분위기, 장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각국의 기대와 희망,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 중대함을 자각하고 일치단결하여 강화조약의 이행과 민주자유주의에 철저를 기하여 열국과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평화 · 문화 · 번영에 노력함이 신일본재건을 돕는 방법입니다(吉田茂 1958).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X 이념대립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관한 자기정당화는 1949년 이후 역사문화형에서 점차 국제규범형과 이념대립형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자기정당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유형은 역사문화형이다. 중화민국이 일본의 전쟁 상대국이었고 중국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인식과, 일본군 철수시 도움을 받았다는 은의 등을 고려하여 중화민국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영토와 5억에 이르는 중국인을 통치하고 있다는 점과 전후 중국 잔류 일본인의 귀환을 위해서도 베이징 정부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문화형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은 가장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다. 역사문화형이 강조되는 경우, 일본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를 인정하려는 입장이 나타난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국제규범형이 두드러진다. 일본이 유엔의 가치와 선택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일본 외교의 기본 입장으로 정착한다. 일본의 유엔중심 외교는 일반적이고 진부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이 중국대표 문제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의 변화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본다면, 일본의 유엔중심 외교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1951년에서 1952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중국정부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유엔은 1950년 총회 결의안 A/RES/396(V)에서 유엔에 의한 회원국 대표의 인정에 관해 ‘하나 이상의 정부가 대표 주장시 헌장과 상황에 따라 고려’ 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결의안 490(V)을 통해 중국대표권을 심의하기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중화민국이 의석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중국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1950년대 초반에 나타나는 국제규범형의 특징이다.

1952년이 되면서, 일본의 자기정당화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기위치를 재확인하는 이념대립형이 보다 강조된다. 이념대립형은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자기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과 대비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자아와 타자가 분명히 대립하게 되며, 냉전 이데올로기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중화민국만을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배제하게 된다. 이 경우,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은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정부만을 선택하는 것은 유보하려는 정책이 나타난다.

1950년대 초반은 일본이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된 시기이다. 역사문화형이 중일 양자 간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인식으로 존재하며 두 정부 모두를 인정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1949년 역사문화형을 기반으로 시작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1951년 이후 국제규범형과 이념대립형 강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중화민국을 인정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C. 일본의 중국인정: 중화민국의 권리승인

요시다는 어느 한 정부를 선택하기보다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모두를 인정하고자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자 한 ‘등거리전략’으로 정리될 수 있다(최은봉·오승희 2011).

등거리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의도를 확인한 영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제안한 정책안이다(Hosoya 1984). 실제로 정책으로까지 입안되거나 정확한 명칭으로 표방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등거리 정책의 내용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등거리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이 등거리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론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한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나 권리수용은 부정한 것이다.

중일 양자 간의 관계에서도 국제적 규범이나 도덕은 정치적 결과의 논리가 양립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 이념대립형과 같이 중화민국만을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일본은 국제규범형을 내세우며 일본의 선택을 유보하고 있었다. 일본의 정치적 결과의 논리상 이념대립형이 강화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연합국 측에서는 평화조약이었지만, 일본에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였다. 일본 주권회복의 조약인 것이다.

일본의 주권회복이 최우선시되는 과정에서 중국 인정문제가 다루어졌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비준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이로 인해 공산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시다 서한이 나타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초청문제에서 시작된 요시다 정부의 중국 인정문제는 1952년 요시다 서한과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으로 중화민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본토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국 선택 문제를 가능한 한 연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확인 및 존재수용의 인정을 위한 유보였던 것이다.

1952년 3월 27일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아라키 쇼자부로(荒木正三郎君) 위원장이 요시다 수상에게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교섭이 “대만정부를 중국의 정부로 인정하여 평화교섭에 임하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한 요시다 수상의 답변을 통해 중화민국과의 인정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일화평화조약 교섭)는 제가 딜레스 서한(요시다 서한)에 명확히 한대로, 대만과 평후제도에서 현재 통치의 실체를 행사하고 있는 대만 정부와 선린관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서, 조약의 교섭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체라든가, 중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1952.3.25 予算委員会 27호, 6)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 타이베이에서 서명되고, 1952년 7월 8일 비준되었다. 1952년 8월 5일 타이베이에서 비준서와 교환되고 효력이 발생하였다. 14개 조항과 의정서, 교환공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4개 조항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일화평화조약, 1952년)

일본국과 중화민국은,
 그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유대와 지리적인 근접을 고려하여, 선린관계를 상호 간 희망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공통의 복지의 증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여,
 양자 간 전쟁상태의 존재의 결과로서 나타난 제 문제의 해결의 필요를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로써 그 전권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일본국정부 카와다 이사오(河田烈)
 중화민국대통령 예공차오(中華民國大總統 葉公超)
 이후 전권위원은 상호 그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된 후, 다음의 제조건을 결정했다.

제1조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사이에 전쟁상태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 종료한다.
 제2조 일본국은, 1951년 9월 8일에 아메리카 합중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이하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라고 함) 제2조에 근거하여, 대만과 평후제도 및 난사군도(新南群島)와 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인정된다.
 제3조 대만과 평후제도에 있는 일본국과 그 국민의 재산과, 대만 및 평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의 당국 및 그 주민에 대한 일본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의 처리,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러한 당국 및 주민의 재산권과, 일본국과 그 국민에 대한 이러한 당국과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의 처리는, 일본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와의 사이의 특별취급의 주제로 한다. 국민과 주민이라는 단어는, 이 조약에서 사용되는 때에는 언제나 법인을 포함한다.
 제4조 1941년 12월 12월 9일 전에 일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전쟁의 결과로서 무효가 된 것이 인정된다.

제5조 일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01년 9월 9일에 베이징에서 서명된 최종의정서와 이를 보충하는 모든 부속서, 서한 및 문서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및 특권을 포함한 중국에서의 모든 특수한 권리 및 이익을 포기하고, 또한 앞서 언급한 의정서, 부속서, 서한 및 문서를 일본국에 대하여 폐기하는 것에 동의했음이 인정된다.

제6조 (a)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상호 관계에서, 국제연합헌장 제2조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b)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는 바이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에 의해 그 공통의 복지를 증진한다.

제7조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무역, 해운 그 외 통상의 관계를 안정시킴과 함께 우호적인 기초 위 두기 위해, 조약과 협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8조 일본국 및 중화민국은, 민간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9조 일본국과 중화민국은, 공해에서 어획의 규범과 제한 등에 어업의 보존 및 발전을 규정하는 협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에 노력한다.

제10조 이 조약의 적용상, 중화민국의 국민에는, 대만 및 평후제도의 모든 주민 및 이전의 그 주민이었던 자 및 그들의 자손으로, 대만 및 평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이 현재 시행하고, 또한 금후 시행하는 법령에 의해 중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자로 본다. 또한 중화민국의 법인에는, 대만 및 평후제도에서 중화민국이 현재 시행하고, 또한 금후 시행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등록된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 조약 및 이를 보충하는 문서에 특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과 중화민국간의 사이에 전쟁상태의 존재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상당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12조 이 조약의 채택 그리고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교섭과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한다.

제13조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타이베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이 조약은, 일본어, 중국어 및 영어에 의한 것으로 한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의 본문에 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각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조인했다.

1952년 4월 28일, 타이베이에서, 본서 2통을 작성한다.

일본국을 위해 카와다 이사오

중화민국을 위해 예공차오

* 출처: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2009, 日本外務省, 中華民國外交部 참조 필자작성.

** 본 조약은 일문, 중문,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위의 번역문은 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기를 우선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952년 6월 26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요시다 수상은 일본이 모든 중국과 선린외교 관계임을 강조하며, 요시다 서한과 일화평화조약 체결당시 향후 중화인민공화국까지 포함하는 ‘전체 중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중화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전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일보 전진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추구하고 있었다.

“취지는 선린외교라고 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가장 중대한 것이라 생각해 우선 그 일보로서 중화민국 정권과의 사이에 조약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략)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는 일본이 전체 중국과의 사이에 선린외교라고 할까요, 다년간 관계를 부활시키고 싶다, 그 취지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서한을 쓴 때도, 혹은 보냈을 때에도, 또한 중화민국과의 조약관계에 들어갔을 때도 취지로서는 결코 서한의 취지에 반하지 않을 목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중략) 이는 조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화민국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영토를 가진 중화민국과의 사이에 조약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래는 장래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마지막에는 하나의 중국 전체와의 조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바랍니다.” (1952.6.26 外務委員會 43호, 7-8 밑줄 필자)

그러나 일본의 유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정치적 관계는 단절되었다. 일본의 등거리 전략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일본의 중화민국의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배제를 의미했다.

요시다 서한에 대해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장한부(章漢夫)는 “이 서한이야말로 일본 반동정부와 미국 제국주의가 결탁하여 중국 인민과 중국영토에 대해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한 증거이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이어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가장 노골적인 전쟁도발행위이다.” 라고 강하게 비난했다(殷燕軍 1996, 242). 또한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자 저우언라이는 5월 5일 요시다 정부가 “주인인 미국의 지도로 대만과 결탁하고, 그들이 맺은 조약을 ‘현재중화민국정부의 지배하에 있고 또는 장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모든 영토에 적용한다.’ 라는 완전히 제정신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마저 언

급” 하였다고 하면서, “중양인민정부와 중국 인민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적시하는 요시다-장제스의 ‘평화조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한다.”(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39-40)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일본 정치계와 경제계에서는 중국대표 선택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지속되어 나타났다. 요시다 후임으로 1954년 취임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수상은 요시다 정부의 정책을 대미일변도 정책이라 공격하고 대 공산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1954년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시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요시다의 등거리 전략은 중화민국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중국 선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려 가운데 일본은 양 정부 모두에 대한 존재 긍정의 인정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권회복이라는 보다 중요한 일본 자신의 인정투쟁 과정 속에서 중화민국에는 권리수용을 부여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권리인정은 유보하였다.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문제는 중국에 대한 인정부여의 문제에 앞서 일본 자신의 비인정의 극복, 인정획득을 위한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다중해석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초청시기부터 일본과 중화민국 평화조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미뤄두기와 다중해석의 외교적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미뤄두기였다. 가능한 한 선택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1950년대 초 일본의 등거리 전략은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미뤄두기 전략이었다. 그러나 1952년 일화평화조약으로 사실상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수용부정,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확인인정,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인정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수용인정까지 염두에 두었지만 미국의 중국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을 인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론과 상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의 충돌과 중국과의 충돌을 미뤄두기라는 외교적 기술로 조정하면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나갈 수 있었다.

다중해석의 경우 조약 체결의 시점과 조약 적용 범위의 문제로 나타났다. 조약 시점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화평화조약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중국 정부선택을 가장 재촉한 것은 중화민국 정부였다. 딜레스-모리슨 합의로 중화민국 역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강화 국가에서 배제되자 미국을 비난하였고, 중국대표의 선택이 일본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항의하였다. 중화민국은 비록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초청되지 않더라도, 차선책으로 일화평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교섭 초반부터 중화민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이 조약을 통해 중국대표로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안에 들어간 것이며, 중국대표 정부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中華民國外交部 2015).

1952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강화조약은 일본 국내에서 11월 18일에 국회에서 승인, 비준되었다. 조약발효는 1952년 4월 28일 오후 10시 반이었다. 9월 17일 랭킹(Karl L. Rankin) 주대만 미국공사는 일본외무성과 중화민국 간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개시를 권고받았고 이에 대해 중화민국 측은 “일본과의 2국 조약은 먼저 미국과 그 조문 및 수순을 교섭하여 정할 것이며 일본과는 직접 길게 교섭할 생각이 없다.”며 대일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자세는 조약 체결 시점에 대한 중화민국의 입장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다. 일본은 중국 선택문제를 가능한 연기하려고 했다. 요시다 서한을 통해 중화민국과의 조약체결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려는 등거리 전략은 요시다 서한 작성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국제사회가 결정한 다음에 일본이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가능한 한 중국을 대표하는 어느 한 정권만을 선택하는 결정을 미루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과 중화민국간의 평화조약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중화민국의 주장은 일본 측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또한 중화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최종 선택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

였다.

다중해석은 일본과 중화민국은 ‘조약 적용범위’ 조항에서 보다 강하게 반영되었다. 중화민국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하나의 중국론을 일본이 인정하기를 원했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조약의 적용범위를 대만으로 축소하고자 하였다.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의 초안은 중화민국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일본정부에 중화민국을 선택할 것을 압박했던 미국은 중화민국 측에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적용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은 중화민국 측에 적용범위에 관한 문구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1951년 9월 22일, 장제스 주석의 최고회의에서 조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2개의 문구를 채택하였다

A안. 본 조약은 중화민국의 모든 영토에 적용한다. 국제공산주의의 침략의 결과에 의해 공산군에 점령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화민국은 일단 당해지역을 지배 하에 둔 경우, 동지역에도 곧바로 동조약이 적용된다.

B안. 중화민국에 관해서는, 중화민국국민정부의 지배 하에 현재 있고, 그리고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顧維鈞 1989, 715-716.)

1951년 10월 19일 미국 국무성은 B안이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였고 중화민국이 실제 지배 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인하였다(顧維鈞 1989, 245). 그리고 1951년 10월 24일 중화민국은 ‘쌍방은 실제 현재 지배 하에 있고, 그리고(及び, and)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도 적용된다’ (顧維鈞 1989, 245)고 수정하였고, 이 문구는 미국을 통해 일본정부로 전달되어 요시다 서한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요시다 서한에서는 이 문구가 ‘현재 지배 하에 있고, 또는(又は, or) 금후 들어가게 될 모든 영역에도 적용 된다’ 로 변화되었다.

여기서 ‘今後入るべき’의 해석은 중요하고도 민감하다. ‘금후 들어가게 될’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중국 본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조항에 대한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해석이 상이해진다. 이 문

구는 미국과 중화민국 간 그리고 일본과 미국 간의 교섭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였다(殷燕軍, 2007). 일본은 향후 중국 정세에 대해 가능한 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 적용영역의 최소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들어가게 될 영역(今後入るべき)’이었던 요시다 서한의 문구가 일화평화조약에서 ‘금후 들어가는(今後入る)’이라는 문구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 본토를 ‘들어가게 될’ 영토로 해석 가능한 주관적인 표현이 ‘들여가는’이라는 표현으로 객관화되면서, 일본이 중화민국의 대륙 반공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는’과 ‘그리고’의 문제보다 중국 본토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약은 이후 대만정부가 중국 본토를 지배하게 될 경우 그 영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는 합의 하에 일본 측이 요구했던 ‘또는 금후 들어가는 모든 영역’(又は今後入るすべての領域)으로 결정되었다.

<요시다서한> 표현

일문) 中華民國國民政府の支配下に現にあり又は今後入るべきすべての領域に適用があるものであります。

중문) 这个双边条约的条件将适用于现在、或以后可能属中华民国国民政府管辖的全部领土。

<일화평화조약 교환공문> 제1호

일문) 中華民國政府の支配下に現にあり、又は今後入るすべての領域に適用がある

중문) 應適用於現在在中華民國政府控制下或將來在其控制下之全部領土

중요한 것은 일본이 결국 중국 전체의 대표로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중화민국은 향후 중국 전체를 지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대표로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조인된 일화평화조약(일화평화조약)은 14개조의 정문 외에 의정서, 교환공문 그 외에 복잡한 형식을 취했지만, 요약하면 그 조약은 대만 및 평후제도를 현재 지배

하고 있는 국민정부와 사이의 조약이며, 장래에는 전면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싶지만, 조인된 조약으로서 국민정부를 전중국의 대표정권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약안 심의의 중참양원에서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吉田茂 1958, 76 괄호와 밑줄은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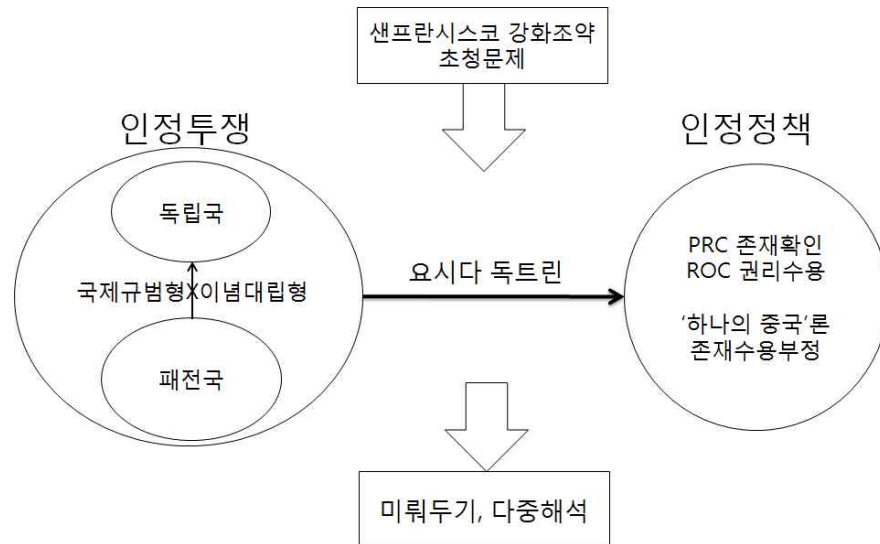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중화민국이 본토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조약이 중국 전체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중국 정세의 변화에도 일본이 의도했던 바를 실현할 수 있었다.

E. 소결

1945년 패전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가 되기까지, 일본은 패전국에서 독립국이 되기 위한 인정투쟁 중이었다. 중국에 대한 인정정책은 전후 일본을 재건하기 위한 요시다 독트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회 내 다른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패전국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독립국으로서의 권리수용인정을 추구하였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인정과 중화민국에 대한 권리수용인정을 부여하면서, 하나의 중국론에 대해서는 존재수용부정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미국과의 정책 불일치, 중국과의 인식 불일치 속에서 일본의 국제규범형과 이념대립형이 강조되는 자기정당화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미뤄두기와 다중해석의 외교적 기술을 통해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위선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1951-1952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IV. 사례 2: 도쿄, 1962-1964¹²⁾

1960년 일본의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¹³⁾은 경제성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케다 수상은 10년간 일본 국민소득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소득배증정책’과 같이 국내 경제성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케다 내각의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측면에 비해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케다 수상은 기시 내각의 통산대신 시절에서부터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으며(井上正也 2011), 내각 성립 후에는 미국 등 서측 진영과의 협조를 중시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적대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케다는 제58대, 59대, 60대 수상으로 역임하였는데, 제3차 이케다 내각 임기 후반의 1964년에 주목할 만한 업적들을 달성하였다. 일본은 196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10월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다. 도쿄올림픽 폐막식 다음날 이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으로 사토 에이사쿠를 지명하였다.

일본은 1940년 제12회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1940년 올림픽은 일본 건국 2,60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아 적극 추진되고 있었다. 1936년 7월 31일 국제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도쿄 개최가 결정되었다(The Organizing Committee 1966, 31). 그러나 1937년 노구교(루거우차오, 蘆溝橋)사건 이후 전개된 중일전쟁의 심화로 일본정부는 1938년 7월 15일 올림픽 반납을 결정한다. 결국 제12회 올림픽은 전쟁 중에 개최되지 못했다.

1940년 제12회로 예정되었던 도쿄올림픽은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2) IV장의 내용은 한국정치학회 주관 World Congress 2015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 “전후 중일 관계와 1964년 도쿄올림픽”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3) 이케다 하야토(1899년 12월 3일~1965년 8월 13일)는 히로시마 출신으로, 교토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25년 대장성 근무를 시작으로, 1949년 중의원으로 당선되고, 요시다 시게루 내각에서 재무장관(대장대신), 통산장관을 역임한다. 1956년 이시바시 단잔 내각에서 대장대신, 1958년 기시노부스케 내각의 국무위원, 통산장관(1959)을 거쳐 1960년 7월 14일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고, 일본의 58대, 59대, 60대 총리가 되었다. 제1차 이케다 내각은 1960년 7월 19일부터 12월 8일, 제2차 이케다 내각은 1960년 12월 8일~1963년 12월 9일, 제3차 이케다 내각은 1963년 12월 9일~1964년 11월 9일까지로 재임통산일수는 1,575일이다(日本首相官邸 2015).

제18회 올림픽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1964년 도쿄올림픽도 순조롭게 개최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가 개막일 당시까지 논란이 되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24년 전 1940년 도쿄올림픽은 중일전쟁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었고, 1964년 경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IV장에서는 1964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초청에서 나타난 경기 참석 자격 문제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올림픽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외교청서와 국회의사록에 기록된 이케다 수상과 외상의 발언, 도쿄 올림픽 준비 촉진 위원회 기록, 산케이 신문의 여론조사, 아사히신문의 도쿄올림픽 관련 기사들을 참조하였다.

A. 문제제기: 도쿄올림픽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할 수 있을까?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다.”

(Coubertin 1942; Martens 2004, 57)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도쿄에서 제18회 올림픽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세계는 하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시아에서 열린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1964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93개국 5,151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The Organizing Committee 1966). 그런데, 아시아 대표로서 주최한 올림픽에 인도네시아, 중화인민공화국,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은 최초 공식 초청은 올림픽 개막 14개월 전인 1963년 8월 1일 105개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로 발송되었다. 이중 67개국은 일본과 외교관계나 영사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이후 일본은 추가로 초청장을 보내게 되는데, 1960년대 신생국들이 새롭게 IOC로부터 인정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1963년 11월 1일,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말리, 네팔, 북로데지아, 세네갈로, 1964년 3월 1일에는 알제리, 콩고, 니제르, 시에라리온으로 발송되었다. 1964년 5월 1일 차드, 7월 10일에는 중앙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가 IOC로부터 회원국 권리를 인정받았다. 반면, 남아프리카로 보냈던 초청장은 1964년 1월 28일 취소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 이전까지 중국은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해왔다. 1924년 중화아마추어운동연합회(the China National Amateur Athletic Federation)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그리고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제12회와 제13회 올림픽은 세계2차 대전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고, 제12회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¹⁴⁾

중국체육위원회(中国体育组织, The Chinese Olympic Committee)는 1910년 10월 성립되었고, 192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았다.¹⁵⁾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중화민국이 참여한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한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1954년 5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제49차 회의에서 전중국 스포츠 연맹(All-China Sports Federation)이 승인을 받아 1956년 개최되는 제16회 멜버른 올림픽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IOC가 중화민국도 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 1956년 제16차 올림픽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내에 두 개의 중국 올림픽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 ‘두 개의 중국’을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며 항의했다. 중국 올림픽위원회는 1958년 8월 19일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IOC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중국 올림픽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1979년 11월 26일 나고야에서 열린 IOC집행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중국의 합법지위를 회복한다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찬성 62표, 반대 18표, 기권 2표의 결과였다. 중화민국의 올림픽위원회는 중국의 하나의 성에 해당하며 ‘중국타이베이올림픽위원회’ (Chinese Taipei Olympic committee)

14) 제12회 1940년 도쿄개최권은 중일전쟁으로 핀란드 헬싱키로 개최권이 넘어갔으나 결국 세계2차 대전으로 취소되었다. 13회 올림픽은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역시 전쟁으로 취소되었다. 1944년에서 4년 연기되어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그 후 헬싱키는 1952년(15회), 도쿄는 1964년 제18회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15)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894년 설립되었고,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다. 현재 가입국은 205개국이다.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조직되어 있는 나라만 참가할 수 있다. 한국은 1947년에 가입하였다.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화민국의 공식 국기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기와 국가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中国奥林匹克委员会 2015).

1964년 도쿄올림픽은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이 IOC를 탈퇴하고 1979년 복귀하기 이전의 시기에 개최되었다.¹⁶⁾ 1960년 로마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 1968년 멕시코올림픽,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중국대표로 공식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화민국이었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준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화민국의 참석이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한 일본이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화민국이 ‘중국’으로 참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만’으로 참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었다. 1964년 9월 12일 중의원에서 열린 올림픽 도쿄대회준비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야나기타 히데카즈(柳田秀一)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국제 올림픽위원회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는 것과 같은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스포츠 문제에서 오늘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 정도로, 7억의 국민을 가진 중국이 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결코 정치문제가 아니므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두 개의 중국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와는 가능한 완전히 분리되어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을 도쿄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대회에서는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는 이러한 스포츠와 정치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있고, 인도네시아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북한과 한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는 도쿄대회에서는 혼자 일본의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올림픽이 처음으로 아시아의 대회로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피부의 색을 한 아시아 선수들이 훌륭한 성적을 올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日本国会會議録 1964).

16)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올림픽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52년 헬싱키 대회에 중국은 대만의 반대로 경기에는 참가하지 못했고, 참관인만 파견하여 비공식적으로 참가했다. 대만은 불참했으며 이 대회에 소련이 40년 만에 참가했다. 1956년 16회 호주 멜버른 대회에는 중화민국의 참가에 항의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참가를 거부하였다. 1960년 이탈리아 로마대회에는 IOC의 결정으로 중화민국이 대만(Taiwan)이름으로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초청문제는 IOC 비회원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1963년 IOC가 내린 제재결정 때문에도 참석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문제는 1962년 제4회 아시안 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4회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다. 아시안 게임은 1934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서아시아 경기대회가 원류가 되었다(심승구 외 2008, 143). 1949년 2월 아시안게임연맹(AGF)이 창설되었고, 1951년 뉴델리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1962년 8월 제4회 아시아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 18개국 이상이 참가하였고, 일본은 최대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일본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아시아 대회에 참가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호텔건설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었다. 일본은 18개국 중 최대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13개의 경기에 참가했고, 금메달 74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24개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심승구 외 2008, 146).

1962년 8월 24일, 제4회 아시안 게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중화민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중국대표로 인정하고 있었다. 앞서 열린 1954년의 필리핀 개최 제2회 아시안 게임과 1958년 도쿄 개최 제3회 아시안 게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초대받지 못했다(심승구외 2008, 144). 인도네시아는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중화민국과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이 결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낸 메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 큰 성공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두 개의 중국”을 형성하기 위해 아시안 게임을 이용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우호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입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National Sports Bureau Archives 1965; Lutan and Hong 2005, 425 재인용)

인도네시아의 중화민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입국 거부조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국제역도연맹(IWF)는 1962년 제4회 아시아

게임을 정식 국제경기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참가자격이 있는 국가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는 정식 경기대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다. 인도네시아는 반발하며 IOC의 조치는 제국주의자, 식민지주의자가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우호국인 이스라엘과 중화민국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라 주장한다. IOC는 1963년 4월, 인도네시아의 IOC 회원자격을 무기한 정지하였고, 인도네시아는 IOC본부에 탈퇴를 통보한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1949-66년 집권) 대통령은 구미주도의 올림픽을 이탈하고, 신흥국 독자적인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발표한다. 이것이 신흥국경기대회(GANEFO: The 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약자로 가네포이다. 가네포는 1963년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고, 47개국이 참가하였다.

수카르노는 신흥세력이란, 세계의 모든 새로운 세력들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고 노력하는 모든 새로운 힘(all the new forces in the world which are fighting, struggling and working for a new world)이라고 표현하였다.

수카르노는 가네포에 즈음하여,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의 정신인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를 강조하고 제3세계의 존재를 부각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이 반둥회의 현장에 사인을 한 29개국 중 13개국이 참석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하는 대다수의 태도와 견해가 반둥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둥 정신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새로운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여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는 신흥국들 간의 새로운 게임을 가능한 빨리, 1963년에 개최한다.”고 하였다(Committee National GANEFO, Release No. 2, 1963; Lutan and Hong 2005, 431 재인용). 반둥회의는 식민지 혹은 외세의 통치를 경험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가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특성의 반둥회의에도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가네포 창설 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 1962년 9월, 가네포에 관한 구상이 발표되자마자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바로 서면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였고, 1963년 4월 류샤오치(劉少奇)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Lutan and Hong 2005, 431-432).

1963년 가네포에는 약 50개국에서 약 2,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연구마다 참가국 수와 참가인원 수에 차이를 보인다. 국가 수는 48개국에서 51개국, 참가자 수는 2,200명(심승구외)에서 2,564명(이병한)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볼리비아, 벨기에, 몽골, 베네수엘라, 세네갈에 대한 기록에 차이가 있다.

가네포에 가장 많은 선수를 파견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497명)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선수를 참가시킨 개최국 인도네시아(483명)보다 많았다. 북한(275명)과 북베트남(115명)도 상당히 많은 선수를 참가시켜 아시아 공산국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소련도 125명 참가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서유럽에서도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가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일본 역시 9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IAAF(국제육상경기연맹)과 ISF(국제경기연맹)는 가네포에 출장한 선수는 올림픽에 출장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는 권고의견을 발표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본은 IOC, IAAF, IWF의 권고에 당황한다. 결국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역도 종목에는 가네포에 선수를 보내지 않았다. 다른 종목에도 우수한 선수는 파견하지 않았다(浦辺登 2013). 일본은 가네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는 신흥국들의 경기대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1963년 제1회 가네포는 이처럼 복잡하게 변모하는 국제정치와 지역관계의 갈등적 배경 하에서 실현되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심승구외 2008, 142; 이병한 2012; 浦辺登 2013). 그러나 가네포의 현장에는 정치와 스포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IOC의 정치와 스포츠 분리정책에 맞섰다. 2회 가네포 대회는 1967년 아랍 연합 공화국(현 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그 준비과정에서 1966년 11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안 가네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어 아시아 17개국에서 2,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올림픽대회와 아시안 게임의 구조에 대항하는 가네포와 아시안 가네포의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것을 물론, 일본도 아시아 가네포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의 붕괴, 1966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대혁명, 이집트-이스라엘 분쟁 등으로 가네포와 아시안 가네포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아시아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참석을 기대하였다. 이런 면에서 우수한 성적이 예상되고, 또한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IOC 비회원이었고, 가네포에도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참가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결국 중화민국의 참가를 문제 삼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불참하였다.

가네포 참가로 인해 올림픽 참가 자격 정지 문제로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참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였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북한을 참석시키기 위해 IOC를 설득하고자 했다. IOC는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일본의 의향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1964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 북한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했다. 일본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기와 국가의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신금단 선수는 여자육상 400미터와 800미터의 세계신기록보유자로 도쿄올림픽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였는데, 가네포에 참가한 선수여서 출전자격에 문제가 있었다(浦辺登 2013). 인도네시아와 북한 선수단은 도쿄 선수촌에는 도착하였지만 끝내 철수하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는 미국과 소련이 참가하였고, 독일과 베트남은 민족 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가네포에 참가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적은 인원이지만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도쿄올림픽의 최종 성적은 1위 미국(금 36, 은 26, 동 28, 합계90), 2위 소련(금 30, 은 31, 동 35, 합계 96), 3위 일본(금 16, 은 5, 동 8, 합계 29)이었다(동아출판사 1964).

소련과 일본은 가네포와 올림픽에 모두 참가하면서 가네포보다는 도쿄올림픽에 더 많은 선수를 출전시켰다. 특히 일본은 가장 우수한 선수는 도쿄올림픽에, 차순위의 선수들을 가네포에 출전시키면서 IOC와 가네포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아시아 국가로서의 스포츠 경기에 모두 참가하였다.

중국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중화민국 선수들 중 일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이었다. 1964년 말 일본과 중화민국 간에 중화민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이 이루어졌고, 1965년 4월 1억5천만 달러를 넘는 차관 협정이 성립되었다(『外交青書』 1965).

1964년 도쿄올림픽은 당시 국제사회로의 참여와 배제의 정치성을 잘 보여준다. 스포츠 영역의 비정치성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불구하고 경기 참가 문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은 19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조직을 주도적으로 구안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한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경기 참가 불발 문제, 중화민국 선수의 귀화문제,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1966년) 등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변화하는 위치와 위상을 확인하며 중일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B. 일본의 인정투쟁

1. 일본의 중국인식

중국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의 이웃이지만, 내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하며 국제정세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外交青書』 1961). 우선, 중국 대륙이 일본과 ‘일의대수의 땅’이며(一衣帶水の地), 광대한 국토에 6억여 명의 주민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여기에 내정불간섭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와 중국의 관계 변화에 따라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해 일본이 취한 접근방식은 1962년경부터 변화하

였다. 유엔에서 기존에는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도록 보류하는 ‘다나아게’ (棚上げ)안을 지지하던 입장이었다. 그런데 중국 인정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대표를 변경하는 것은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중요문제결의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된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정책변화에 대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수상은 1962년 1월 23일 중의원 본회의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 매우 중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국제연합에서 세계 각국과의 이 문제를 진중하게 심의해가고 싶다고 하는 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 중국문제에 대해서 다나아게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우리도, 일보 진전하여 이 문제를 국제연합에서 충분토의하여 결론을 얻도록 노력을 하려는 것입니다.(박수) 저는 두 개의 중국문제는 중국인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계인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공의 대표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방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연합에 의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한 공산권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를 증진시켜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外交青書』 1962).

이러한 수상의 발언에 대해 같은 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사회당의 츠바키 시게오(樫繁夫) 의원은 중요사항 지정방식은 이전의 ‘다나아게’의 연장선상일 뿐이며, 사실상 실질적인 다나아게 방식의 연장이라고 비판하였다. 중요사항 지정된 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중국대표권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분명하다며 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케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중공과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대표권은 어디에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이에 누구도 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답하는 자가 있다면, 중공은 중공이라고 말하고, 대만정부는 대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 공산권의 일부의 나라, 아니

면 자유권의 일부의 나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 자신이 관 계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극동의 안전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저 는 유엔에서 충분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 유엔 내에서 압도 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일본의 주장이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엔에서 이 문제가 세계의 평화, 아시아의 안녕과 중국인의 기분을 고려하여, 적정한 결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1962년 1월 23일, 이케다 총리).

국제사회에서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1950년대 정책과의 연속 성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속성은 가능한 한 하나의 중국 정부만을 선택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1960년대에는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본 입장은 같았으나, 1950 년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었다면, 1960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두 정부와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1960년대의 나타난 일본의 정책의 연속성은 타자로서의 중국이 처한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에 대한 유보적 대처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양 정 부의 이상과, 사실상 대만과 베이징에 각각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 간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중국의 국제사회와 아시아 지역에서 의 위상의 변화와 연동하여 나타난다. 1960년대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었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리 어질 만큼, 유엔에 신규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제3세계 와의 관계 강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는 국가들의 증가로 나타났다. 특 히, 1964년 1월 프랑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 를 단절하면서, 유엔 내 중국대표권 문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방 향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가네포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그것은 1955년 반동회의의 정신에 기반하여 수립된 비서구 지역의 국제 스포츠 기구였다. 반동회의와 가 네포 모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가 제안 및 발의하였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 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시아 국가로서, 신흥세력의 중심국가로서 지위를 강화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반동회의와 가네포 등과 같은 새로운 기구들의 참여를 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자기인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이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어떤 국가로 위상이 정립되기를 원하는가? 일본은 비서구 아시아 국가인가, 아니면 신흥세력인가? 경제선진국에 속하는가?

1964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도, 중국도 상호 간 인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갈등, 대립하는 실정이었다. 1964년 18차 도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후의 시점은 중일 간 상호인정의 엇갈림이 가시화된 인정투쟁의 장이 전개된 시기이자, 인정 프레임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직시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64년 10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은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하고 세계 5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일본이 세계 평화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 평화의 불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체성과 국제사회 내에서의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이 같은 일련의 정세와 중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존의 외교적 입장을 점진적으로 다각도에서 검토하게 된다.

이 시기 일본이 국내적으로 전후 자기인식의 정립을 거쳐 구축한 자기정체성은 대중국 인정문제에 투사되었다. 동시에 중국의 위상과 정체성의 변화는 일본이 새로운 외교적 선택지를 모색하는데 반영되었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와 경제선진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정경분리의 접근을 외교적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다.

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경제선진국으로서 가치확인

이번 가을은 드디어 올림픽 도쿄대회가 개최됩니다. 올림픽의 목적은 올림픽 현장에 강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우호적인 경기 대회에 참여시키

는 것으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사랑과 평화의 유지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민족이 서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고, 높은 휴머니티의 입장에서 서로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그 조화로운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림픽 대회가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은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고, 그 성과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쿄대회는 전 세계로부터 다수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회야말로 우리나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뛰어난 전통에 뿌리내린 일본문화를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오는 손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즐겁게 보내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화하도록, 국민여러분이 모두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1964.1.22. 오히라 외상 연설, 『外交青書』 1964).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는 전후 패전국 일본이 아닌 세계 평화와 발전의 상징으로서의 일본, 도쿄로 탈바꿈하는 국가적 행사였다. 전 세계로부터 일본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였다.

1962년에서 1964년 사이에 일본의 자기범주화에는 ‘자유진영’에 속한다는 것과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라는 자기확인이 동시에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달리 일본에게 자유진영과 아시아는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시아에서의 소속감과 자유진영에서의 소속감이 중첩되면서, 그 공존의 공간에서 확립한 자기확인이 바로 ‘경제선진국 일본’이다.

1) ‘자유진영의 일원’ 일본

1960년대 일본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관계를 수립하고 활발히 활동하였다. 1964년의 도쿄올림픽을 전후하여 IOC를 비롯한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교류를 강화시켰다. 또한 1964년 4월 28일 OECD에 가입하고, 1964년 9월 7일 IMF와 세계은행 총회를 도쿄에서 개최하는 등,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는 유엔이었다. 1957년 이후 발행하는 일본의 외교청서에서도 유엔중심 외교는 일본외교의 제1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작년 아프리카에서 다수의 국가가 독립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이 국제연합 가맹국 중의 반수에 도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의 일원인 우리나라로서도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향, 특히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유엔에서 그 거취가 세계적으로 주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아프리카 제국의 유엔에서의 표결은, 그런 의미에서 유엔의 움직임에 미약하지만 큰 영향을 미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의 이익에 봉사하는 유엔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야 하고 유엔을 무대로 하는 책임있는 활동이 세계평화를 위해 한층 중요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후 유엔외교의 추진은 한층 진중하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유엔에서의 외교진용을 강화해갈 방침입니다(제36회 국회에서 이케다 수상 시정방침연설, 『外交青書』 1961).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우선적 소속감은 자유진영국가 일본이었다. 국제기구와 관련된 발언에서는 어김없이 ‘자유제국과의 협력’이 강조된다. 제 37회 국회에서 이케다 수상은 자신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저는 금후 미국만이 아니라 널리 자유국가들 전체와의 협력관계의 강화에 특히 유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국 그 외의 서구제국과의 사이에 대해서는 세계의 당면한 제반의 중요문제에 관해, 밀접한 협력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아시아-아프리카(A.A) 그룹과 중남미제국과의 경제교류가 한층 더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산권제국과는 상호 입장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하에서 가능한 상호이해와 우호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의 근본은 이 새로운 국면에 대하여,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기초하여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고, 경제의 번영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환경을 정비하고, 세계 평화의 창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실함과 선의가 모든 나라들에 의해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선의와 이해가 평화와 번영의 근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좀 더 증진시켜가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外交青書』 1961)

2) ‘아시아의 대표’ 일본

1960년대 중국은 기존의 국제기구들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아시아 중심, 신흥세력 중심의 기구들을 조직해나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56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중심의 외교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 등장하는 아시아 중심의 기구들에도 참가하고자 노력하였다. 1960년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국가들의 약진이 나타나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일본은 자국이 아시아 국가이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이며 경제 선진국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도와야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의 발전이 일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타자와 자기확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복합적 자기인식은 1964년 1월 21일 오히라 외상의 국회연설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역사적 지리적인 연계, 거기에 금후 점점 더 긴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바로 우리나라 자체의 안전과 번영에 연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불안과 대립은 세계전체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정세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당연히 일본외교의 최대 과제입니다. (중략)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과거 약 100년 전 쇄국에서 개국으로 큰 국내변혁을 거쳐, 자조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정치, 법제, 경제 등의 근대화에 힘쓰고, 팔목할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전후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막 우리나라가 메이지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급속하게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근린제국의 바람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정에 근거하여 솔직하게 조언하며,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제46회 통상국회에서 오히라 외상의 외교연설, 『外交靑書』 1964).

여기서 아시아는 자유국가 일본과 대립하지 않는다. 일본은 자유진영과 아

시아를 연결하는 매개역할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찾는다. 매개국가 일본은 다음과 같은 경제선진국 일본의 국가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일국으로서, 아시아 제국과의 우호선린관계에 매우 유의해야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러한 우방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그 신뢰를 쟁취하는 것과 함께, 민족의 번영과 복지를 구하는 아시아 제국의 정당한 소리는 이를 널리 국제사회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제36회 국회에서 이케다 총리 시정방침연설, 『外交青書』 1961).

3) 경제선진국 일본

당시 일본은 전후 패전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국가 정체성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스로 경제선진국 일본의 위상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제도 전후 황폐에서 국민의 노력에 의해 급속히 회복, 안정되고, 높은 공업력을 가진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의 지위는 인정되어가고 있으며 이 기회에 아시아에 속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입장을 되새기며, 나아가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하려고 생각합니다(제38회 국회에서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 연설, 『外交青書』 1961).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 기 때문이라고 했다(『外交青書』 1964). 또한 경제성장은 기존에 탈아입구에서 대립되었던 아시아와 서양의 이분화를 대체할 수 있고, 전후 일본의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1964년 일본은 GATT 관세일괄타결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한 국가, 즉 제 8조에 규정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국가)으로의 이행이 달성되어 경제입국의 자신감이 고조되었다. 특히 1964년 4월 28일

OECD에 진입한 것은 경제선진국 일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분증이 되었다. 게다가 1964년 개통된 신칸센(新幹線)은 일본의 초고속 성장의 표상이었다(브루마 2015).

지난 여름 교섭을 타결하여 본 국회에 그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의 정식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제1보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이미 참가중인 GATT에서 관세일괄타결 교섭에 대해서도, 무역입국 일본의 입장에 서서, 그 성공을 위해 가능한 한 공헌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중략) 가능한 한 IMF 8조국으로의 이행과 그것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의 자유화, 곧 개방경제체제의 추진은, 우리나라의 국제신용의 향상에 상응하여, 금후 교섭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外交青書』 1964).

사실상 1964년 도쿄올림픽은 전후 일본의 경제적 성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성장의 기반을 견인하였다. 경기장 건설과 시설정비 등 올림픽 경기를 위한 직접 지출이 약 166억엔, 약 4,600만 달러였고,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도로, 철도, 공항, 방송 시설 등의 관련비용으로 9,608억 엔, 약 27억 달러가 지불되었다(The Organizing Committee 1966, 67).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신칸센도 1964년 10월 1일 개통되었다. 일본은 올림픽에 맞추어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였고, 도쿄올림픽은 올림픽 경기가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일본의 ‘정경분리’라는 단어의 조합이 등장할 수 있었다. 냉전기 공산국가와 자유진영의 사이에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립이 아닌 공존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일본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과의 우호관계의 증진, 특히 일중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대륙의 관계개선 특히 무역의 증진은, 우리나라로서도 환영하는 바이며, 올해는 이 문제로의 접근이 우리의 첫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대륙이 문제는, 단순히 일중간의 관계로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널리 동서간의 관계조정이라는 시야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일중쌍방이 관련 공통의 인식에 서서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부여된 조건 하에서 가

능한 우호관계의 수립에 힘써, 극동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36회 국회에서 이케다 총리 시정방침연설, 『外交青書』 1961).

중화민국정부와의 정규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대륙과는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무역을 비롯한 민간 베이스의 접촉을 보유해가는 것이, 우리나라 기정의 방침입니다. 최근 중공정권과의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설정하자고 하는 국제적 움직임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유지의 관점에서 사태의 추이와 국제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중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外交青書』 1964).

이러한 경제선진국 일본의 자기정체성의 바탕에서 일본은 ‘정경분리’라는 아이디어를 대 중국 외교정책으로서 공식적으로 구안할 수 있는 유연성과 공간을 확보하였다. 냉전기 공산국가와 자유진영의 사이에서, 안보와 정치를 제외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립이 아닌 공존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는 일본 자신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다.

4) 피폭국 일본

1964년 10월 16일 금요일, 도쿄올림픽 7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 날 국내외의 관심은 도쿄올림픽 경기의 결과보다도 일본 밖의 정치적 발표로 관심이 쏠렸다.

우선 소련의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yov)가 건강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수상직과 당 제1서기장이 자리를 내놓는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임으로 코시킨(Aleksei N. Kosygin)이 수상을, 제1서기에는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가 취임한다고 보도되었다(동아출판사 편집부 1964, 156).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핵실험을 성공했다는 발표도 뒤따랐다. 무엇보다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올림픽의 개최 분위기와 상반되었다. 이로써 일본이 기대했던 것에서 벗어나, 1964년의 역사에서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접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성공 소식은 일본의 1945년 히로시마

(広島)와 나가사키(長崎)의 피해를 상기시켰다. 그것은 전쟁 가해국/피폭국의 양가적 자기인식 중 피폭국의 정체성을 소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수 주간, 국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국민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중공에 의한 핵폭발 실험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원자폭탄재해국(原子爆彈被災國)으로서 시종 일관, 여러 가지 나라의 핵실험에 반대를 계속해왔습니다. 작년 성립된 이미 대다수의 나라가 참여하게 된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은 전면핵실험금지에 이르는 역사적 제1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의 성립을 마음에서 축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접한 중공이 이와 같은 우리 국민의 염원과 세계의 추세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저는 일본국민의 이름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중공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1964. 11.21 제47회 국회에서 사토(佐藤榮作) 총리 소신발언연설, 『外交青書』 1965)

중국의 핵실험으로 일본은 ‘원자폭탄재해국’ 일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언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실험 중지와 함께 부분적 핵무기실험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을 주장하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우리들이 중시하고 싶은 점은 중공이 이미 성립된 부분적 핵무기실험금지조약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에 도전하여, 감히 대기권 내에서 실험을 개시한 사실입니다. (중략) 현재 중공이 선택해야만 하는 길은, 부분적 핵무기실험금지조약에 참가하고, 이를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함으로써, 핵군축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결코 다시 핵전력의 보유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중략) 저는 중공이 지금의 세계의 추세를 오인하지 않고, 금후의 실험을 중지하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동 조약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는 우탄트(U Thant)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미영소불 그리고 중공 사이의 대화는, 18개국 군축위원회 등에서 교섭을 촉진, 특히 핵무기실험의 전면적 금지의 실현에 다소라도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진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1964년 12월 4일 유엔 제19회 총회에서 시이나(椎名悦三郎) 외상 일반토의연설, 『外交青書』 1965).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 인정문제로 본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현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핵보유국은 국제기구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인정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중국대표가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본 문제의 심의는 그와 관련하는 모든 요소의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평가에 서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1964년 12월 4일 유엔 제19회 총회에서 시이나외상 일반토의연설, 『外交青書』 1965).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X 지역협력형

1962년 1월 19일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이케다 하야토 수상은 중국 인정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대표권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 종래 다나아게 방식을 버리고, 실질적 토의에 들어간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실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공정타당한 국제여론에 기반하여 대처해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엔 가맹국의 압도적 다수가 우리나라의 제안에 동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양식이 널리 지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는 유엔이 진중하고 공정하게 본건의 사실적 심의를 계속하여, 현명하고 용기 있게 그 해결을 제출하는 것을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진전을 위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메이지유신 이래, 스스로 후진성을 하루빨리 탈각하여 위대한 진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세계의 새로운 흐름에 진로를 오인하여, 경솔하게도 무모한 전쟁을 강행하고, 비극적인 패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우호제국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각의 국민성을 중시하면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뛰어난 정치적 경제적 자립으로의 건설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바로서 저희들로서도 능력이 있는

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외교와 내정은 일체불가분의 것이라고 확신을 피력해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민주적 질서를 확립, 자유로운 경제체제에 의한 풍요로운 경제력을 충실히 하여, 처음으로 자유국가군의 일원임과 동시에,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 독자의 공헌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용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민제군이 공명하고 관후한 정신을 가지고 정부의 외교정책에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国会會議 録検索システム 1962/1/19).

일본의 중국인식과 자기인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 발언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일본은 중국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국제규범형과 지역협력형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이 시기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의 개최, OECD 가입,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주요사항결의안 제기 등이 주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 평화’나 ‘아시아의 화합’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념 대립적인 접근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전개되고 있었던 정경분리에 기반한 무역관계 개선은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의 인정 단계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1950년대의 인식과 연장선상에 놓여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이 1960년대의 특징이다.

일본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지역협력에 참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접근이 국제규범과 대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나타난 국제규범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규범형이 이념대립형이 아니라 지역협력형과 연계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원

조'를 제공하고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제규범형과 지역협력형의 접목이 가능했던 것은, 자유진영의 일원과 아시아의 일원의 정체성이 조화될 수 있었던 '경제 선진국 일본'의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선진국 일본으로서의 정체성은 자유진영과 아시아의 매개역할을 담당하였고, 국제규범을 중시하면서 지역협력을 강조하는 일본의 외교정책으로 표상화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정문제에서도 경제분야에서의 비정치성이 가능하다는 '정경분리' 정책에 입각한 경제교류를 가능하게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중화민국의 권리 수용의 인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권리확인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 일본의 중국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

1952년 4월 28일 일본은 중화민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중화민국과 '권리수용의 인정'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평화조약 체결 이후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중화민국과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이는 중국 전체와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吉田茂 1958, 76). 일본정부의 기본 인식은 하나의 정부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하나의 중국'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양 정부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중화민국과의 조약을 비난하기는 하였지만(毛里和子 2006), 향후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촉구하였다(鹿島平和研究所 1983; 毛里和子 2006).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상호 간의 인정 요구는 민간경제 영역에서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4차례에 걸친 민간무역협정(民間貿易協定)으로 나타났다.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존재확인의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던 가운데, 1958년 5월 2일 나가사키 국기사건¹⁷⁾이 발생하였고. 1958

17) 1958년 5월 2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한 백화점에서 개최되고 있던 중국상품전시회에 계양되어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일본 우익단체 청년이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자는 바로 체포되었으나 당일 석방되었다.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오성홍기는 국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본 형법 제92조의 외국국장손괴에 해당

년 5월 12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이 전면 정지되었다(田中明彦 1996).

1958년 8월 중국은 ‘정치 3원칙’을 제시하여 단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치 3원칙은, (1) 즉시 중국을 적시하는 언동과 행동을 정지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 (2) ‘2개의 중국’을 둘러싼 음모를 중지할 것, (3) 중일양국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방해하지 말 것이 그 내용이다(日本外務省中国課 1970). 그런데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관계 단절은 중화인민공화국에도 타격을 주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田中明彦 1996), 일본과의 경제교류의 단절은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1960년 8월 27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무역 3원칙’을 제시한다. 무역 3원칙이란 (1) 무역과 그 외 모든 협정은 정부간 협정을 원칙으로 한다. (2) 불가능한 단계에서도 우호를 기초로 한 민간 기반의 거래는 가능하다 (3) 개별적 배려에 입각한 중소기업과의 무역은 계속한다는 것으로 정부간 협정, 민간 계약, 개별적 배려라는 세 가지 항목에 기반한 무역관계를 인정한 것이다(鹿島平和研究所 1983).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역 재개의 효과는 196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2년 11월 9일 일본의 타카사키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랴오청즈(廖承志) 간에 각서가 체결되었고 이들의 이름을 딴 LT무역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8월 주재원의 외교관대우는 부여하지 않는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LT무역은 1962년부터 1967년까지 5년간의 무역관계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우호무역은 저우언라이 무역 3원칙 중 세 번째 항목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다(外交青書 1963).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측의 일중무역촉진회와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그리고 국제무역촉진협회 간사이(関西) 본부를 중심으로 개별적 배려에 입각한 우호무역이 추진된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중일관계는 존재수용의 인정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적시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기에 대한 모독이라는 무시로 사실궁정의 인정에서 비인정 상태로 전환된 것이다. 1958년 5월 12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무역이 전면 정지되었다(田中明彦 1996).

이케다 수상: 다만 중공과의 관계는 아시는 대로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 보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해도, 민간에서 무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확대하도록 노력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작년부보다 작년, 작년보다도 올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입니다(1962.8.13).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중일관계는 ‘정경분리 정책’¹⁸⁾으로 1960년대 ‘공식화’ 되었다(『外交青書』 1964). 경제 부문의 비정치화는 무역관계에서만 아니라 그 시기에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반영하고자 했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스포츠 교류 증진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1964년 도쿄올림픽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다른 어떠한 국제정치적 사안보다도 일본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로의 대처는 패전국, 자유진영으로서의 소속감, 아시아로서의 인식,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역할론, 피폭국/가해국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중국 인정문제의 다층성으로 인해 일본은 어느 한 정부를 쉽게 선택할 수 없으며, 외교정책 결정자는 자신의 복잡한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단계별 변화와, 그와 연동되는 일본의 변용된 입장들은 각각 일본 스스로의 인정투쟁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중국 인정문제는 단순히 일본이 중국을 인정하는가의 표면적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 전면에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투영되어 있다.

이케다 수상: (국제사회에서)제가 받은 명예와 후대, 신뢰와 기대는 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에 의거한 것입니다. 패전에서 점령, 점령에서 독립으로, 국가재건의 괴로운 길을 전념한 일본민족 모두가 기울인 노력과 능력의 성과이며, 또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 하에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근대 국가로서 확고한 입장을 정하여 세계의 중심에 섰다

18) 정경분리 정책에 관한 보자 자세한 연구는 田中明彦 1996, 毛里和子 2006, 添谷芳秀 1995, Halsti 1986, 入江昭 1993, Johnson 1986, Armacost and Pyle 2001, 서승원 2011, Oh and Choi 2015 참조.

는 사실을 각국의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이후 우리나라가 한층 더 번영해 갈 가능성을 확신하고,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제44회 국회 이케다 내 각총리 소신표명연설, 『外交靑書』 1965).

이런 점에서 일본이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서 가네포와 아시아 가네포에도 참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올림픽에 문제를 제기하며 1964년 도쿄올림픽 직전에 개최된 1963년 가네포는 분명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네포에 참가한 것은, 이 시기 일본이 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아시아 국가로서의 인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네포와 도쿄올림픽 간의 조율을 위해, 가장 우수한 선수는 도쿄올림픽에, 차순위 선수들은 가네포에 출전시키면서 IOC와 가네포의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1960년대 일본의 자기확인 은 중국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을 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산 중국과 대립하는 자유진영의 일본이다. 두 번째는 아시아 중국과 이웃한 아시아 일본의 확인이다. 세 번째는 경제도약국 중국과 경제선진국 일본의 모습이다. 네 번째는 핵보유국이 된 중국과 피폭국 일본의 자기확인이다.

이와 같은 전후 일본의 네 가지 국가정체성 및 자기인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 인정정책에 투사되어 나타나게 된다.

우선, 기존에 탈아와 환아로 대립될 수 있었던 자유진영 일본과 아시아 일본이 혼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아시아 일본의 정체성은 중국 인정정책에서 대립구도에서 차츰 병립구도로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매개로서 기능한 것이 바로 경제선진국 일본의 정체성이다. 이 시기에 경제선진국 일본이 아시아의 대표로서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역할 규정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반은 중소관계의 변화 등으로 경제 도약국으로서의 중국의 외교적 의지가 표면화되는 시기였다. 여기서 일

본과 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접점이 발견되었고, 양국은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의 상보성을 찾을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64년 일본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964년 도쿄올림픽의 개최, OECD 가입,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주요사항결의안 제기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일본과 아시아 대표로서의 일본이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비록 중국 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64년은 양국 이해관계의 잠재적 교차점과 미완이나마 상호인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피폭국 일본의 정체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으로 대립적 정체성 구도의 형성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전후를 극복하여 평화국가 일본으로 전환하는 인정투쟁의 의미가 강화되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중화인민공화국을 국제규범 내에서 통제 대응해야 한다는 접근이 중시된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쿄올림픽 참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 평화’ 나 ‘아시아의 화합’ 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념 대립적인 접근은 강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 전개되고 있었던 정경분리에 기반한 무역관계 개선은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수용과 권리확인의 인정 단계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었다.

1964년 10월 24일, 제18회 도쿄올림픽은 막을 내렸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세계 제전은 일본을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스스로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4년에 추진된 OECD 가입, IMF총회 개최, 신칸센 개통,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올림픽 개최는 ‘일본력’의 표상이었다. 2020년 예정된 도쿄올림픽 역시 일본의 인정투쟁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개최된 올림픽도쿄대회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자세를 세계인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큰 역할을 다했습니다. 대회를 기회로 방일한 모든 사람들은 질서 있는 대회의 운영과 예의바르고 친절함 우리 국민의 미풍을 접했고 전

세계의 신문은 이를 칭송하는 제목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각위의 협력에 의한 것이며, 외상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1964년 11월 21일, 제47회 임시국회에서 시이나 외상 외교연설, 『外交青書』 1965).

D. 외교적 위선: 쌓아가기, 경계짓기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입장은 쌓아가기와 경계짓기의 외교적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쌓아가기 기술은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쓰미아게, 중국에서는 인민외교, 그 외 민간외교, 경제외교 등으로 표현되었다.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규범적 성향을 표면화하는 자기정당화가 두드러진다.

종래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자칫하면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 고려함이 없이 막연히 주체성 없는 논의가 이루어져, 오히려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생각하며, 국외여론이 향한 바를 주시하면서, 극동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방침 하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대륙의 무역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의 국민경제가 필요한 물자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제40회 국회 고사카 외상 외교방침연설).

일본이 중국 인정문제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이노우에는 일본이 자유진영과의 정책 협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의 주도권을 서구제국의 손에 맡기려고 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井上正也 183). 이것은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려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은 자신의 선택이 국제여론을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자국의 정치적 고려를 정당화하기 위한 표상으로 이용했다. 국제규범형이 이념대립형과 조화될 수도 있고, 지역협력형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은, 국제규범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규범을 인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인식이 우선 되는 것이며, 국제규범으로 내세우고 있는 외교적 위선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외교의 경계짓기는 1960년대 일본의 대중 정경분리정책으로 전개되었다. 정치와 경제는 사실상 분리되지 않았다. 1964년 도쿄올림픽 참가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정치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경계짓기 기술을 사용하였다.

정경분리는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다. 1960년대 일본은 자유진영과 아시아의 매개자로서의 경제선진국 일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본의 가치확인의 인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의 권리승인의 인정을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의 인정단계로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하나의 중국론에 충돌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존재수용은 부정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본이 하나의 중국의 논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이 전후 탈식민주의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규범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을 민족국가 형성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특히 가해국이자 패전국 일본으로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규범이었다. 동시에 일본은 1952년 중화민국을 인정한 외교적 선택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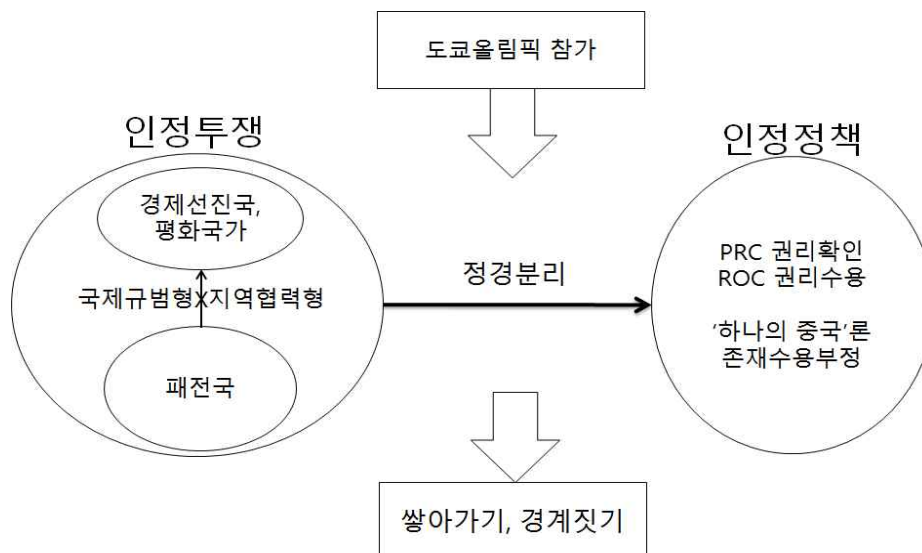
하나의 중국론의 수용을 부정하면서도, 하나의 중국론이 가진 민족 분리의 도덕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로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제안되었다. 민족의 분리가 아닌, 영역의 분리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인정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실과 주장의 괴리를 쌓아가기와 경계짓기의 기술로 극복해나가고자 하였다.

E. 소결

1964년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일본은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은 피폭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국가 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경제발전의 자신감은 자유진영과 아시아의 매개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1964년 도쿄올림픽은 아시아의 대표로서 일본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계기였다.

이러한 일본의 가치확인을 향한 인정투쟁의 과정 속에서 대중정책은 정경분리라는 일본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확인인정,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인정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중국정부를 인정하려는 일본의 대중 인정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론의 수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림 IV-1〉 1964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국제규범형 중심의 일본의 자기정당화는 1960년대 지역협력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나타났다. 지역협력과 국제규범이 맞물려진 일본의 자기정당화는 자유세계와 아시아 일본의 혼성화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의 중국론을 불인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의 심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이 중국에 대한 인정과 조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일본의 변화된 자기정당화 과정에서 쌓아가기와 경계짓기의 외교적 기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IV-1과 같다.

V. 사례 3: 뉴욕, 1970-1971¹⁹⁾

1960년대 후반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대혁명 등으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한 가네포 등의 시도는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1960년 중반, 핵보유 국가로서의 전환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1971년 국제사회의 대표기구인 유엔에 가입하면서 중국대표 정부로 인정받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22년이 지나서야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양자관계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와 함께 유엔에서 어느 정부를 중국대표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 중일국교정상화와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었지만, 선후관계를 두고 연계되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초 이케다 수상이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는 국제사회의 조류를 참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립한 이후, 중일국교정상화는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중일국교정상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외변수로서 평풍외교와 닉슨의 베이징 방문 등의 미중화해 요인이 일반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국내변수로서는 다나카 수상의 정치적 역량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일본 외교의 국제규범형에 기반한 중국 인식을 고려한다면,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은 중일국교정상화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노우에도 중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井上正也 2014). 이는 기존의 중일관계를 바라보는 미중관계 중심적 설명이나 국내 개인 행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전후 일본의 외교의 연속선상에서 변화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유엔에서 중국 인정문제는 중일국교정상화 요구와 연계되는 국내정치적 중

19) V장의 내용은 필자의 공동연구인 오승희, 최은봉. 2014. “1970년대 초 일본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대표권 문제: 중국의 UN가입과 중일국교정상화.” 『일본연구논총』 39, 1-24. 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요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에게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다.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의 방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사회의 추이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1949년 이후 전개되어 온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인식과 결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A. 문제제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1971년 10월 26일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며 모든 권리를 ‘회복’ 하는 반면 ‘장제스 대표’는 불법으로 점거했던 유엔과 관련기구에서의 자리로부터 추방됨을 결정하였다(유엔 총회 결의안 A/RES/2758(XXVI)).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20여 년간 유엔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1970년대 초반의 변화와 일본의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중국은 1949년 11월 18일 유엔에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동시에 중화민국 대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였다. 1949년 12월 8일, 제4차 유엔 총회에서 ‘극동 국제관계의 안정의 증진(Promotion of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ar East)’이라는 제목의 결의안(A/RES/291(IV))이 채택되면서 유엔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 수립되었다.

결의안은 유엔의 모든 국가들이 ① 중국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엔의 원칙에 따르고, ② 현재 그리고 앞으로 중국인들이 정치적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적인 정부를 유지하는 중국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③ 중국과 관련된 기존 조약들을 존중하며, ④ 중국 영토 내에서 영향권을 획득하거나 외국이 지배하는 레짐을 창출하는 것, 중국 영토 내에서 특권을 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제4차 총회에서는 1945년 8월 14일 소련과 중화민국이 체결한 중소우호동맹 조약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유엔은 같은 날 결의안

A/RES/292(IV)을 통해 소련이 중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통합 그리고 극동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비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 5월, 유엔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총회에서 중국대표 문제(Question of the representation of China in the General Assembly)’라는 제목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유엔의 대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주목해야 할 결의안은 A/RES/396(V)으로, 유엔에 의한 회원국 대표의 인정 문제에 관해 ‘하나 이상의 정부가 대표임을 주장할 때에는 현장과 상황에 따라 고려’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 구문은 이후 나타나는 중국대표 문제 결의안에 기본 조항으로 원용된다.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안에 상이한 의견들이 있음을 주지하고, 중국대표권을 심의하기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²⁰⁾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화민국이 의석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5차 총회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관련 논의를 위해 안보리에서 한국 관련 유엔사령관의 특별 보고서의 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도 하였다(유엔 총회 결의안 490(V)).

1953년 8차 총회부터 1960년 15차 총회까지는 중화민국을 배제하고 공산당 정부의 의석을 요구하는 제안은 이번 년도 정규 회기에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정부를 이를 다나아게(棚上げ) 안이라고 표현하였다.

1961년부터는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중국 인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에는 유엔의 새로운 주요 회원국으로 등장한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 점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에는 카메룬, 토고,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콩고(leopoldville), 다호메이, 니제르, 상부 볼타, 코트디부아르, 차드, 콩고(Brazzaville),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이프러스, 세네갈, 말리, 나이지리아가, 1961년에는 시에라리온, 몽고, 마우리타니아, 탄간이카가 신규 가입하였다(UN 2014). 소련이 중화민국을 배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의석을 차지하도

20) 1950년 12월 12일에 열린 321회 총회에서 7개국 특별 위원회로 에콰도르, 인도, 이라크,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가 임명되었다.

록 대표를 파견할 것을 권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다소 완화하여 캄보디아, 세일론, 인도네시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석을 지지하는 것만을 포함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과 일본 등 중화민국을 승인하고 있는 국가들은 결의안 A/RES/396(V)과 헌장 18조 근거 중요사항지정방식을 원용하며 중국대표문제는 중요문제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채택되었다.

이후 1963년부터 이른바 알바니아 안으로 불리는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권리의 회복(Restoration of the lawful righ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Nations, agenda item 93)’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항하는 미국과 일본 등이 공동제안한 ‘유엔의 중국대표(Representation of China in the United Nations, agenda item 96)’라는 제목의 중요사항지정방식의 결의안이 대립하였다.

1964년 중화인민공화국과 프랑스가 국교정상화를 맺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중국 인정문제가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물론, 프랑스를 통한 아프리카 외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1965년에 알바니아 안이 찬성과 반대가 47표로 동수를 이루고, 1966년에는 두 개의 결의안에 더해 중국대표권의 공평하고 실제적인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창설을 권고하는 이탈리아 안과 이 위원회 안을 중요사항으로 지정하려는 시리아 안도 제기되는 등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인정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4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치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때이다. 196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1964년 10월 비동맹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1965년 총회에서 이를 원용한 알바니아 안에 찬성국 수와 반대국 수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핵무기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며 아시아에서의 중국 인정문제를 우려하였다.

이후 문화대혁명이 전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의견은 다시 감소하였다. 1968년 10월 총회에서 일본은 중국의 동향이 아시아 및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협조 가능한 중국을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1969년 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캐나다는 1970년 10월 13일, 이탈리아는 1970년 10월 15일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일본은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중국 정책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정치적 제약 속에 있으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추진해나갔다는 점에서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井上正也 2010).

1970년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제25차 총회에서 알바니아안이 중요사항 지정안에 의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표(51표)가 반대표(49표)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그 다음해인 1971년 제26차 총회에서는 중화민국 추방 결의안을 중요문제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부결되고,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권리의 회복’ 결의안이 찬성 76표, 반대 35표로 58%의 득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유엔의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대폭적으로 재조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가 급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중화민국과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표 V-1, 부록 3 참조).

<표 V-1> 연대별 중화인민공화국 국교수립 국가/정부 수 (단위: 개국)

1949	1950 년대	1960 년대	1970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유엔가입 이전	유엔가 입 이후				
10	13	17	13	54	16	32	6	1

* 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국가는 172개 국가임.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참고 재구성.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 것은 소련이었다(1949.10.3). 대부분의 공산진영 국가들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

정 정부와 국교를 맺었다. 영국이 중국대륙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1950년 1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였으나, 실제 대사관 교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2년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정식 가입한 이후에 실질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실질적으로 서방 국가 중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은 스웨덴이었다(1950.5.9). 프랑스(1964.1.27)와 캐나다(1970.10.13)가 유엔 가입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였고, 유엔 가입(1971.10.25) 이후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하였다. 일본이 1972년 9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197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국교는 1992년 8월 24일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국가는 남수단공화국이다(2011.7.9.).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172개 국가 및 정부(팔레스타인 포함)와 수교를 맺었다. 한편 22개국이 중화민국을 인정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5; 부록 3-2 참조).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을 무산시켜왔다. 그리고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이 이루어진 해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유엔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역사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인 1970년, 유엔에서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을 상회한 것이다. 만약 중국대표권문제가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중요문제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은 1970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 해의 선택이다. 1971년 유엔 총회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의 가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안할 것인가?

분명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흐름은 다변화되었다. 일본은 어떠한 타자인식과 자기확인을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본다.

B. 일본의 인정투쟁

1970년대 초 중국 인정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정부의 일반론은 “국제정세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국제신의를 중시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극동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日本国会會議録 1970.11.26).

일본은 “대만해협을 걸쳐 마주하고 있는 2개의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두 정부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1,400만 이상의 인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중국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은 7억여 명의 인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1971년 당시,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60개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65개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전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 일본은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1. 일본의 중국인식

1)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

196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성공 이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64년 10월 비동맹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1965년 유엔총회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알바니아 안의 투표결과 찬성국 수가 증가하여 반대표와 동수를 이루었다. 일본은 핵무기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아시아에서의 중국 인정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문화대혁명이 전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의견은 다시 감소하였다. 1968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중국의 동향이 아시아 및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협조 가능한 중국’을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969년 말,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

타난다. 캐나다는 1970년 10월 13일, 이탈리아는 1970년 10월 15일에 중화인민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일본은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중국정책을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정치적 제약 속에 있으면서도 중화인민 공화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추진해나갔다는 점에서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井上正也 2010). 그러나 일본의 대중정책의 직접적인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단순명료한 중국정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 하라며 변화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日本国会會議録 1970.11.27.).

1970년 11월 19일 제 25회 총회에서 알바니아안을 지지하는 표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일본 국내외에서 중국대표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정부 역시 이러한 추세를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였다. 25회 총회 이후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다(日本国会會議録 1970.11.27.).

최근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발전도 국내기반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또한 지역협력추진의 움직임도 서로 상호 연계 혹은 자조세력의 고조도 눈에 띈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아시아 정세는 금후도 더욱 유동적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중에서도 중국문제는 아시아에서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캐나다에 이어 이탈리아가 베이징 정부와의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유엔 총회의 동향이나 금후의 국제정세에 유의하면서, 국제신의를 중시하고, 국익을 지키고, 극동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진중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日本国会會議録 1970년 11월 25일, 제64회 국회 사토총리 연설).

1971년 7월의 닉슨의 중국 방문 발표로 미중관계의 변화가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은 미국보다 중국문제에 있어 관계가 앞서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중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유동적인 국제정세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日本国会會議録 1971.07.20.).

그리고 1971년 26회 총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유

엔 회원국 및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한다. 인용된 부분을 살펴보면,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의 인정부여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확인된다.

저희는 수년간 조성해온 극동의 정세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유엔에 참가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시아 정세는 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이와 같은 정세의 일환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세가 유연화 해 온 것을 살펴왔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는 중국본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유엔 참가를 추구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져서, 우리도 이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도 이 소리에 응할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련 추이를 고려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유엔 참가를 환영하고, 이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온 것을 더하고자 합니다. 중국본토와 우리나라의 인적교류도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금후로도 이것이 확대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일중 간에는 보도관계자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우호적 교류의 확대를 중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유엔 대표권을 확인하고, 게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을 감안하며, 이에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의석을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A/L 633)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표하는 바는 분명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가맹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유엔을 통한 평화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의 확인 하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처우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국에 걸맞은 태도로 다음의 책무를 다해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해 유엔 대표권을 완전한 형태로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이에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의석을 부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서 (마땅히) 그 지위에 맞는 것입니다. (『外交青書』 1972. 26회 유엔총회 아이치수석대표연설, 1971년 10월 20일)

2) 중화민국에 대한 인식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서 일본이 조심스러워 한 것은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 양립문제이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²¹⁾은 중국에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것을 독일, 베트남, 한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후 체제의 상징으로 보았다(日本国会會議録 1970.10.26). 일본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부터 중국문제를 고민해왔다. 결국 1952년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일본의 중국과의 전후처리는 일단락된 것으로 여겼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이 강화되면서 일본 내부에서 일화평화조약의 파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익도 깊게 연관됨과 동시에, 장기적인 극동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특히 진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중국문제의 가장 곤란한 점은 타이베이 중화민국정부와,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서로 전중국의 정통정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중화민국 정부와의 사이에 일화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친선우호관계를 두텁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로서는 중국대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염원합니다. 일중우호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하기 위한 근본은, 무엇보다도 일중 양민족의 상호이해입니다. 정부로서는 장기적 견지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대륙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사이에, 정부 간의 각종 접촉을 행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민간무역의 확대나 기자교환의 원활화 등 교류의 증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측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1970년 11월 25일, 제64회 국회 사토총리 연설).

21) 사토 에이사쿠(1901년 3월 27일~1975년 6월 3일)는 일본의 제62, 62, 63대 총리이다. 야마구치 현 출신으로, 56대 57대 수상이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동생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제1차 사토 내각은 1964년 11월 9일부터 1967년 2월 17일, 제2차 사토 내각은 1967년 2월 17일~1970년 1월 14일, 제3차 이케다 내각은 1970년 1월 14일~1972년 7월 7일까지로 재임통산일수는 2,798일이다. 재임 중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1971년 오키나와 반환 등을 이루었고, 비핵 3원칙으로 197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日本首相官邸 2015).

1970년까지만 해도, 일본정부의 중국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본과 중화민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일본정부는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중화민국은 1945년에 유엔 창설국의 주요한 일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중화민국은 그 이후 헌장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준수하고 유엔의 권위를 존중해왔습니다. 20년 이상에 걸쳐, 총회는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확인해왔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25년 이상에 걸쳐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계속해왔습니다. 대만의 경제성장은 세계 유수의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최근 4개년에 걸친 성장률은 평균 약 10퍼센트이며 그 1인당 국민소득도 아시아로서는 높은 축에 속하는 것입니다. 중화민국정부는 경제 및 기술적 중공업에 관한 개발도상국원조를 매우 활발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화민국 정부가 단순히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대체된다고 하는 것은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독자의 체제 하에서 섬나라의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가맹국의 추방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사실에 비추어 생각하면 중화민국의 그 뜻에 반하는 추방 내지 제외는 매우 불공정하며, 보편성과 제국간의 조화와 우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26회 유엔총회 아이치수석대표연설, 1971년 10월 20일. 『外交青書』 1972)

일본은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배제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1971년의 주요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화민국의 권리존중의 인정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아니라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 단계도 강화해나간 것이다. 일본이 이전까지 중화민국을 인정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기 결정에 대한 자기구속성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특히 일본의 자기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평화국가로서 가치수용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국제평화와 안정, 그중에서도 특히 극동과 아시아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강조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적 상황 인식과 패전국가 일본이 평화국가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오키나와의 조국반환

1970년대 초반, 일본이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던 문제는 오키나와(沖縄) 문제였다. 오키나와의 반환은 일본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이자 국민국가 형성 및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였다. 오키나와 반환은 ‘일본 전후의 종료’로 여겨질 만큼, 일본의 주권 회복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의제였다.

오키나와 반환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의해 미군의 시정권 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영토 및 거기에 사는 일본국민을 본래 바람직한 모습, 즉 일본국의 시정권 하에 복귀시킨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략. 정부로서는 이 협정의 승인 및 관련법안의 성립이 이번 국회에서 실현되고, 내년 중에 가능한 빠른 기회에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가 이루어져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 현의 건설에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日本国会會議録 1971/10/22).

우선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키나와 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오키나와의 조국복귀를 실현하는 때가 드디어 목전에 다다른 것을 국민의 모두가 함께 깊이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겨우 목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총력을 집결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국정부 및 미국민의 역사적인 결단에 대해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키나와가 핵없이 본토 반환되는 것은 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미수호 백년의 역사에 더욱 빛나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67회 국회 사토 총리 발언, 『外交青書』 1972).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한 공청회나 외교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 인정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 군사적 측면에서 대만과 오키나와를 연계해서 이해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971년 7월 24일 개최된 참의원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미중관계 개선으로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의 전환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오키나와가 반환되면 중국대륙 및 대만과 경계를 접하게 되는데, 미중관계의 개선으로 대만의 지위가 변화하게 되면, 오키나와의 전략적 지위도 변화하기 때문에 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의 군사적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미중관계 개선이 아시아의 긴장완화로 나타날지, 대만해협의 갈등으로 전개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미중관계와 중국 인정문제, 미일관계 그리고 일본 국내문제의 직접적인 연계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게다가 오키나와의 반환은 센카쿠/다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 지역의 대륙붕 경계설정과 석유 추출과 관련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었다(日本国会會議録 1971.05.17, Soeya 2001).

1971년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주요 과제가 오키나와 반환, 중국 인정문제, 그리고 국제경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外交青書』 1972).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반환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미일 섬유교섭과 함께 미일 양국 정부 간 첨예한 논쟁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었다.

사토총리와 닉슨 대통령은 1969년 11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오키나와 반환을 예고하였다. 1971년 6월 17일에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서명하고 1972년 5월 15일에 일본으로의 반환이 실시되었다(『外交青書』 1972).

2) 평화 투쟁

1970년, 일본은 유엔 25주년, 전후 25년을 맞이하면서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유엔헌장 개정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요구한다. 제25회 총회에서 아이치(愛知揆一) 외상의 일반검토연설과 사토 수상의 유엔25주년 기념 연설을 살펴보면, 평화로의 투쟁(平和への戦い)을 내세우며 거의 대부분

을 안보리 등 유엔 기구의 강화와 평화유지활동의 명문화, 구적국조항의 폐지 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비핵국가 일본’, ‘평화국가 일본’, ‘문화국가 일본’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헌을 바탕으로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였다(『外交青書』 1971).

우리나라의 헌법은 파멸적인 참화를 가져온 제2차 대전 후에, 이 같은 불행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결의 하에 제정된 것이며, 유엔헌장과 같은 시대정신의 산출물입니다. 따라서 그 기초가 되고 있는 평화주의는 헌장 전문의 정신과 완전히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즉, 헌장에 내세우는 항구 평화의 이상은 그대로 일본국민의 소원이며, 그 목표 하에서야말로, 일본의 번영도 발전도 시작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유엔총회는 적절하게도 ‘평화, 정의, 진보’를 테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일본국민은 유엔과 함께, 자유를 지키고, 평화에 철저하고, 국제신의를 지켜온 25년의 세월의 무거움에 한층 더 감회를 느끼는 바입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 우리나라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의 이상을 내걸고, 세계 70개국으로부터의 참가를 얻어, 일본만국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쟁에 의해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 건국 이래의 최대의 역경에 서게 된 일본이, 만국박람회라고 하는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전을 스스로의 손으로 주최할 정도로 국력을 충실히 얻은 것은 일본국민의 노력도 당연하지만, 또한, 25년간의 평화와, 그 간에 국제간의 이해와 노력의 보람입니다(유엔 25주년 기념 사토총리연설, 『外交青書』 1972)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는 일본 외교정책의 적극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기존의 상임이사국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제이며 패전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벗고 국제사회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의 가입과 안전보장이사국 의석 획득은 국제사회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본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토총리의 발언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과 함께 다극화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日本国会會議録 1971.10.26.).

헌장개정과 상임이사국으로의 도전과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소련과 프랑스가 명백한 반대를 표시하는 가운데, 중국의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인정문제는 일본에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이후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1978년 평화우호조약 협상과정에서도 일본은 유엔 헌장 개정과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한 중국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이 유엔에서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일본의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제정세는 오늘날 하나의 전환기가 되어, 국력의 비중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은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세계 속의 일본’의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냉정하고 유연한 태도를 취해 ‘평화로의 투쟁’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진행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바랍니다(제65회 국회 아이치외상 연설, 日本国会會議録 1971. 1. 22).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1970년 초 국제정세의 변화는 일본정부의 중국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중국문제는 일본 국내정치,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변화는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외교정책결정자들의 자기정당화가 대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였다. 국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자기정당화는 ‘국제규범형’의 강조로 나타났다.

국제규범형이 강화되어 나타난 것은, 일본이 당시 오키나와 반환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평화 투쟁을 내세우며 국제사회로서의 지위 향상을 제고한 자기정체성 확인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면하여 일본이 당시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 투쟁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중국 접근을 둘러싼 국내 다양한 입장들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내 여론의 분화와 대립은 외교정책 결정자의 자기정당화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치중한 역사문화적 유형과 이념대립형

에 기반하여 중화민국만을 인정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경과적인 변화단계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과 외교정책 결정자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자기정당화 과정, 즉 자기정당화 발생원인의 제 1기제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의 중국문제를 담당하는 외교정책결정 집단은 수상, 외상, 외무사무차관, 외무심의관, 아시아 국장, 아시아국 중국과장, 중화민국 대사, 홍콩총영사가 있다. 1970년과 1971년의 담당자를 살펴보면, 사토수상, 외상은 아이치와 후쿠다 다케오(1971.7.5.~), 외무사무차관으로 모리 하루키(森治樹, 1970.7.10.~), 외무심사관으로 호겐 신사쿠(法眼晋作), 아시아국장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 하시모토 히로시(橋本恕), 오가타 아키라(岡田晃) 홍콩총영사,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가토 키치야(加藤吉弥) 국제자료부 과장 등이 있다.

중국문제를 둘러싼 내외 움직임에 대해 1970년 10월 외무성에서도 중국정책의 재검토가 개시되었다. 당초 과제는 유엔중국대표권문제의 방침정책이었지만 이후의 수년간의 중국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강한 국내 압력으로 중일대사급협의를 포함한 정부 간 협의를 타진하고 있었다. 1970년 10월 20일 ‘우리나라의 중국정책에 관한 선택과 문제점’이라는 외무성내부문건에 따르면 이후의 중국정책은 현상유지, 대만과의 정치관계 단교와 중국승인, 2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국공합작이라는 네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였다(井上正也 2010, 407).

일본정부의 중국정책의 수정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것은 아시아국의 중국과였다. 중국과의 구상은 중국이 유엔 가입까지는 현상유지를 지속하고, 유엔 가입 후 캐나다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국을 인정하는 것이었다(アジア局中国課 1970). 중국과는 두 개의 중국을 부정하고, 대만과의 정치단교를 전제로 하는 캐나다 방식을 통해 중국과의 국교수립을 주장하고 있었다. 중국과 과장 하시모토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모두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이 2개의 중국을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했다.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井上正也 2010). 사토의 중국정책과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중정책을 경계하고 있었다.

아시아국 중국과의 의견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국제자료부(國際資料部)였다. 국제자료부는 1963년 4월에 설립된 국제정부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였다. 국제자료부는 중소대립을 계기로 공산권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종합적인 외교정책을 구축하는 정책기획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제자료부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주장하였다. 아시아에서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방식의 합의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전적 자세는 시인할 수 없다는 국제여론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제자료부는 대만의 중국 본토로부터의 법적 분단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만 방위가 영속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영유하게 되면 결국 대만 상실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화교의 권익보호를 명목으로 동남아제국에 대한 간섭정책을 확장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國際資料部調査 2003).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만으로의 군사기지 설치와 오키나와를 포함한 지역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잠재적 위협이 커질 것을 경고하였다(國際資料部調査 2003). 게다가 대만의 동해안 동쪽의 통상로의 잠수함기지의 건설가능성을 제시하며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國際資料部調査 2003).

오키나와 반환후의 아시아의 안전보장은 일본과 중국의 균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자료부는 거대한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핵무기에 대해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와 경제와 기술의 우위를 통해 대중전략의 강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월 14일 외무성 내 의견 조정을 위해 홍콩에서 중국정책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나 회의의 대다수는 중국과의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유엔 가입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현상유지로 귀결되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친중국파’와 ‘친대만파’가 형성되어 있어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井上正也 2010, 표 V-2 참조).

〈표 V-2〉 1970년대 일본 내 대중 접근의 다양한 입장

대중 접근 추진	대중 접근 신중
친중파 자민당 친중파 의원,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일중국교회복의원연맹, 일중문제연구회,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AA연), 일중국교회복의원연맹, 세이쿠카이(靑空會), 일본국제무역촉진협의회, 일중경제협회, 일중우호협회, 일중협회 등.	친대만파 일화관계의원간담회 소속의원 애국파, 아시아문제연구회(A연), 자유정치평의회, 세이란카이(靑嵐會) 등.

*출처: 서승원 2012, 101-116; Lee 1979, 432-433; 李恩民 2005, 66-69 참조, 오승희·최은봉 2014 재인용.

대표적인 친중국파는 〈일본국교회복촉진의원연맹(日中国交回復促進議員連盟)〉과 〈일본중국우호협회(日本中国友好協會)〉이다. 〈일본중국우호협회〉는 1950년 10월 설립하여 일본과 중국 쌍방의 국민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평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면서 두 개의 단체로 분리되었다. 당시 문화대혁명을 지지했던 주류 단체가 일중우호7단체(일중우호의원연맹, 일중경제협회, 일중협회,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일본중국문화교류협회, 일본우호회관)을 구성한다. 일중공동성명과 일중평화우호조약에서 언급한 정신을 준수하고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민의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보다 일본과 아시아 및 세계평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외 〈일중경제협회(日中經濟協會)〉는 1972년 11월에 설립되어 창립자는 라오청즈(廖承志)-다카자키 다츠노스케(高碓達之助)이고, 일중경제관계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종합화와 보급 등의 정보서비스, 경제, 기술교류 촉진, 인재교류의 촉진 등 일중경제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우호의원연맹(日中友好議員連盟)〉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우호관계의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 의원연맹이다. 자유민주당, 민주당, 일본유신회, 일본공산당의 4개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일중협회(日中協會)〉는 1975년 9월 29일 설립되어 중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야당인 사회당은 1970년 10월에 제5차 방중단을 파견하여 1971년 1월 <일중국교회북국민의회>를 결성했다. 공명당은 다케이리 요시가츠 위원장을 지도하에 1970년 12월 외곽단체인 <일중국교정상화국민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1970년 12월 9일, <일중무역촉진의원연맹>을 해산하고 <일중국교회북촉진위원연맹>이 결성되었다(井上正也 2010, 406). 회장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로 자민당과 공산당까지 포함하여 초당파 379명이 참가하였다.

사회당은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웠고, 공명당은 일본-대만조약의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일중국교회북의원연맹에서는 자민당을 포함한 설립선언에서 대만정부의 유일한 중국의 합법정부로 하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였다. 대만문제에 대한 사토의 자세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였다(井上正也 2010).

한편 친대만파의 활동은 <일화협력위원회(日華協力委員會)>를 통해 전개되었다. <일화협력위원회>는 1957년 3월 11일 일본과 대만의 지식인들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친중국파에 반대하는 견해를 제기한다. 1970년 7월 8일 제 15차 일화협력위원회 총회를 통해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일본, 대만, 한국의 삼자협력을 강조한다. 친대만파의 주요 주장은 반공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의 반대, 대만과의 외교관계 유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대만 유지를 주장하였다. <국교회북촉진의원연맹>이 1971년 미국과의 이중대표제 결의안의 공동제안을 반대하자 크게 격돌하였다.

26회 유엔총회를 앞둔 1971년 10월 19일 사토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중국정책의 변화를 선언하였고, 경과적 이중대표제를 제시하였다(日本国会會議録 1971.10.19). 경과적 이중대표제의 자기정당화는 ‘국제 신의와 우호’를 강조하는 국제규범형으로 나타났다.

1971년 시점에서 국제규범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유엔의 보편성과 공평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사항지정방식 결의안에서 하나 이상의 정부가 대표를 주장하는 경우 유엔 헌장과 상황에 따라 고려한다는 총회 결의안 A/RES/396(V)을 원용하며 유엔의 이념을 20여년 넘게 준수해온 회원국을 의지에 반하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外交青書』

1971).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우호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진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다(日本国会會議錄 1971.07.20). 미국은 1970년 초반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접근을 추진하며 중국정책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닉슨대통령은 1971년 2월 25일 제출된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며,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았다(Nixon 1972). 그러나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역시 중화민국 추방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했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에 중화민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된 다음 중화민국이 유엔에 머물러 있도록 설득시키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Nixon 1978).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은 26회 총회에서 22개국과 함께 중화민국의 배제를 방지할 두 개의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게 된다. 당시 일본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중국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절적이고 급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것이었다. 국제 동향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기보다는 타국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제한적인 수정을 가하고 경과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분화된 의견을 국가 행위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당화는 양자관계보다는 국제관계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제규범이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 1971년의 특징이다.

C. 일본의 중국인정: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 중화민국 권리존중

1971년 사토 수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張紹鐸 2007, 237).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에서의 권리수용의 인정을 하였고,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권리존중의 인정을 행사하였다. 사실상의 ‘두 개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나가면서, 하나의 중국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존재 ‘수용’의 인정은 부정하였다.

1971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환영하지만, 중

화민국을 유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중대표제 결의안(draft resolution A/L.633 and Add. 1 and 2)’ 과 중화민국 추방은 중요문제임을 강조한 ‘추방반대중요문제 결의안(draft resolution A/L.632 and Add.1 and 2.)’ 을 공동 제안한다.

1971년 총회에서 일본대표는 일본정부의 중화민국 추방 반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중화민국이 헌장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준수하고 유엔의 권위를 존중해 왔으며, 20년 이상에 걸쳐 총회는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확인해왔다. 둘째, 중화민국정부는 25년 이상 대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계속해왔다. 셋째, 가맹국의 뜻에 반하는 추방 내지 제외는 매우 불공정하며, 보편성과 제국 간의 조화와 우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제기한 추방반대중요문제 결의안은 선결권을 획득하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55, 반대 59, 기권 15, 결석 2로 부결되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권리회복을 지향하는 알바니아 안(draft resolution A/L.630 and Add.1 and 2)이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 결석 3으로 채택되었다(UN A/RES/2758(XXV)). 이 결과에 따라 이중대표제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중화민국의 유엔에서의 의석 보존을 위한 시도는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미국과 함께 제안한 이중대표제결의안과 추방반대중요문제결의안은 일본에서는 복잡한 이중대표제결의안 혹은 경과적 이중대표제로 불렸다. 이는 보다 점진적인 접근을 희망하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을 둘러싼 정세의 현실을 있는 대로 직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쌍방에 정당한 대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을 2개의 국가로 분할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2개의 중국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도면밀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점진적 단계를 거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현실적이며, 또한 경과적인 것입니다. 이들 두 결의안은 양 당사자의 대립하는 주장의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고, 또한 이들의 주장의 최종적 결의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은 화해와

평화적 대화로의 길을 열고,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外交青書』 1972).

일본이 사용하는 ‘경과적’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일본의 경과적 이중대표제는 하나의 중국을 향해 나아가는 경과적인 것이며 기존의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경과적 이중대표제가 어려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양측의 견해를 모두 반영한 주도면밀한 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경과적 한시성의 시효에 대해서 중국이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로 설정하면서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중국 사이에 애매모호함을 의도한 것이다.

D.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일본은 1956년 12월 18일 유엔에 가입한 이래 중국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다. 중국 인정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정부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중국문제를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연계하며 복잡하고 미묘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日本国会會議録 1970.11.27.). 그러나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두 정부와의 관계를 모색해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은 국제 사회적으로도, 중일 양자관계에서도 일시적 미해결로 두는 미뤄두기로 대표되어 왔다.

1970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과 중화민국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알바니아안이 과반수를 넘기자, 일본은 절차적 회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은 인정하지만, 중화민국의 배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중국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경과적 조치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잠정적 미뤄두기를 사용하였다. 중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의 중국의 수용을 미뤄두지만, 중국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존재인정과 권리부정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1971년 일본의 경과적 이중대표제는 미뤄두기의 연속선상에서 경계짓기와 다중해석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중국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미뤄두기 방식에서, 중국문제는 중요문제이므로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제시한 ‘중요사항지정안’은 문제해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미뤄두기 전략이었다. 여기에 1971년은 ‘역중요사항지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에 적용하여 중화민국의 탈퇴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역중요사항지정안 역시 현상 유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미뤄두기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의 의도에 맞게 논리를 재단하여 주장하는 분리/조합의 경계짓기의 기술이 특화된 것이다.

또 다른 일본의 외교적 기술로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대한 다중해석이 나타났다. 보편성 원칙이란, 유엔은 모든 국가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²²⁾이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존중의 인정과 함께, 중화민국 권리존중의 인정을 강조하였다. 보편성의 원칙은 유엔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중화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주요 근거로 인용되었다.

국제규범형 자기정당화가 강조될 때 외교적 위선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제규범은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정당하며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 국제규범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주장하는 자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일본은 중화민국의 보편성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신의와 협력을 주장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의 인정투쟁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중화민국과의 인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외교적 위선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외교적 위선은 1971년의 일본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결정과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한 자기정당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1년 10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이 확정된 이후 개최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사토총리는 일본의 두 개의 결의안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향후 중국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 사토총리는 결의안 부결은 중

22) 원문표현은 “the United Nations ought to be universal in the sense of including all States” 인다.

화민국의 추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 문제에 답하였다.

사토총리는 이어 일본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환영” 함을 분명히 하고, 비록 “정부의 조치는 유엔에서 부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장기적인 국익에 합치하는 것을 확신” 한다고 부언하였다(日本国会會議錄 1971.10.26). 후쿠다(福田赳夫) 외상 역시 결의안에는 패했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의를 끝까지 지켰으며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이 자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표명했다(日本国会會議錄 1971.10.26).

유엔에서 중국대표로서의 가입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국 간 관계로서 정상화 절차가 필요하며, 중화민국과의 조약이 단순히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인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사토총리는 향후 중국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 위에 성립” 하며 “일중 쌍방에 의해 수락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日本国会會議錄 1971.10.26).

향후 중국정책에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사토 총리는 “유엔에의 결정에 입각하여 이를 계기로 중국과의 사이에 국교정상화 교섭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 임을 밝히고, 후쿠다 외상은 “유엔의 결의가 있는 이상, 생각을 새롭게 하여 이 결의를 발판으로 정상화의 길로 매진하겠” 으며 중일국교정상화는 “역사의 흐름” 이라고 표현하였다(日本国会會議錄 1971.10.26).

1971년 사토 내각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결의안의 통과 여부로 판단한다면, 사토 내각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판단은 실패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토 내각이 중국 인정문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의안의 통과 여부가 아니라, 일본의 인정투쟁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오키나와의 조국반환’ 과정에서 나타난 미일협조와 중화민국 수호의 전략적 고려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의 지위 향상’ 의 면에서는 자유제국과의 협력을 제고하기는 하였지만, 평화국가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

출 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일본이 제안한 경과적 이중대표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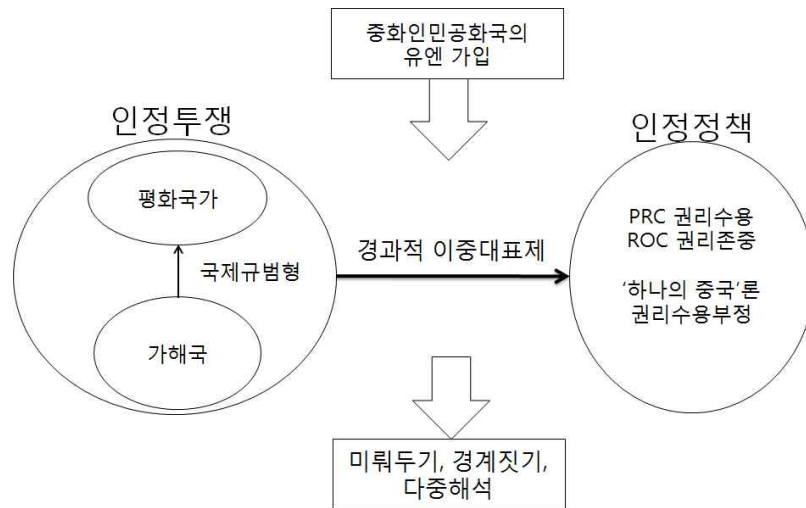
E. 소결

1971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문제가 논의될 때 일본은 평화국가 일본으로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다. 평화국가 일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평화국가 일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느 유형보다도 국제규범형의 자기정당화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일본의 유엔 헌장 개정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 어느 정부가 중국 대표가 되더라도 일본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두 정부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일본의 인정획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중화민국의 권리도 인정하고자 하였다.

자유국가들과의 우호와 보편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규범형으로 나타난 일본의 자기정당화는 경과적 이중대표의 제안으로 나타났지만, 유엔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두 개의 중국 정부를 인정하려는 일본의 대중 인정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경과적 이중대표제’를 제안하며 하나의 중국론의 권리수용은 부정하였다. 1970년대 일본의 대중 인정정책의 경과적 한시성은 미뤄두기로 나타났고,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유지를 위해 경계짓기, 국제규범의 다중해석이라는 외교적 기술이 두드러졌다. V장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1971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VI. 사례 4: 베이징, 1972²³⁾

A. 문제제기: 일화평화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나 사토의 추진 의사와는 달리, 사토의 임기 내에는 교섭이 개시되지 않았다. 중국 측에서 사토 총리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사토 총리가 1971년 10월 결정에서 나타난 친 중화민국 정책과 유엔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 일화평화조약의 파기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국이 제시하는 국교회복 3원칙과 부합하지 않았다(日本国会會議録 1972.01.31.).

국교회복 3원칙은 첫째,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둘째,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이며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고,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다. 셋째, 일화평화조약(중문에서는 일장조약)은 불법이며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2년 7월 7일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²⁴⁾ 일본 총리가 취임하면서 중일 국교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이전의 사토 내각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중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나카는 중국이 제시하는 국교회복 3원칙을 이해한다고 표명했다. 중국이 제시한 3원칙은 중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중화민국 문제를 국내문제화하고, 일본과 중화민국과의 단교하는 것으로 모두 중국 인정문제이다. 중국 지도부는 다나카의 당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23) VI장의 사례연구에 인용된 기본 자료와 관련 서술은 필자의 공동연구 최은봉, 오승희 (2010, 2012a, 2012b, 2013)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24) 다나카 가쿠에이(1918년 5월 4일~1993년 12월 16일)는 일본의 제64, 65대 총리이다. 니가타현(新潟県) 출신으로, 기시 내각에서 우정상(郵政相), 이케다 내각과 사토 내각에서 대장상(大藏相)을 역임하였다. 제1차 다나카 내각은 1972년 7월 7일부터 1972년 12월 22일, 제2차 다나카 내각은 1972년 12월 22일~1974년 12월 9일까지로 재임통산일수는 886일이다. 중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고, 룩히드 사건으로 퇴진하였다(日本首相官邸 2015).

다나카는 중일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중일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공명당 총재 다케이리 요시카츠(竹入義勝)를 파견한다. 다케이리는 1972년 7월 27일부터 7월 29일 중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갖고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회복 3원칙을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사전 협의에 도달하였다.

비록 다케이리의 사전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회복 3원칙을 인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양국 간 일화평화조약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여 관련 부분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일본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일중국교정상화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中江要介 2008, 分良成外 2013). 일본과 중화민국의 평화조약이 중일국교정상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일본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일화평화조약은 일본에게 중국 인정문제 바로 그 자체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게 되면 이전에 중국을 대표하여 체결한 일화평화조약은 무효인가 아니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특히 일화평화조약에서 중화민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또한 일본이 이미 중화민국을 중국대표로 선택하고 형성해왔던 외교관계를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화평화조약이 유효한 것이었다면, 그 조약에서 다룬 배상 등을 포함한 전후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승계해야 하는가? 앞서 체결된 일화평화조약과 다른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과 합의하면, 일화평화조약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다나카 수상과의 제2차 회담에서 “전쟁의 손해는 대륙이 받은 것”임을 강조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화평화조약에 근거한 배상청구 포기는 중국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제스가 포기했기 때문에 중국이 배상청구를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은 중국에게 ‘모욕’이라고 강하게 표명한다(石井明外 2003, 56-57).

일화평화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일화평화조약은 국가행위로서 적법하며 유효한 것이었다는 일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문안을 작

성하기 위한 절충 방안이 모색되었다.

1972년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권리수용의 인정 의지는 분명해졌다. 이제는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의 인정을 어떻게 권리수용의 비인정 상태로 전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일본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결정해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B. 일본의 인정투쟁

1. 일본의 중국 인식

1972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캐나다, 이탈리아 등과 국교를 수립하고, 1972년 2월 닉슨의 베이징 방문과 ‘상하이 공동성명’ 발표로 미중 양국은 종래의 ‘대결’의 색채를 띤 관계에서 ‘대화’를 포함하는 공존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었다(『外交青書』 1972). 일본이 바라본 국제정치는 미소 양 대국의 길항의 시대에서 미-중-소 3국간의 경쟁과 공존, 대립과 대화의 관계를 축으로 움직이는 시대로의 이행하고 있었다(『外交青書』 1972).

일본은 “1971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에 획기적인 해였다.”고 평가한다(『外交青書』 1972). 평풍외교에서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미 유연노선은 닉슨의 베이징 방문 발표로 결실을 맺었다. 닉슨 대통령은 1971년 7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계획을 발표하고, 1972년 2월 21일부터 1주일 간에 걸쳐, 베이징,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를 방문했다. 이 때 마오쩌둥,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이 이루어져, 2월 27일 상하이커뮤니케(Shanghai Communiqué)가 발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중에만 새로 15개국과 국교를 맺고, 유엔에 가입하면서 숙원이었던 중화민국 추방을 실현시켰다(『外交青書』 1972).

또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소국 외교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패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 5원칙과 피억압 인민, 민족의 해방투쟁지원을 통해 세계인민의 반미투쟁의 강화,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인민의 투쟁 및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제국과 함께 북아일랜드의 민

죽해방투쟁지원을 호소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북한 및 인도차이나 3국 좌파세력과의 연대강화를 도모하였다(『外交靑書』 1972).

그러나 동시에 비동맹그룹을 중핵으로 하는 이른바 중소제국의 단결은 점점 한계가 있어,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고자 하는 형태로의 ‘초(강)대국으로의 도전’에 대해서는 저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外交靑書』 1972).

사토 내각은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 직후 중일국교정상화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공언하였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1972년 외교청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이웃국가의 하나이며, 일중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금후 우리 외교에 최대의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보았고, “일중 양국 간에 국교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外交靑書』 1972).

1972년 1월 국회에 참석한 사토총리는 “중국은 하나라는 인식 하에 중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일중간의 문제들이 교섭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과 중화민국과의 관계 문제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다만, 일본의 진의에 대한 중국 측의 ‘오해나 불신감’을 우려하면서, 일본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하루라도 빨리 일중 간에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서로 협력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日本国会會議錄 1972)

그러나 사토 내각의 기대와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사토 내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토 이후의 일본을 기다리고 있었다. 1972년 7월 다나카 내각이 등장하고, 교섭이 개시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묵약사항을 제시한다.

1.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며, 대만을 해방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문제이다.
2.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일본정부는 대만에서 그 대사관, 영사관을 철거하고 또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장제스 집단(대만도 좋음)의 대사관, 영사관을 철거시킨다.
3. 전후, 대만에서 일본의 단체와 개인의 투자 및 기업은 대만이 해방되는 때에 적

당한 배려가 지불된다(물론 중국 측이 적당한 배려를 지불하는 의미이다)

중일공동성명 초안 작성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제안한 대만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일본이 중국은 하나라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힌다, “대만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의 별개의 정권 지배 하에 있는 것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중국 인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즉 중국의 국내문제”이다. 또한 일본은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만에 존재하는 국민정부와 외교관계를 유지해가는 여러 나라의 정책을 부인하는 입장이 되며, 또한 미중 간의 군사적 대결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일본국민의 염원인 이상 대만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기초적 견지이다.” 세 번째 요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대만과의 관계의 대사관, 영사관의 상호철거 및 전후 대만에 대한 일본의 투자에 대한 장래의 중국 측 배려”는 “일중국교정상화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타당한 기간 내에 당연히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일국교정상화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고, 지리적, 역사적 관계로서의 양자관계의 특수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나타난다. 다른 정치적 고려도, 시대의 흐름이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일국교정상화를 위해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일의대수 사이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는 일중양국(一衣帶水の間にあり歴史的にも深い関係にある日中兩國)이 정상적 국교를 갖는 것은 말하자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다른 제국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갖는 것과 양립해야하며, 또한 양립시킬 수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만문제에 대한 도입부분에서 전쟁기 일본과 대만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대만의 현재 법적지위에 관해 독자적 인정을 내리는 입장이 아니며, “대만을 다시 일본의 영토로 하려고 한다든지 대만독립을 지지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한 부분이

다. 중화민국에 대한 명칭은 이미 대만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중화민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상이한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중화민국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국가정체성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2. 일본의 자기정체성 확인: 우호국가로서 가치존중

1972년 초, 일본은 세계가 ‘다극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유연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본적인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기 판단이 나타났다(『外交青書』 1972).

일본이 인식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닉슨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통화충격이라는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되었다.

우선, 닉슨의 베이징 방문으로 나타난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해 미일관계의 강한 연대 확인으로 대처한다. 닉슨 대통령과 사토총리는 샌 클레멘테(San Clemente)에서 회담을 가지고 미일협력을 강조한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제도와 다이토 제도가 반환되는 것은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유례없는 사건임을 강조한다. 또한 사토 수상은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이 ‘고도선진공업국가’로서의 ‘공통성’ 위에 새로운 각도에서 깊은 연계를 유지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日本国会會議録 1972.1.29).

1971년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자유세계’라는 표현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1972년부터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극화되고 복잡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일본의 국력 증대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일 간의 협력이 일본의 국익증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데, 특히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의 평화적 반환은 전후 일본의 주권 회복과 미일협력의 결실로 구체화되었다.

후쿠다 외상: 지난 1월 6,7 양일, 미국 샌 클레멘테에서 이루어진 일미수뇌회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출석한 것입니다. 이 수뇌회담에서는 국민이 오랫동안 한결같이 염원해온 오키나와 반환의 기일이, 본년 5월 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때 반환 시에 오키나와가 핵 없이(核ぬき)라는 뜻을 확인하는 것, 반환 후에, 미군의 시설, 구역을 가능한 정리, 축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 등의 제 문제도 함께 합의 되었습니다

(중략) 전쟁에 의해 잃어버린 영토가 평화적인 대화에 의해 반환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대부분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에 의해 오키나와의 시정권의 반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결과를 가능하게 된 것은, 오키나와 현민을 비롯하여, 일본 국민전체의 오랜 노력의 보람임과 동시에, 오늘날까지의 일미우호관계가 가져온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日本国会會議録 1972.1.29).

두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을 우리나라에게 최대의 이웃국가일 뿐만 아니라, 일중 간에는 2000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가 있” 음을 강조하고,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평화조약을 통해, 중국 대륙과는 민간 무역 교류를 통해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해왔다고 확인한다. 특히 중국대륙과의 관계는 민간 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9억 달러 이상의 일중 무역 총액이 양국관계를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한다. 사토 수상은 “일중 양국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는 원래부터 세계의 평화유지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이라 고 의미를 부여했다.(日本国会會議録 1972.1.29).

세 번째 변화는 통화문제인데, 일본은 엔을 1달러 308엔으로 절상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일본은 선진국 통화 중 최대 절상폭을 단행하여 국제통화위기를 타개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조기에 통화위기를 극복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한다. 후쿠다 외상은 선진제국 간의 국제협조에 의해, 현재 “안정과 균형을 회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연대로 향해가고 있다” 고 보았다(日本国会會議録 1972.1.29.).

1971년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처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경제선진국으로서의 현실적 자아를 확인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미래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중국을 둘러싼 이와 같은 변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도 점점 명확해졌다. 과거 수년간 지속되어 온 국제통화문제는 세계의 중요문제의 하나였지만, 1971년 말의 다각적 통화조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 과제의 어느 정도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증되었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증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은 점차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어,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정치 면에서도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外交靑書』 1972)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미중소 3국에 비교될 힘은 없지만, 경제면에서는 미국, 서구에 비견될 세계경제의 지도적 입장에 있어, 또한 나뭇의 큰 영향력을 국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外交靑書』 1972)

일본의 경제선진국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은 군사력의 자발적 제한을 갖는 평화국가로의 국가정체성과 연계를 갖는다. 군사적 제약과 평화로운 세계가 일본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후쿠다 외상: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평화가 풍요한 사회의 건설을 지향합니다. 인구조밀의 자원이 궁핍하고, 해외제국과의 교류와 교역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평화의 속에 번영하는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중략)

우리나라는 여러 국민의 신의와 신뢰로 그 안전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상을 내세우고, 경제상 그 힘을 가지면서도, 군사대국으로의 길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으로의 도전입니다. 이 실험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곤란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후의 황폐 속에서 일어서고, 금일의 우리나라를 쌓아올린 우리 일본국민의 영지와 노력을 가진다면, 이와 같은 곤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난관을 넘어서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문화국가로서, 세계의 속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도록,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외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日本国会會議錄 1972.1.29)

패전국가였던 일본은 전후 20여 년간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경제대국으로 가치확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1972년 시점에서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역할을 인

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은 다나카 내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1972년 10월 28일, 국회에서 오히라 외상은 중일국교정상화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히라 외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존립의 주체적, 객관적인 조건들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평화에 철저한 나라로서, 안으로는 이에 걸맞게 스스로의 내정을 정비하고, 대외로는 국제적인 신용을 높이는 여러 외국과의 교류를 진전시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충실히 따라, 금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책임과 역할이 매년 증대하고 있는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국내외에 걸친 책임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 국익이 유지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日本国会會議錄 1972.10.28)

다극화되는 세계 속에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하려는 움직임은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1972년 2월 몽골과의 국교정상화와 소련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북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면서 동남아시아 외교도 보다 본격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지평의 확대(五百旗頭真 2014)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1971년 7월에 키신저의 극비 방중 시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에서, 저우언라이가 일본에는 ‘확장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키신저는 일본이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면 그 우려가 실현된다고 동의하고, 일미안보관계가 일본 군국주의화를 방어하고 있다는 일미안보의 이른바 ‘병마개’론을 공유하게 되었다(谷芳秀 2003; 毛里和子 2006; 손열 2013; 国分良成外 2013). 1972년 2월에 닉슨이 방중한 때에도 키신저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시야는 부족하다’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신뢰에 무게를 두고, 닉슨도 일본의 군국주의가 과거의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 ‘확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添谷芳秀 2003; 毛里和子 2006; 国分良成外 2013)

1972년 5월에 사토 내각이 주력했던 오키나와 반환이 실현되었다. 이후 이른바 ‘가쿠후쿠 전쟁’으로 불리는 후쿠다 다케오와 다나카 가쿠에이와의 사

이의 후계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사토가 지지하는 후쿠다는 중화민국과의 단교에 보다 소극적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접근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다나카가 오히라 마사요시, 미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7월 5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2일 앞둔 회담에서 다나카, 오히라, 미키는 일중국교정상화를 향한 교섭을 행하는 것에 합의한 정책협정을 결정했다. 후쿠다를 포함한 4인으로 이루어진 총재선거는 제1회 투표에서 결판나지 않고, 결선투표로 282표를 획득한 다나카가 190표의 후쿠다에 승리했다(分良成外 2013).

1972년 7월 5일, 자민당 총재 선거후의 기자회견에서, 다나카는 ‘일중국교정상화의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7월 7일 제1차 다나카 내각 성립 후, 수상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外交青書』 1973). 다나카 수상은 중일국교정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70년대 정치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는 국민에 테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한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중국교정상화에 진력하고 또 일본열도개조를 제창한 것도,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청을 통절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중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을 시작으로 하는 여러 원칙의 기초 위에, 평화와 우호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내외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일중국교정상화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는 세계적인 넓이를 갖게 되었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일단으로 더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공헌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나카 수상은 중일국교정상화와 일본열도 개조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중일국교정상화를 다나카 수상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이러한 다나카 수상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이후 분명히 사토 수상과 오히라 외상의 중국인식은 변화하였다는 점을 주지하고자 한다. 사토 내각에서는 중일국교정상화

가 오키나와 반환과 연계되어 다루어졌다면, 다나카 수상은 중일국교정상화를 일본열도개조론과 연결하고 있었다. 중일국교정상화의 의제가 ‘국내정치’ 적으로 맥락에서 연계하여 활용한 것은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기인식 중심적 시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X 역사문화형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를 전후로 나타난 일본 외교정책결정 집단의 자기정당화 서술을 살펴보면 국제규범형과 역사문화형의 조화가 나타난다. 특히 중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아가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양자관계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서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일관계의 기반은 유엔의 기초 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중일관계와 유엔중심외교를 조합한 것이다. 중국이 주장해 온 평화공존 5원칙과 유엔헌장의 원칙이 국제규범을 구성한다.

오히라 외상: 공동성명은 이후의 일중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권,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 및 평화공존의 5원칙이 그러합니다. 게다가 양국은 이러한 원칙 및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의 불행사를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성명에서 그 체결교섭을 약속하고 있는 평화우호조약은 이와 같은 지침을 입각하면서, 장래의 일중 간의 선린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日本国会會議録 1972.10.28).

그런데, 역사문화적 특수성은 중일 양자 간의 특수성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양자관계의 특수성도 함께 나타났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전까지 일본은 대중국 정책에서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주장해왔다. 일본외교의 미국 추수성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시간문제로 나타났고, 중일 간의 협력이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질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 일

반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미국에 대한 외교가 일본의 자립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었던 것과 달리, 오키나와 반환 이후의 일본의 대미정책은 미일 양국 간의 협력을 보다 동등한 수준에서 이끌어나가겠다는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까닭은 중일국교정상화 반대세력의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채택한 것도, 일본 국회의 비준 없이 국교정상화를 우선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국회비준을 얻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 평화우호조약 체결 과정을 생각해보면, 일본 국내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나카 수상: 우리는 이전에 하와이에서 닉슨 대통령과 회담하고, 일미양국의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가져왔지만,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일미양국의 금후의 우호협력관계의 유지증진은 일미양국에 멈추지 않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안전과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日本国会會議錄 72.10.28)

후쿠다 외상: 지난 번 일미수뇌회담에서도 관련 관점에서 미국정부수뇌에 대해 일중국교정상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외의 각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광범위의 이해를 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최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및 소련을 방문하여 관계국 수뇌에 대해 일중국교정상화교섭에 취지를 전달하여, 그 이해를 심화시켜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한국 및 동남아시아의 제국에 대해 각자의 특파대사를 파견한 것도, 마찬가지로 배려에 근거한 것입니다.(日本国会會議錄 72.10.28)

중일 양자 간 특수성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지역인식이 패전국 일본에서 자유국가 일본으로, 아시아 선진국으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대미정책과 대아시아 정책의 교차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후쿠다 외상: 일중국교정상화는 일중 간의 역사에 새로운 막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입니다. 양국관계의 장래, 한층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이제까지의 노력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日本国会會議録 1972.10.28.).

C. 일본의 중국 인정: 중화민국 권리확인

1972년 9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간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종료되었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중일 간 권리수용의 인정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1972년 초 이미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 추진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어떠한 형식으로 받아들일가에 대해서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의 관계는 유지함으로써 권리확인의 인정 단계로 조정되었다.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기록은 30년이 지난 2002년 이후 공개되어 당시의 교섭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시이의 연구는 이 공개 자료를 제공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시이의 자료집과 외교청서, 국회의사록 기록을 바탕으로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일본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본다.

1972년 7월 5일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정권이 등장하면서 중일 공동성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 차례의 다케이리 요시카츠(竹入義勝) 공명당 총재와-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의 회담, 다나카 수상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의 방중 이후 네 차례의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외상회담을 거쳐 관련 논의들이 정리되었다(표 IV-1 참조). 일본 측에서는 다나카 총리, 오히라 외상, 니카이도 스스무(二階堂進) 관방장관, 하시모토 히로시(橋本恕) 중국과장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저우언라이 총리, 지펑페이 외교부장, 랴오칭즈(廖承志) 외교부고문, 장시향산(張香山) 외교부고문, 한니엔룽(韓念龍) 외교부부부장이 참석하였다.

〈표 VI-1〉 중일공동성명 관련 주요 회의 (1972년)

회의	일시	장소
다케이리 · 저우언라이 1차	7.27 16:00~19:00	
다케이리 · 저우언라이 2차	7.28 19:00~20:45	
다케이리 · 저우언라이 3차	7.29 19:30~21:30	
제1차 정상회담	9.25 14:55~16:50	人民大会堂安徽厅
환영만찬회(저우언라이주최)	18:00~	人民大会堂安会厅
제1차 외상회담	9.26 10:20 ~ 11:40	人民大会堂
제2차 정상회담	14:00~16:30	迎賓館
제2차 외상회담	17:10~18:20	迎賓館
제3차 정상회담	9.27 16:10~약 18:40	人民大会堂福建厅
다나카 · 마오쩌둥 회담	20:30~21:30	마오쩌둥 저택 서재
비공식 외상회담		만리장성 왕복 차 안
제3차 외상회담	22:10~0:30	迎賓館
제4차 정상회담	9.28 15:00~16:50	迎賓館
답례만찬(다나카주최)	18:30~	人民大会堂安会厅

* 출처: 毛里和子 2006, 石井明外 2003, 国分良成外 2013 참고 필자 재구성.

공동성명의 내용은 단순히 국교정상화의 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폭넓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일공동성명이라는 표제를 선택하였다(石井明外 2003). 공동성명의 전문에서는 전쟁상태 종료, 반성과 책임, 중국정부승인, 평화우호관계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본문은 다시 1조에서 ‘전쟁상태의 종료’를 선언하고, 2조부터 4조까지는 중국정부승인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그 후 5조에서 배상청구 포기를 선언하였다. 6조부터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평화우호관계를 표명하는 4단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VI-2 참조).

〈표 VI-2〉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의 공동성명(일중공동성명)

일중 양국은 일의대수의 이웃국가이며 오랜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양국국민은 양국 간에 이제까지 존재해 온 부정당한 상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전쟁상태의 종결과 일중국교 정상화라는 양국국민의 바램의 실현은 양국관계의 역사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 측은 과거에 있어 일본국이 전쟁을 통해 중국국민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게 반성한다. 또한 일본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북교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 국교정상화의 실현을 이룬다고 하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중국 측은 이것을 환영한다.

일중 양국 간에 사회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평화우호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또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상호의 신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국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며, 또한 아시아에 있어 긴장완화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다.

1.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이제까지 부정당한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된다.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거듭 표명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 8항에 근거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4.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2년 9월 29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양국 정부는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 따라 각자의 수도 및 지방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또한 가능한 한 빨리 대사를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
6.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 및 호혜 또한 평화공존의 모든 원칙의 기초위에 양국 간의 영구적인 평화우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합의한다.

양국 정부는 좌측의 제 원칙 및 유엔헌장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국 및 중국이 상호 관계에 있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및 무력에 의한 위압에 호소하지 않기로 확인한다.

7. 일중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제3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양국의 어느 쪽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고 하는 다른 어떠한 국가와 국가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8.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평화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교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9.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인적 왕래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또한 기존의 민간계약을 고려하면서, 무역, 해운, 항공, 어업 등의 사항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여 교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1972년 9월 29일 베이징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일본국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지펑페이(姬鵬飛)

* 본 조약은 일문과 중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는 일문을 기본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중국과 일본의 표시가 ‘일중’으로 되어있는 본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일본은 일화평화조약과 일중국교정상화의 정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교섭 과제였다. 일화평화조약과 일중국교정상화의 충돌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문제였다. 첫 번째는, 전쟁상태 종료의 시점 문제, 두 번째는 일화평화조약의 종료/무효 문제, 세 번째는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중화민국과의 관계 문제이다.

우선 전쟁상태 종료 시점에 대해 살펴본다. 전문의 “일중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국가이며 오랜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고 있다. 양국 국민은 양국 간에 이제까지 존재해 온 부정당한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전쟁상태의 종결과 일중국교정상화라는 양국 국민의 바램의 실현은 양국관계의 역사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의 부분과 제1항의 “1.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이제까지 부정당한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다케이리는 7월 25일 중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가지고 이후의 중일국교정상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7월 29일 중국 측 공동성명안을 제시받는다. 처음 받은 문구의 표현은 ‘전쟁상태는 이 성명이 공표되는 날에 종료된다’였다. 이후 일본 측이 제시한 초안은 ‘전쟁상태의 종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두 초안에 제시된 표현은 전쟁종결문제와 관련된 양국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초안에서는, 공동성명 공표일을 전쟁 종료일로 인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초안은 전쟁상태는 이미 종결되었고, 공동성명에서는 그 종결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이미 1952년 일화평화조약을 통해 ‘일본국과 중화민국과의 사이의 전쟁상태는, 이 조약이 효력을 발하는 날에 종료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1972년 성명으로 다시 전쟁 종료를 선언할 경우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러나 중국은 1952년 일화평화조약은 무효임을 강조하고 있어 양국 간 입장이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아닌, 전쟁 ‘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은 전쟁 자체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전쟁상태의 종료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2년 이전까지의 중일 간 상황을 전쟁상태의 부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石井明外 2003, 55).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전쟁상태는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상태를 종료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외상회담이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차 외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과의 간의 전쟁상태는 이 성명이 공표되는 날에 종료한다’는 표현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여기에’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1972년 성명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 성명이 공표되는 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국과 중국 간의 전쟁상태의 종료를 여기에 확인한다’고 제시하였다. 여전히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지평페이 외교부장은 중국인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상태가 언제 종료했는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石井明外 2003, 85). 일본은 다음의 두 가지안을 제시한다.

제1안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국과 일본국 사이의 전쟁상태의 종료를 여기에서 선언한다’고 하는 것으로, 주어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와 같이 전승국만이 일방적으로 전쟁상태의 종료를 선언한 예는 과거에 연합국과 독일과의 전쟁상태종료에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제2안으로는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급후 전면적인 평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는 것으로, 언제 전쟁이 종료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에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장래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로 처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石井明外 2003, 87).

첫 번째 안에서 ‘전승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과 전쟁상태의 종료를 ‘여기에서’ 선언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어에서 일본국정부가 제외된 것과, 전쟁상태가 1972년 성명으로 ‘확인한다’에서 ‘선언한다’로 표현을 바꾸면서 전쟁상태의 종로의 시점이 더 불분명해졌다. 두 번째 안에서는 전쟁상태의 종료를 분명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두드러진다. 평화관계의 존재라는 표현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래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중국은 일본 측 입장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전쟁상태의 종료를 전문으로 넣는 것, 둘째는 본문에 전쟁 대신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가 종료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셋째는 양국이 상이한 입장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술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전쟁상태의 종결은 시간상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중일쌍방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 상이한 해석을 행할 수 있는 여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제안한다(石井明外 2003, 98).

〈그림 VI-1〉 전쟁상태 종료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의 종료로의 조정 과정 (1972년)

일본	중국
9월 9일 후루이요시미츠. (1) 양국 정부는 전쟁상태가 종결된 것을 확인한다	
1. 일본국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일본국과 중국과의 간의 전쟁상태의 종료를 여기에 확인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과의 간의 전쟁상태는 이 성명이 공표되는 날에 종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국과 일본국과의 사이의 전쟁상태의 종료를 여기에서 선언한다’ ‘일본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일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금후 전면적인 평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전문에서 명사형으로 ‘전쟁상태의 종결은...’으로 넣고, 본문 제1항에서는 ‘본성명이 공표된 날에 중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는 종료한다’
극히(極めて)라는 표현을 ‘이제까지의’, 일체의(一切の), 모든(全て)으로 수정제시	
제1항.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사이에 이제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한다	

* 자료: 田中明彦 1996, 石井明外 2003 기록편 참고하여 필자 작성. 최은봉, 오승희 2013 재인용. 화살표는 교섭에 있어서 상호 제안순서 및 협상 방향을 의미함.

이에 대해 오히라 외상은 ‘극히’라는 표현에 주목하였다.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가 종료된다’는 것이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만 종결되고 여전히 문제가 남을 수 있는 경우인가를 우려하였다. 일본 측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전후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남기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한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일체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종료를 제안하였고, 결국 ‘이제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수정되어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이제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한다’로 귀결되었다. <그림 VI-1>은 이러한 교섭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부자연과 비정상이 번갈아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비정상으로 일관되게 표현되었다. 교섭과정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단어는 다나카 수상의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국교정상화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국만의 생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상과 비정상의 규정문제는 쟁점으로 삼지 않기로 중국 측과 일본 측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비정상상태의 종료는 중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종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일본이 제기했던 이미 끝난 전쟁과 전쟁상태, 즉 그 이후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종료를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전쟁이 정상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라면, 전쟁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성의 범위와 그것의 회복을 따지는 일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교섭은 이 문제를 애매하게 다룬 채, 비정상 상태의 해결의 과정은 없이 양국 정부가 종결되었음을 합의하여 공표한 것이다. 당시 교섭이 우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측과 일본 측이 제시한 초안의 제목은 강화조약과 국교정상화의 관계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초안 제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일본국 정부 공동성명(초안)」이다. 한편 일본 측의 초안 제목은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안」이다. 일본의 제목에 따르면 공동성명의 핵심은 국교정상화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공동성명에 국교정상화 이외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으므로 ‘중일공동성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공동성명의 목적함수는 중일국교정상화이더라도 그 이외의 논의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케이리와 저우언라이의 회담이 진행되던 중 일본의 도쿄신문(東京新聞)이 다나카 수상의 중국 방문은 전쟁상태 종결에 한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저우언라이는 전쟁종결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다케이리는 전쟁종결은 물론 국교정상화에 대한 다나카 수상과 오히라 외상의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저우언라이 총리를 안심시키고자 했다(石井明外 2003, 19).

주요 안건 차원에서는 분리되어 다루어졌지만, 전쟁종결과 국교는 연계되어 서술됨으로써 맞교환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중일공동성명 중국 측 초안은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며 대만과의 단교를 전제로 한 ‘중일복교3원칙’을 강조한다.

전쟁종결의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사이의 전쟁상태는 이 성명이 공표되는 날로 종료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이라는 것은 공동성명 혹은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2. 국교의 문제입니다. 이는 이러한 표현으로 가고 싶습니다. ‘일본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출한 중일국교회복의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한다. 이에 기초하여 양국정부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한다(石井明外 2003, 29-30)

한편 일본은 사과와 표현과 ‘동시에’ 중국의 복교3원칙을 이해하고 ‘이 입장에 서서’ 중일관계정상화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초안을 작성하였다(石井明外 2003, 110).

전쟁종결과 국교의 연계는 효력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측은 ‘본 성명이 공표되는 날에’ 전쟁상태가 종료되는 시기의 문제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石井明外 2003, 90).

두 번째로는, 전문의 복교3원칙과 본문 2항, 3항, 4항의 내용에 관한 교섭 과정을 살펴본다. 전문에서 일본은 복교3원칙을 ‘이해’ 하고, 제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 한다. 제3항에서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표명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며, 일본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근거하여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여 일본은 직접적으로 중화민국의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제3항은 특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교회복 3원칙에 대해서, 중국 측 안에서 ‘일본 측은 일본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국교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려는 견해를 확인한다. 중국 측은 이를 환영한다.’ 고 제안하였다. 일본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일본국 정부가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일본국 정부가’ 를 삭제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이 경우 중국어에서 보면, 문장의 주어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는데, 일본은 ‘일본 측’ 이라는 말이 주어라고 하자, 중국은 ‘일본 측은 재확인한다’ 는 어구로 교체한다.

제 4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하며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중국이 제안한 문안을 살펴보면,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출한 중일국교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을 승인한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일본 측 초안을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국교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표명하고, 이 입장에 서서 중일관계정상화의 실현을 이룬다. 중국정부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로 전문을 구성하고, 본문은 ‘(2)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을 승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재차 표명한다. 그리고 (일본국정부는 카이로 선언에 근거하여 중국정부의 이 입장에 찬성한다.)’ 로 제안하였다. 일본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특히 괄호 안에 제시하여 신중하고자 하였다. 일본 측 초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포츠담 선언 제8항에 근거한 입장을 견지한다’ 는 문구는 중화민국은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을 가리키는데, 일본은 전후 일본이 수용한 포츠담 선언을 명시하였다. 1945년 8월의 포츠담선언 제8항은 카이로선언이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및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한정된다.’ 는 것이다. 1943년 11월 27일의 카이로 선언에는 ‘만주, 대만 및 평후제도와 같은 일본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직접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포츠담 선언이라는 우회적이면서도 국제사회의 합의를 언급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제 3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일본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 해석은, 2항이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적 승인조항이고, 3항은 대만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토조항이라는 것이다(多喜寛 2014). 이 경우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주장을 일본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일본이 2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제3항을 부연하여 일본이 복교 3원칙을 ‘이해’ 할 뿐 ‘인정’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은 국교회복 3원칙에 대한 구체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회복 3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만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제3항에서 굳이 대만 영토가 중국으로 반환된다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였던 ‘포츠담 선언’을 언급한 것도 일본정부가 직접적으로 중화민국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한다(多喜寛 2014). 이러한 견해는 특히 당시 교섭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견해이다(要山 1972, 203; 多喜寛 2014, 236). 이에 따르면, 제3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중화민국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셋째, 중일공동성명에서는 ‘일화평화조약’이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화평화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여러 번 언급한 것과 상이하다. 이 부분은 중국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이다. 일본이 복교 3원칙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교섭과정에서 무효냐 종료냐의 논란이 일었던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평화조약은 직접적인 조항으로 남겨지지 않았다. 공동성명 발표로 ‘종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협상이 종료되었다.

중국이 무효로 주장하는 일화평화조약은 공동성명에서 조인이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일중관계정상화의 결과로서 일화평화조약은 존속의 의미를 잃고,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견해’라고 표명했다.

중국이 말하는 전쟁배상권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도 일화평화조약이 이미 다루고 있다는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중국이 ‘권’을 삭제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타결되었다.(최은봉, 오승희 2011; 分良成外 2013, 123).

한편, 중일국교정상화가 발표된 1972년 9월 29일 밤, 중화민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선언한다. 대만정부는 외교부장의 단교선언에서, 책임은 완전히 일본정부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본의 반공민주인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의를 유지해간다고 선언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中江要介 2008; 川島眞 2011; 国分良成外 2013, 125).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였지만, 대만과의 관계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다. 정경분리 원칙이 중화민국과의 관계에 적용되었다. 일본의 인정방식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일본 외교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平川幸子 2012).

일본은 중화민국과의 ‘이별의 외교’ (別れの外交)도 진행하였다(川島眞 2011). 시이나 전 외상은 1972년 9월 17일 대만을 방문하여 다나카 수상의 친서를 장제스에게 전달하고, 장경국 행정원장과의 회담에서 금후의 일본과 대만 사이 외교를 포함한 ‘종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中江要介 2008, 国分良成外 2013, 125).

일본의 중화민국 인정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공식적 외교관계의 단절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중화민국의 권리확인의 인정은 유지되었다. 일본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았고, 일화평화조약의 유효성 문제와 같이 중일 간 입장이 다른 부분은 해석의 차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중일 양측의 상반된 견해는 일본정부가 중시하였던 바대로 일화평화조약과 중일국교정상화가 양립할 수 있게 조정되었다.

D. 외교적 위선: 다중해석, 미뤄두기

중일공동성명 교섭에서 가장 부각된 외교적 기술은 다중해석이다. 양국 간 국교정상화 내용의 측면에서는, 일본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을 인

정하고, 양국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양측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전쟁상태의 종료 시점, 비정상 상태라는 표현 등 교섭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표현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남겨두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일공동성명이 갖는 불충분함에서 기인한다. 전쟁의 종료, 배상문제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정획득의 대가로 다루어진 부분이 존재하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문제 등은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각자의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 표현으로 절충되었다.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은 우선 지도자들 간의 합의의 형식으로 국교를 정상화 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사후의 문제로 남겨졌다. 1972년 공동성명이 양국 간 화해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중일공동성명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합의 과정, 그리고 결과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소에야는 공동성명을 일본 국내정치적 관점 및 일화평화조약과의 관련에 치중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임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添谷芳秀 1995). 모리 역시 국내정치 우선시와 대전쟁의 처리를 단 한 장의 외교문서로 끝낸다는 외교 감각을 언급하며 중일공동성명에서 강화조약의 내용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毛里和子 1996; 2014). 중국 인정문제에 치중된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대가(代價)였다(井上正也 2010, 542).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은 중국 인정문제의 귀결로 다루어졌다. 분명히 일중국교정상화의 시기에 국부와의 외교관계를 존속할 수 없었던 점은 일본외교의 좌절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이 실질적으로 잃은 것은 의외로 적었다(井上正也 2010, 542). 일화단교 후에도 경제무역관계는 유지되었고,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중화민국은 신흥공업경제지역의 일원으로서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일본과의 무역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일본이 염려했던 대만 내 미군철폐로 인한 대만상실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 체결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중화민국과의 관계에 대한 애매모호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중일공동성명의 각종 의제에서 나타난 중일 간의 입장 차이는 결국 ‘각자의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다중해석적 기술로 남겨두었다.

다중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미뤄두기 기술이 접목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치유통준이(求同存異, 구동존이)’ 전략으로, 일본에서는 ‘다나아게’로 표현되기도 하였다(최은봉·오승희 2012b).

외교적 위선으로 인한 중일공동성명의 불완전함을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노우에(2010)의 경우는 ‘부동위의 동의’로, 최은봉·오승희(2012b)는 ‘비합의의 합의’, 모리(2014)는 ‘불완전’한 공동성명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특히 모리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모리는 중국 문제에서 나타나는 ‘이중의 허구’가 중일국교정상화의 불완전성을 가져왔다고 설명한다(毛里和子 2014). 하나는 1952년 일화평화조약 체결이후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대만이 중국의 정통정부라고 보는 허구이다. 이것은 중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타자인식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허구는 중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전쟁의 책임을 일부의 군국주의자로 한정하며 선량한 일반 일본인과의 우호를 위한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정당화한 것이다(毛里和子 2014). 이중의 허구는 중국과 일본의 상호 정체성 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해석적 기술이 사용되어, 결과적으로는 ‘비인정으로의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은 중일 양국의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해석이 가능하게 한 다중해석과 미뤄두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일공동성명의 적절성의 논리로서 제시된 것이 평화공존 5원칙과 유엔헌장 그리고 포츠담 선언 등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제시하는 국제규범형의 특성도 드러나고 있다. 평화공존 5원칙은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 및 호혜 또한 평화공존’을 내용으로 한다. 1955년 반동회의와 1964년 가네포 등을 통해 중국이 주장해오고 있는 규범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평화공존원칙은 반패권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 중심의 세력형성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유엔헌장은 일본이 유엔중심외교를 지향해 온 것을 반영하고 있고,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대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대만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정투쟁은 1972년 국교정상화로 일단락되었다. 여기에 중국과의 모든 전후처리를 매듭짓고자 했던 주권투쟁의 과정에서 일본의 이익이 상호교차되면서 중국 인정문제는 중일국교정상화의 우선순위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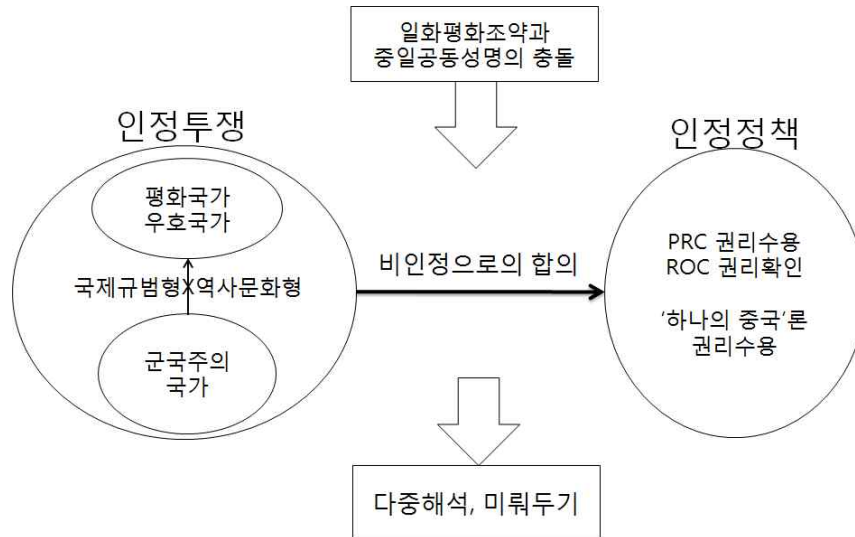
E. 소결

VI장의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VI-2와 같다. 1972년의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중국 인정문제였다. 중일공동성명이 가진 전후처리의 성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정투쟁을 위해 양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처리 문제는 1952년 일화평화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의 관계설정에 따라 새롭게 처리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전의 조약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애매하게 조정되었다.

일본은 자신의 합리적 행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중해석과 미뤄두기를 통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외교적 위선에 바탕을 둔 중일공동성명으로,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종료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수용을 인정하였다.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론을 권리 승인의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권리확인인 인정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중국론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시점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평화국가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정투쟁 속에서 교전국/비정상적 관계였던 이웃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였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를 시작으로 중일 우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나가기 시작한다.

〈그림 VI-2〉 1972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국 인정정책



VII. 결론

본 논문은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정부 인정문제를 분석하였다. 전후와 냉전으로 중첩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인정정책이 변화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전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논점 중에서도 중국정부 인정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중국정부 선택문제는 1972년까지 중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전후 중일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논제이다. 중국 인정문제는 기존에 국제법에서 주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논의를 기본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법률적 승인문제에 존재하는 정치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 승인 문제를 국가 간 인정문제로 접근하여 국제정치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국가이익을 힘으로의 투쟁이 아닌 존중 획득을 위한 ‘인정투쟁’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인정투쟁의 논의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문제의식과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구성주의에서 중시하는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주목하여 중일관계에 적합한 분석틀을 고안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후 중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전후 중일관계의 자아와 타자의 인식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에 주목하고, 이러한 괴리에서 인정투쟁이 특히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중국 인정정책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인정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패전국 자아와 국제사회에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이상적 자아 간의 괴리가 강력한 인정투쟁의 동기가 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은 패전국으로서의 존재존중의 비인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일본의 권리수용의 비인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립국 일본이라는 권리수용의 인정을 향한

투쟁이었다. 1960년대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한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가치확인의 인정을 추구하였다. 이후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평화국가 일본으로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며 가치수용과 가치존중을 향한 인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과 대만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하나의 중국’ 주장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 제3자로서 미국과 유엔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외압과 기회의 괴리도 복잡하게 얽혀졌다. 일본은 자신의 인정투쟁과 타자로서의 중국의 인정투쟁의 관계 속에서 중국을 인정하는 정책을 결정하였다.

자아와 타자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은 자국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외교정책 결정자 개인으로서의 인식과 집합적 정체성으로 국가정체성 사이의 괴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기정당화’가 등장한다. 일본정부의 자기정당화가 바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이었다.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자기정당화 속에는 일본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정부의 중국 인식과 인정정책이 나타나게 된다.

일본 외교정책결정자의 자기정당화 분석 결과, 국제규범형 자기정당화가 모든 사례분석에서 중심이 되었다. 1950년대 초반, 국제규범형이 이념대립형과 접목될 때,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의 인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루지 못했고, 중화민국의 권리수용의 인정이 나타났다. 일본이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 없었고, 중화민국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다.

국제규범형 자기정당화가 지역협력형과 접목된 1960년대에는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존재확인의 인정에서 나아가 도쿄올림픽의 참가 자격을 긍정하는 권리확인의 인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의 아시아 대표로서의 경제선진국으로서의 자기 인정 획득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에 대한 인정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1970년 들어서면서 이념대립형이나 지역 협력형의 서술들이 약화되었고, 국제규범형의 서술이 특히 부각되었다. 1971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

입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도 인정하는 권리수용의 인정을 부여하였다. 또한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 지위의 박탈을 막기 위해 권리존중의 인정을 강조하였다. 두 정부 모두에 대한 권리수용을 전제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경과적’ 이중대표제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1972년에는 국제규범형 서술이 역사문화형 서술과 함께 등장하였다. 중일국교정상화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권리수용 인정을 양자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었다. 중화민국에 대한 외교적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한 권리 유지를 보장받으며 권리확인의 인정으로 조정되었다.

1949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정책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불인정정책을 의미한다. 일본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를 인정하려는 정책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중국’론을 부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이 가진 민족국가형성, 국내정치 불간섭 등의 주장으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하나의 중국’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를 수용하지는 않는 입장으로 나아갔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으로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게 되었으나, 중화민국과 사실상의 관계를 유지해나가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제한적 인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일본의 모순적 인정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분화된 인정 개념이 유용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의 이러한 하나의 중국 불인정정책을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언제나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대로, 일본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일본이 하나의 중국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이 전후 탈

식민주의와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규범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 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을 민족국가 형성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특히 패전국 일본으로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규범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1952년 중화민국을 인정한 선택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국 인정문제에 대한 정책은 중국에 대한 인정 여부 보다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권리수용을 부정하는 ‘하나의 중국의 불인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정부의 중국 인정이 결국은 일본의 자기 인정투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중국 인정에는 일본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면상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른 조치라는 정당화가 모든 사례에서 두드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도덕적 표상으로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외교정책의 특징을 외교적 위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외교적 위선은 협력의 논리와 갈등의 논리의 양면성에서 발생하였다. 패전국 일본은 보편성과 다자관계를 우선시하는 국제규범형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보편적 다자관계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규범형이 이념대립형과 접목될지, 국제규범형이 지역협력형과 조합되는지, 국제규범형이 역사규범형과 결합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특정 문제와 연계해서 설명할 것인가가 일본외교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적 위선은 보다 구체적인 외교적 기술로 발현된다. 1952년 이전까지는 가능한 선택을 피하고자 하는 미뤄두기 기술이 주로 사용되었고, 1952년 일화평화조약 체결 시에는 중화민국을 전체 중국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다중해석 기술을 사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를 인정하려는 정책이 쌓아가기 기술과 정치와 경제 영역의 의도적인 분리를 시도하는 경계짓기 기술이 사용되었다. 1971년에는 한시적이면서도 우회하는 미뤄두기 기술, 역중요사항지정과 같은 경계짓기, 보편성의 원칙을 둘러싼

다중해석이 나타난다. 1972년 중화민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다중해석과 양국 간 견해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미뤄두기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 VII-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VII-1〉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중일 인정단계

분석결과		1949-1952	1962-1964	1971	1972
일본의 인정투쟁		권리수용의 인정	가치확인의 인정	가치수용의 인정	가치존중의 인정
자기정당화		국제규범형 이념대립형	국제규범형 지역협력형	국제규범형	국제규범형 역사문화형
인정, 불/비 인정	하나의 중국	존재수용 부정		권리수용 부정	권리수용
	PRC	존재확인	권리확인	권리수용	
	ROC	권리수용		권리존중	권리확인
외교적 위선		미뤄두기, 다중해석	쌓아가기 경계짓기	미뤄두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다중해석, 미뤄두기

일본은 여전히 전후 극복을 위해 인정투쟁 중이다. 일본은 ‘비정상’ (abnormal)국가에서 ‘정상’ (normal)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여전히 전후 패전국 정체성에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지역인식은 아시아·태평양(アジア太平洋)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를 포함한 보다 넓은 차원에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본 분석대상의 시기 일본의 ‘평화국가’ 정체성은 일본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스스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비정상’과 ‘평화국가’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이 변화하면서 재군비화라는 행동의 자기정당화로 제시되고 있다(Hagström 2015).

전후 70년 간의 중일관계를 살펴본다면, 중일 간 인정투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상호인정은 제한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어 가치존중의 인정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 영토갈등이나 역사인식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양국 간 비인정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전후 중일관계를 둘러싼 갈등 쟁점에는 여전히 외교적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정정책 평가와 인정 심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정투쟁 패러다임이 전후 중일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의 발언과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인정 부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 자신의 인정투쟁에 주목하였다. 향후 중국의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일관계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일관계 외에도 북일관계, 양안관계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상호인정을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의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차 자료>

1. 중일관계 기본 외교사료 (1952년~1972년)

- 일문 자료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70. 『日中関係基本資料集—1949-69年』. 東京: 霞山会.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98. 『日中関係基本資料集』. 東京: 霞山会.

日中貿易促進議員連盟. 1967. 『日中関係資料集 1945-1966』. 東京: 日中貿易促進議員連盟.

国際資料部調査. 「中国問題についての所見」. 外務省情報公開 (2003-48).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1969-1978.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 (검색일: 2015.4.15)

- 중문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http://www.gov.cn/test/2012-04/20/content_2117961.htm (검색일: 2015. 3. 15)

中華民國外交部 <http://www.mofa.gov.tw/Official/Home/Index> (검색일: 2015. 3. 20)

- 영문 자료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 (검색일: 2015.9.15)

2. 일본 국회의사록 기록 (Ⅲ, IV, V, VI 장)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검색일: 2015.4.15)

“海外同胞引揚及び遺家族援護に関する調査特別委員会” (1955.3.12., 3.16),

“オリンピック東京大会準備促進特別委員会” (1962.9.12.),

“日ソ共同宣言等特別委員会”

“日米安全保障条約等特別委員会”,

“沖縄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 (1967.7.7.),

“沖縄及び北方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 (1968.4.16.~1972.4.26.)

“沖縄返還協定特別委員会” (71.11.15~71.12.22)

3. 1964년 올림픽 관련 1차 자료(IV장)

中国奥林匹克委员会 <http://www.olympic.cn/> (검색일: 2015. 6. 29)

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http://www.joc.or.jp/> (검색일: 2015. 7. 24.)

Official Website of the Olympic Movement <http://www.olympic.org/>

“Tokyo 1964” <http://www.olympic.org/tokyo-1964-summer-olympics>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ames of the XVII Olympiad. 1966. “The games of the XVIII Olympiad, Tokyo 1964: the official report of the Organizing Committee” I, II . Tokyo: Kyodo Printing Co.

4. 1971년 유엔가입 관련 1차 자료(V장)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UN 총회 결의안. 1950 ~ 1971

A/RES/291(IV), 490(V), 501(V), 505(VI), 800(VII), 903(IX), 990(X), 1108(XI), 1135(XII), 1239(XIII), 1351(XIV), 1493(XV), 1668(XVI), 2025(XX), 2159(XXI), 2271(XXII), 2389(XXIII), 2500(XXIV), 2642(XXV), 2758(XXVI)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UN 총회 회의록. 1950~1971 중

A/PV. 1380, 1481, 1610, 1724, 1808, 1906, 1907, 1908, 1913,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82, 1983

<http://www.un.org/documents/resga.htm>. (검색일 : 2013. 11. 15)

The United Nations. “Voting Results” 1950 ~ 1971

<http://unbisnet.un.org/#voterecords> (검색일: 2013. 11.15)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69-1976, Volume V, United Nations, 1969-1972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 (검색일: 2014. 3.15)

5. 중일국교정상화 교섭 기록(VI장)

1972. 9.25~ 9.28 田中総理・周恩来総理会談

1972. 9. 26~9.27 大平外務大臣・姫鹏飞外交部長会談

1973. 10.10 日ソ共同声明

1975. 6.17 日本国政府に対するソ連政府声明

1978. 7.21~1978. 8.11 日中平和友好条約交渉 1~16

1978. 8.10~1978. 8.12 日中平和友好条約交渉-外相会談 1~3

1978. 8.10. 園田直外相-邓小平副總理會談

1978. 8.12.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和平友好条约
 / 日本国と中華人民共和国との間の平和友好条約.
 石井明外(編). 2003. 『記録と考証一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 東京: 岩波書店.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データベース “世界と日本”
<http://www.ioc.u-tokyo.ac.jp/~worldjpn/>(검색일: 2015. 9. 15)

<2차 자료>

- 국문 자료

- 강상중 지음, 임성모 역. 2004. 『내셔널리즘』. 이산.
 국립중앙도서관. 1982. 『동경올림픽관계기사록:朝日新聞縮刷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_____. 1982. 『동경올림픽관계기사록:朝日新聞』 64-1,64-6.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기시 도시히코, 쓰치야 유카 편, 김려실 역. 2012. 『문화냉전과 아시아: 냉전 연구를 탈중심화하기』. 서울: 소명출판.
 김기성. 2000. “헤겔의 인정투쟁 이론에 대한 고찰: <정신 현상학>의 <주인과 노예>절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기든스(Giddens, Anthony).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2006. 『사회 구성론』. 서울: 간디서원.
 김미경. 2010. “조직된 위선과 동아시아 지역통합.” 『아세아연구』 53(4), 187-220.
 김미란, 오영숙, 임우경 편. 2013. 『이동하는 아시아: 탈/냉전과 수교의 문화정치』. 서울: 그린비.
 김상준. 2005.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39(5), 215-236.
 _____. 2007.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중국과 일본.” 『21세기 정치학회보』 17(3), 425-445.
 _____. 2009. “일본 전쟁기억과 공동체의 상상-기억의 사회적 재생산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0, 31-55.
 김성철. 2015. 『일본 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용학. 2014.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 남궁곤. 2014. “오바마 독트린에 내포된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제정치적 표상.” 『미국학논집』 46(3), 75-109.
- 남기정. 2011. “중일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지연된 갈등.” 『일본연구논총』 33, 29-64.
- 남기호. 2009. “헤겔 인정 이론의 구조.” 『사회와 철학』 18, 217-250.
- 니버(Niebuhr, Reinhold). 이한우 역. 2015.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 닉슨(Nixon, Richard). 월간중앙 역. 1978. 『닉슨回顧錄 : 頂上人과의對話』. 중앙일보, 동양방송.
- 동북아역사재단. 2009. 『일본의 전쟁기록과 평화기념관. 1,關東・東北 지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1. 『일본의 전쟁기록과 평화기념관. 2,關西・九州・오키나와 지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출판사. 1964. 『東京올림픽畫報』. 서울: 東亞出版社.
- 레이코프(Lakoff, George). 손대오 역. 2010. 『도덕, 정치를 말하다』. 파주: 김영사.
- 마이스너(Meisner, Maurice J.) 김수영 역. 2010.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2』. 서울: 이산.
- 모리 카즈코 지음, 조진구 역. 2006. 『중일관계-전후에서 신시대로』. 서울: 리북.
- 문성훈. 2005. “인정 개념의 네 가지 갈등 구조와 역동적 사회 발전.” 『사회와 철학』 10, 145-169.
- 미드(Mead, George Herbert). 나은영 역. 2010. 『정신・자아・사회 :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파주: 한길사.
- 민병원. 2010. “국제관계 연구의 인식론.” 『국제정치논총』 50(2), 7-33.
- _____. 2012. “이해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 모델기반 정치학을 향하여.” 『한국정치연구』 21(3), 343-367.
- _____. 2014. “국제정치체제 모델의 다양성과 변화 :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48(2), 183-203.
- _____. 2015.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국제정치 ‘예외상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한국정치학회보』 49(1), 49-69.
- 박영준. 2013.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29(1), 91-121.
- 박정현. 2013. “한국전쟁과 타이완(台灣)의 지위.” 『아세아연구』, 56(3), 132-159.
- 박종희, 박은정, 조동준. 2015.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2), 27-61.
- 박홍서. 2010. “내재화된 위선?: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

- 정치논총』, 50(4), 7-27.
- 백원담. 이남주 편. 『‘냉전’ 아시아의 탄생 : 신중국과 한국전쟁』. 서울: 문학과학사.
- 부루마(Buruma, Ian). 최은봉 역. 2014. 『근대 일본: Inventing Japan 1853~1964』. 서울: 을유문화사.
- 비즐리(Beasley, W. G.). 장인성 역. 2004. 『일본 근현대사』. 서울: 을유문화사.
- 사토 다쿠미. 원용진, 오카모토 마사미 역. 2007. 『8월 15일의 신화 : 일본역사 교과서, 미디어의 정치학』. 서울: 궁리출판사.
- 서승원. 2011.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과 정경분리, 1955-1971.” 『국제정치논총』 51(4), 133-157.
- _____. 2012. 『북풍과 태양, 일본의 경제외교와 중국 1945-2005』.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서진영. 2010.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 소에야(添谷芳秀). 2012. “일중국교정상화를 되돌아보며-1970년대 일중관계에서 보는 양국외교의 이질성-.” 한국정치학회·게이오기주쿠대학 동아시아연구소공동 심포지엄 발표논문.
- _____. 박철휘 외 역. 2006.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전후 일본의 선택과 구상』. 서울: 오름.
- 손기섭. 2003.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17, 105-140.
- _____. 2004. “중일 정치경제관계에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 『일본연구논총』 19, 93-128.
- _____. 2007, “일본의 동아시아외교: 미일동맹과 중일관계의 상관성.”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225-251.
- _____. 2011. “덩샤오핑의 영토분쟁 ‘차세대해결론’의 현재화.” 『일본공간』 10, 73-106.
- _____. 2012. 『현대 일본외교와 중국』.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손열. 2013.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일본연구논총』 38, 257-275.
- 손장권, 이성식, 전신현. 1994. 『미드의 사회심리학: 이론적 발전과 적용』. 서울: 일신사.
- 신옥희. 2008. “동아시아 국제이론의 모색: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정치』 10』 29(2), 65-88.
- 심승구, 김미숙. 2008. “안티-올림픽 세계가네포대회의 역사적 의미.”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2), 139-150.

- 싱어(Singer, Peter). 연효숙 역. 2000. 『헤겔』. 서울: 시공사.
- 쑨거 지음, 류준필 외 역. 2003.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파주: 창비.
- 에런슨(Aronson, Elliot). 박재호 역. 2014. 『인간, 사회적 동물: 사회심리학에 관한 모 든 것』. 서울: 탐구당.
- 앤더슨(Anderson, Benedict R.). 윤형숙 역. 2007.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관한 성찰』. 서울: 나남.
- 양순창. 2010. “중국의 스포츠 외교: 대만의 명칭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2), 93-194.
- 여문환. 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한·중·일 전쟁기념관을 가다!』 한국학술정보.
- 오승희, 최은봉. 2014. “1970년대 초 일본의 대중국 정책과 중국대표권 문제 : 중국의 UN가입과 중일국교정상화.” 『일본연구논총』 39, 1-24.
- 오승희. 2010. “중국의 대 일본 배상청구 포기 요인 연구: 타이완문제와 중일 경제협 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와카미야(若宮啓文). 오문영 역. 1996. 『일본정치의 아시아관』, 서울: 동아일보사.
- 이규수. 2011.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전쟁기억과 ‘대동아전쟁’ 론-” 『일본학』 33, 29-65.
- 이노우에 마사야, 김은정. 2013. “전후 일본-대만 관계와 보수정권.” 『아세아연구』 56(3), 104-131.
- 이동준, 장박진. 2013. 『미완의 해방 : 한일관계의 기원과 전개』.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이동준. 2013. “미완의 탈식민지화.” 『아세아연구』 56(3), 65-103.
-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이성환 역. 1993, 『日本の 外交』. 서울: 푸른산.
- 이병한. 2010. “‘두 개의 중국’ 과 화교정책의 분기: 반둥회의(1955) 전후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5, 95-128.
- _____. 2012. “냉전기 중국과 아시아(1) -가네포(GANEFO)를 중심으로.” 『대동문화 연구』 78, 355-403.
- 이연식. 2013. “전후 일본의 히키아게 담론 구조-해외 귀환자의 초기 정착과정에 나 타난 담론의 균열과 유포-.” 『일본사상』 24, 71-101.
-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真). 조양욱 역. 2002. 戦後日本外交史.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서울: 다락원.
- 이원덕. 2005.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 『한국사연구』 131, 99-131.
- _____. 2008.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대한 고찰 - 국제비교의 관점.” 『동북아역 사논총』 22(4), 7-36.

- _____. 2010. “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2), 201-231.
- 이원표. 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 이혜정. 2009. “변환외교의 논리 : 또는 미국적 현실주의의 변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1), 265-298.
-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사회학』 44(1), 207-241.
- 이희옥. 2000. “대만 정권교체와 하나의 중국.” 『황해문화』 27, 308-318.
- 전재성. 2005. “196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 데탕트의 내부 구조.” 『국제정치논총』 45(3), 33-56.
- _____. 2010.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2), 35-64.
- _____. 2014.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 『국제정치논총』 54(2), 7-45.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 전진호. 2005. “일본의 대미 기축외교의 재정립: 추종과 자율의 사이에서.” 한상일 외, 『일본형 시스템: 위기와 변화』. 서울: 일조각.
- 정근식, 신주백(편). 2006.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선인.
- 조명동. 1989. 『민간외교의 과정과 분석- 중일관계의 역사적 실례를 고찰하여』 서울: 삼성출판사.
- 조진만, 최준영. 2008. “매니페스토의 학문적 활용을 위한 소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1), 161-192.
- 천자현. 2013. “화해의 국제정치.” 『국제정치논총』 53(2), 7-38.
- 총성의. 1979. “일·중공평화우호조약의 성립배경: 중공의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중소연구』 4(1), 45-78.
- 최영출, 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최은봉, 석주희. 2012. “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과 일본의 해양정책-갈등, 대응,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담론 201』 15(1), 45-66.
- 최은봉, 신재민. 2008. “일본 외교정책의 동아시아 지향성: 1990년대 이후 외상 국회 연례연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36, 25-44.
- 최은봉, 오승희. 2010. “중국의 대 일본 배상청구 포기의 양면성.” 『담론 201』 13(2), 151-176.
- _____. 2011. “냉전 초기 일본의 중국 정부 선택 문제와 대중 등거리 전략.” 『아시아연구』 14(2), 189-216.

- _____. 2012a. “전후 중일관계의 형성과 변환과정(1952-1972).” 『일본연구』 51, 139-159.
- _____. 2012b. “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국제정치논총』 52(4), 67-92.
- _____. 2013. “전쟁 기억과 전후 중일외교의 중층구조.” 『일본사상』 25, 3-25.
- 최준영, 조진만, 가상준, 손병권. 2008.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151-170.
- 최희식. 2008. “60년대 일본의 아시아 지역 정책 -미일동맹과 자주외교 사이의 협곡.” 『일본연구논총』 28, 145-172.
- _____. 2009.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 전략: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 『국제정치논총』 49(2), 33-58.
- _____. 2010.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JPI 정책포럼』 52, 1-16.
- 키신저(Kissinger, Henry). 권기대 역. 2012. 『헨리키신저의 중국이야기』. 서울: 민음사.
- 파일(Pyle, Kenneth B.). 이종삼 역. 2008. 『강대국 일본의 부활』. 서울: 한울.
- 페어클라우프(Fairclough, Norman). 김지홍 역. 2012. 『담화 분석 방법 : 사회 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광명: 경진.
- 페어클러프(Fairclough, Isabela), 페어클러프(Norman Fairclough). 김현강, 신유리 역. 2015. 『정치담화분석』. 서울: 박이정.
- 펄펠(Pempel, T. J). 최은봉 역. 2001. 『현대 일본의 체제 이행』. 서울: 을유문화사.
- 하딩(Harding, Harry). 안인해 역. 1992. 『중국과 미국』. 서울: 나남출판, 1995.
- 하야시 히로후미 지음,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역. 2012.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 전범재판·헌법 9조·동아시아 연대』. 서울: 논형.
-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2008. 『중국 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 한상진. 2008. “동아시아에서 본 응징의 정의, 용서 그리고 딜레마-화해를 위한 최소주의자의 상호접근방식.”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6 문명과 평화』.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헤겔(Hegel G. W. F.). 김양순 역. 2013. 『정신현상학』. 서울: 동서문화사.
- _____. 김준수 역. 2007. 『인륜성의 체계』. 서울: 울력.
- _____. 서정혁 역. 2006. 『헤겔 예나시기 정신철학』. 서울: 이제이북스.
- 현대일본학회. 2007. 『일본정치론』. 서울: 논형.
- 호네토티(Honneth, Axel). 문성훈 역. 2009. 『정의의 타자 : 실천 철학 논문집』. 파주:

나눔.

_____. 문성훈, 이현재 역. 2012.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사월의 책.

- 영문 자료

- Akira Iriye. 1990. "Chinese-Japanese Relations, 1945-90." *The Chinese Quarterly* 124(4), 624-638.
- Bartelson, Jens. 2013. "Three Concepts of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5, 107-129.
- Bauman, Zygmunt. 2001. "The Great War of Recognition." *Theory, Culture & Society* 18(2-3), 137-150.
- Baynes, Kenneth. 2002. "Freedom and Recognition in Hegel and Habermas."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28(1), 1-17.
- Buckley, Roger. 2003. "Hong Kong and San Francisco: Anglo-American Debate on East Asia and the Japanese Peace Settlements." *Japan Forum* 15(3), 435-449.
-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uzan, Barry. 2004. *From international to World Society?: English School Theory and the Social Structure of Globalis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ley, Kathleen M. 2009. "Network Text Analysis: The Network Position of Concepts." In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edited by Carl W. Roberts. New York: Routledge.
- Calder, Kent and Min Ye. 2010.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lder, Kent E. 1988.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4), 517-541.
- Caspersen, Nina. 2012. *Unrecognized States: the Struggle for Sovereignty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Malden, MA: Polity.
- Chan, Gerald. 1980. "The Two-Chinas Problem and the Olympic Formula." *Pacific Affairs* 58(3), 473-490.
- Chang, Parris, and Kok-Ui Lim. 1996. "Taiwan's Case for United Nations Membership." *UCLA J. Int'l L. & Foreign Aff.* 1, 393.
- Chen, Jian. 2001.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Chung, Eun Bin and Woo, Byungwon. 2015. "We Like You Better When We Feel Good About Ourselves: Group-Affirm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Korea Observer* 46(2), 387-421.
- David, Paul. 2000. "Path Dependence, Its Critics, and the Quest for 'Historical Economics' ." in P. Carrouste and S. Ioannides, eds. *Evolution and Path Dependence in Economic Ideas: Past and Present*. Cheltenham, U.L.: Edward Elgar.
- Damrosch, L. F. 1992. *GATT Membership in a Changing World Order: Taiwa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Republics*. Colum. Bus. L. Rev. 19.
- Erman, Eva. 2013. "The Recognitive Practices of Declaring and Constituting Statehood." *International Theory* 5(1), 36-56.
- Fabry, Mikulas. 2010. *Recognizing States: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States since 177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5(1), 94-107.
- _____. 2013 "Theorizing State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5(1), 165-170.
- Ferretti, Valdo. 2003. "In the Shadow of the San Francisco Settlement: Yoshida Shigeru's Perception of Communist China and Anglo-Japanese Relations." *Japan Forum* 15(3), 425-434.
- Fraser, Nancy. 2000. "Rethinking Recognition." *New Left Review* 3:107-120.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Avon Books.
- Gee, James Paul. 2005.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Theory and Method*. London; New York: Routledge.
- Gilpin, Robert. 1972.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Transnational Relations and World Politics* edited by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lazer, Daryl. 2006. "Does Hypocrisy Matter? The Case of U.S. Foreign Polic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2, 251-268.
- Goldstein, Judith, and Robert O. Keohane. 1993.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Gong, Gerrit W. 2001. *Memory and History in East and Southeast Asia: Issues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23, CSIS.
- Grant, Ruth Weissbourd. 1997. *Hypocrisy and Integrity: Machiavelli, Rousseau, and*

- the Ethics of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nt, Thomas D. 1999. *The Recognition of States: Law and Practice in Debate and Evolution*. Westport, Conn.: Praeger.
- Green, Michael J. 2003.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 Pow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Palgrave.
- Grieco, Joseph M.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485-507.
- Groarke, Paul. 2004. *Dividing the State: Legitimacy, Secession, and the Doctrine of Oppression*. Aldershot, Hants, England; Burlington, VT: Ashgate.
- Haas, E. B. 1964.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gström, Linus. 2005. "Relational Power for Foreign Policy Analysis: Issues in Japan's China Polic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3), 395-430.
- _____. 2015. "The 'abnormal' State: Identity, Norm/exception and Japa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1(1), 122-145.
- Hall, Peter A. 1993.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275-296.
- Hall, Peter A. and Rosemary C. R. Taylo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4), 936-957.
- Huang, Eric Ting-Lun. 2003. *Taiwan's Status in a Changing World: United Nations Representation and Membership for Taiwan*. Ann. Surv. Int'l & Comp. L. 9, 55.
- Hegel, G. W. F. 1969. *Jenaer Realphilosophie*. Hamburg.
- Honneth, Axel. 2012. "Recognition Between States: On the Moral Substra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Ringmar E. and Lindemann T.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Paradigm Publishers, 25-38.
- Hosoya, Chihiro. 1984. "Japa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1951-2: the Case of the 'Yoshida Letter' ." *International Affairs* 60(2), 247-259.
- Howe, Christopher. 1996. *China and Japan: History Trends, and Prospe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siao, Gene T. 1974. "Prospects for a New Sino-Japanese Relationship." *The China*

- Quarterly* 60(4), 720-749.
- Hsiao, Gene T. and Michael Witunski. 1983. *Sino-American Normaliz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Praeger.
- Hymans, Jacques E. C. 2014. "Why Recognize? Explaining Victorian Britain's Decision to Recognize the Sovereignty of Imperial Japan."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2, 49-78.
- Ijiri, Hidenori. 1990. "Sino-Japanese Controversy since the 1972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China Quarterly* 124, 639-661.
- Ikenberry, John G. 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219-243.
- Immerman, Richard H. 1990. *John Foster Dulles and the diplomacy of the Cold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oguchi, Takashi, and Paul Bacon. 2001. "Organizing Hypocrisy and Transforming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 167-172.
- Iriye, Akira and Warren I. Cohen. 1989.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Postwar World*.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Iriye, Akira. 1990. "Chinese-Japanese Relations, 1945-90." *The China Quarterly* 124(4), 624-638.
- Jackson, Robert H. 1993. *Quasi-states: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Third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Jager, Sheila Miyoshi, Rana Mitter. 2007. *Ruptured Histories: War, Memory and the Post Cold War in As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1999. "Realism, Neoliberalism, and Coopera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International Security* 24(1), 42-63.
- Johnson, Chalmers. 1978. "The New Thrust in China'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57(1), 129.
- _____. 1986. "The Patterns of Japanese Relations with China, 1952-1982." *Pacific Affairs* 59(3), 402-428.
- Kirby, William C. Ross, Robert S., Gong, Li. 2005. *Normalization of U.S.-China Relations: an International Hist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Klein, Christina. 2003.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asner, Stephen D. 1984.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16(2), 223-246.
- _____. 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Organized Hypocrisy in Nineteenth-Century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2), 173-197.
- _____. 2001. *Problematic Sovereignty: Contested Rules and Political Possibilit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Recognition: Organized Hypocrisy Once Again.” *International Theory* 5(1), 170-176.
- Lam, Peng-Er. 2004. “Japan-Taiwan Relations: Between Affinity and Reality.” *Asian Affairs* 30(4), 249-267.
- Langdon, Frank. 2001. “American Northeast Asian Strategy.” *Pacific Affairs* 74(2), 167-184.
- Lee, Chae-Jin. 1979. “The Making of the Sino-Japanes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Pacific Affairs* 52(3), 420-445.
- _____. 1984. *China and Japan: New Economic Diplomac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Levi, Margaret. 1997.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in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edited by Mark I. Lichbach and Alan S. Zucker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d, Jennifer. 2010.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 Lind, Jennifer.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 Press, 2008.
- Lindemann, Thomas and Erik Ringmar. 2012.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cognition*. Boulder, CO: Paradigm Publishers.
- Lindemann, Thomas. 2013. “The Case for an Empirical and Social-Psychological Study of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Theory* 5(1), 150-155.
- Lutan, Rusli and Fan Hong. 2005. “The Politicization of Sport: GANEFO-a Case Study.” *Sport in Society* 8(3), 425-439.
- MacMillan, Margaret. 2007. *Nixon and Mao: the Week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 Mahoney, James and Kathleen Thelen. 2010.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 Change.”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edited by Mahoney, James and Kathleen Thelen, 1-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h, James G. and Johan P. Olsen. 1998.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943-969.
- Martens, R. 2004. *Successful Coaching*. Champagne, Illinois: Human Kinetics.
- McCombs, Jennifer, and Clive Palmer. 2008. “Win or Lose, What Counts as Success in Coaching? Analysing the Opinions and Aspirations of Gymnastics Coache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ports Studies* 2(1), 115-130.
- McWhinney, Edward. 2007.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Plural-Ethnic Stat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Failed States, Nation-Building and the Alternative, Federal Option*. Leiden;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Mitrany, D. 1943. *A Working Peace System: An Argument for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London: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 Miyashita, Akitoshi, and Yoichiro Sato. 2001. *Japanese Foreign Policy in Asia and the Pacific: Domestic Interests, American Pressure, and Regional Integration*.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 Neuendorf, Kimberly A. 2000.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Nixon, Richard. 1970. *U. 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 Washington: U. S. Govt. Print. Office.
- _____. 1972. *U. 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 The Emerging Structure of Peace*. Washington: U. S. Govt. Print. Office.
- Ogata, Sadako. 1988. *Normalization with China*.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Oh, Seung-Hee and Choi Eunbong. 2015. “Separating Economy from Politics? Japan's Coexistence Strategy with Two Chinas in the 1960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3(2), 411-429.
- Peng, Tao. 2005. “Assessing the People's Diplomacy and Its Impacts on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Historia Actual Online* 7, 67-81.
-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ppin, Robert. 2000. “What is the Question for which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is the Answer?”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8(2), 155-172.

-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Sage.
- Raic, David. 2002. *Statehood and the Law of Self-determination*. The Hague; New York: Kluwer Law International.
- Roberts, Carl W. 1997.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Mahwah NJ. : Erlbaum.
- Ross, Caroline. 1998. *Interpreting History in Sino-Japanese Relations: A Case-Study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Routledge.
- Ross, Robert S and Jiang, Changbin. 2001. *Re-examining the Cold War: U.S.-China diplomacy, 1954-1973*.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Ross, Robert S. 2002. "U.S. Relations with China." In *The Golden Age of the U.S.-China-Japan Triangle 1972-1989*, edited by Vogel, Ezra F., Ming Yuan, Akihiko, Tanak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Rozman G. ed. 2012. *East Asian National Identities: Common Roots and Chinese Exceptionalism*.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unciman, David. 2010. *Political Hypocrisy: The Mask of Power, from Hobbes to Orwell and Beyon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amon, Lester M. and John J. Siegfried. 1977. "Economic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The Impact of Industry Structure on Public Poli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3), 1026-1043.
- Scott, J. 2012.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 Shapiro, Ian and Joseph Lampert. 2014.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Together with Scholarly Commentaries and Essential Historical Documents*. Yale University Press.
- Sherman, D. K., & Cohen, G. L. 2006. The psychology of self-defense: Self-affirmation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183-242.
- Shogo, Suzuki. 2007. "The Importance of 'Othering' in China's National Identity: Sino-Japanese Relations as a Stage of Identity Conflicts." *The Pacific Review* 20(1), 23-47.
- Snyder, David and Edward L. Kick. 1979. "Structural Position in the World System and Economic Growth, 1955-1970: A Multiple-Network Analysis of Transnational Intera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5), 1096-1126.
- Soeya, Yoshihide. 1998. *Japan's Economic Diplomacy with China, 1945-1978*. New York, Oxford: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Taiwan in Japan's Security Considerations." *The China*

- Quarterly* 165, 130-146.
- _____. 2002. "Japan's Relations with China." In *The Golden Age of the U.S.-China-Japan Triangle 1972-1989*, edited by Vogel, Ezra F. Yuan, Ming. Tanaka, Akihiko.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Sowa, J. F. 1984.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MA: Addison-Wesley.
- Strömbom, Lisa. 2014. "Thick Recognition: Advancing Theory on Identity Change in Intractable Conflic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 168-191.
- Talmon, Stefan. 1998. *Recognition of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Law: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overnments in Exile*. New York, Oxford: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Charles. 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edited by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2.
- Tsuyoshi Hasegawa. 2011. *The Cold War in East Asia, 1945-1991*.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Vogel, Ezra F. Ming Yuan, Akihiko, Tanaka. 2002. *The Golden Age of the U.S.-China-Japan Triangle 1972-1989*.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g, Qingxin Ken. 2000, *Hegemonic Cooperation and Conflict: Postwar Japan's China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CT: Praeger Publishers.
- _____. 2000. "Taiwan in Japan'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Pacific Affairs* 73(3), 353-373.
- Weber, C. 1995. *Simulating Sovereignty: Intervention, the State and Symbolic Ex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391-425.
- _____. 1994.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2), 384-396.
- _____. 2003.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 International Relations* 9(4), 491-42.
- _____. 2004. "The State as Person in International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0(2), 289-316.
- Weng, Byron S. 1972. *Peking's UN Policy: Continuity and Change*. New York : Praeger.
- Williams, Robert. 1997. *Hegel's Ethics of Recogn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lf, Reinhard. 2011. "Respect and Disrespect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Significance of Status Recognition." *International Theory* 3(1), 105-142.
- Wooffitt, Robin. 2005. *Conversation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a Comparative and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Thousand Oaks, Calif.: SAGE.
- Yoshihide Soeya, Masayuki Tadokoro, and David A. Welch. 2011. *Japan as a 'normal country'?: a Nation in Search of its Place in the World*. Toronto ; Buffalo [N.Y.]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Yun, Ji-Whan. 2015. "Progressive Setback in East Asia: Why and How Urban Citizens Challenged the New Politics." *The Pacific Review* 28(5), 655-678..
- Zheng, Yangwen, Hong Liu, Michael Szonyi. 2010. *The Cold War in Asia: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 Leiden : Brill.

- 일문 자료

- アクセルホネット. 山本啓, 直江清隆(訳). 2003. 『承認をめぐる闘争: 社会的コンフリクトの道徳的文法』.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 加々美光行. 1992. "日中国交正常化20周年と戦争責任." 『紀要』. 愛知大学国際問題研究所.
- 岡崎久彦. 2003. 『吉田茂とその時代』. 東京: PHP研究所.
- 岡田実. 2008. 『日中関係とODA』. 東京: 日本僑報社.
- 高原明生, 菱田雅晴, 村田雄二郎, 毛里和子. 2014. 『共同討議日中関係 なにが問題か: 1972年体制の再検証』. 東京: 岩波書店.
- 高原明生, 服部龍二(編). 2012. 『日中関係史 : 1972-2012』 1-3.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高坂正. 2006. 『宰相吉田茂』. 東京: 中公クラシックス.
- 橋本一夫. 2014. 『幻の東京オリンピック 1940年大会-招致から返上まで』. 東京: 講談社.
- 国分良成, 添谷芳秀, 高原明生, 川島真. 2013. 『日中関係史』. 東京: 有斐閣.
- 宮城大蔵. 2001. 『バンドン会議と日本のアジア復帰—アメリカとアジアの狭間で』. 東

- 京: 草思社.
- _____. 2015. 『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 吉田茂. 1958. 『回想十年』 第三卷, 東京: 新潮社.
- _____. 1999. 『日本を決定した百年』. 東京: 日本経済新聞社; 中央公論新社
- _____. 1992. 『世界と日本』. 東京: 中央公論社
- _____. 2012. 『回想十年』 新版. 東京: 毎日ワNZ.
- _____. 2015. 『大磯随想・世界と日本』. 東京: 中央公論新社.
- 楠綾子. 2013. 『占領から独立へ』. 東京: 吉川弘文館.
- 鹿島平和研究所. 1983.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 第1巻. 東京: 原書房.
- 多喜寛. 2014. 『国家(政府)承認と国際法』. 東京: 中央大学出版部.
- 大野益弘, 高橋玲美, 瀬戸弥栄子. 2006. 『東京オリンピック1964・2016』. 東京: メディアパル.
- 読売新聞政治部. 2014. 『「日中韓」外交戦争: 日本が直面する「いまそこにある危機」』. 東京: 新潮社.
- 藤原弘達. 1964. 『吉田茂』. 東京: 読書新聞社.
- 鈴木宏尚. 2013. 『池田政権と高度成長期の日本外交』.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鈴木正信, 香取俊介. 2006. 『北京の檻—幽閉五年二ヶ月』. 東京: 文藝春秋.
- 鹿島平和研究所. 1983.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 1. 東京: 原書房.
- 林曉光. 2003. “1970年代の中日関係.” 石井明外(編). 『記録と考証—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 東京: 岩波書店.
- 馬場公彦. 2010. 『戦後日本人の中国像: 日本敗戦から文化大革命・日中復交まで』 . 東京: 新曜社.
- 毛里和子, 園田茂人. 2012. 『中国問題: キーワードで読み解く』.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毛里和子. 2006. 『中日関係』. 東京: 岩波書店
- _____. 2011. 『現代中国政治—グローバル・パワーの肖像』.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服部龍二. 2011. 『日中国交正常化 - 田中角栄・大平正芳・官僚たちの挑戦』. 東京: 中央公論新社.
- 福田円. 2014. 『中国外交と台湾—「一つの中国」原則の起源』.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北康利. 2010. 『吉田茂の見た夢 独立心なくして国家なし』. 東京: 扶桑社.
- 三輪公忠. 2014. 『日本・1945年の視点』.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石井明外(編). 2003. 『記録と考証—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 東京: 岩波書店.

- 袖井林二郎, 竹前榮治. 1992. 『戦後日本の原點: 占領史の現在』. 東京: 悠思社.
- 矢吹晋. 2014. 『敗戦・沖縄・天皇 尖閣衝突の遠景』. 東京: 花伝社.
- 永野慎一郎, 近藤正臣(編). 1999. 『日本の戦後賠償—アジア協力の出発』. 東京: 勁草書房.
- 榮澤幸二. 1995. 『「大東亞共榮圈」の思想』. 東京: 講談社.
- 五百旗頭真. 2013. 『戦争・占領・講和 1941~1955』. 東京: 中央公論新社.
- _____. 2014. 『戦後日本外交史』. 東京: 有斐閣.
- 王泰平, 仁子真裕美(訳). 2004. 『あのころの日本と中国: 外交官特派員の回想』. 東京: 日本僑報社.
- _____. 福岡愛子(訳). 2013. 『「日中国交回復」 日記: 外交部の特派員が見た日本』. 東京: 勉誠出版.
-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 1998. 『日中関係基本資料集』. 東京: 霞山会.
- 殷燕軍. 1996. 『中日戦争賠償問題』. 東京: 橋本盛作.
- _____. 2007. 『日中講和の研究—戦後日中関係の原点』. 東京: 柏書房.
- 李恩民. 2005. 『“日中平和友好條約” 交渉の政治過程』. 東京: 御茶の水書房.
- 日本國際政治學會. 1957-1962. 『日本外交史研究』. 東京: 日本國際政治學會.
- 日本放送協會放送世論調査所(編). 1967. 『東京オリンピック』. 東京: 日本放送協會放送世論調査所.
- 日本外務省中国課監修. 1970. 『日中関係基本資料集 1949-1969』. 東京: 霞山会.
- 日中貿易促進議員連盟. 1967. 『日中関係基本資料集: 1945年-1966年』. 東京: 日中貿易促進議員連盟.
- 張紹鐸. 2006. “国連における中国代表権問題: 米・台・中の対アフリカ外交を事例に (1962~1965).” 『北東アジア研究』 11, 63-83.
- _____. 2007. 『国連中国代表権問題をめぐる國際關係(1961-1971)』. 東京: 國際書院.
- 張香山. 1998. “中日締結和平友好條約前後.” 『日本學刊』 1998(4).
- 猪木武徳. 2013. 『經濟成長の果実 1955~1972』. 東京: 中央公論新社.
- 前田直樹. 2009. “国連中国代表権をめぐる米台關係: ケネディ政権と蒋介石政権.” 『廣島法學』 33(2), 191-212.
- 田中明彦. 1996. 『日中關係 1945-1990』. 東京: 東京大学出版社.
- 田村重信, 小枝義人, 豊島典雄. 2000. 『日華断交と日中国交正常化』. 東京: 南窓社.
- 井上寿一, 波多野澄雄, 酒井哲哉, 国分良成, 大芝亮. 2013. 『日本外交の再構築 (日本の外交 第6巻)』. 東京: 岩波書店.
- 井上寿一. 2009. 『吉田茂と昭和史』. 東京: 講談社.
- _____. 2014. 『日本外交史講義』. 東京: 岩波書店.

- 井上正也. 2007. “国連中国代表権問題と池田外交: 国府‘分断固定化’構想をめぐる
て、一九五七-一九六四.” 『神戸法學雑誌』 57(1), 171-258.
- _____. 2008. “吉田茂の中国「逆浸透」構想-対中国インテリジェンスをめぐる、
一九五二-一九五四年-:吉田路線の再検証.” 『国際政治』 151, 36-53.
- _____. 2009. “日華平和条約の再検証--「限定承認」論を中心に(特集 東アジア国
際政治史の新展開--戦後外交文書の公開と視点の多元化).” 『近きに在りて』
56, 31-50.
- _____. 2010. 『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 조양현. 2007. “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におけるアメリカ,ファクター: ‘東南アジア開發
閣僚會議’設立を事例に.” 『일본연구논총』 26, 113-150.
- 佐久間, 裕美子. 1996. “中国代表権問題: アメリカ対中政策と国連.” 『政治学研究』
26, 1-19.
- 佐藤次郎. 2013. 『東京五輪 1964』. 東京: 文藝春秋.
- 朱建榮. 1992. “中国はなぜ賠償を放棄したか.” 『外交フォーラム』 10, 都市出版.
- 中江要介. 2008. 『日中外交の証言』. 東京: 蒼天社出版.
- 中島敏次郎, 井上正也, 中島琢磨, 服部龍二. 2012. 『外交証言録 日米安保・沖縄返還・
天安門事件』. 東京: 岩波書店.
- 中島琢磨. 2012. 『高度成長と沖縄返還—1960-1972』. 東京: 吉川弘文館.
- 池田慎太郎. 2011. 『独立完成への苦闘—1952-1960』. 東京: 吉川弘文館.
- 池井優. 2012. 『語られなかった戦後日本外交』.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川島真, 服部龍二. 2007. 『東アジア国際政治史』. 名古屋: 名古屋大出版社.
- 川島真, 松田康博, 楊永明 清水麗. 2009. 『日台関係史 1945-2008』. 東京: 東京大学出
版会
- 川島真. 2011. “中華民国外交档案に見る別れの外交(日華断交)—椎名悦三郎の訪台を
中心に一” 加茂具樹・飯田将史・神保謙編著. 『中国 改革開放への転換—
「一九七八年」を越えて—』.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浅野和生. 2012. 『日台関係と日中関係—「日中国交正常化」を見直す!』. 東京: 展転社.
- 添谷芳秀. 1995. 『日本外交と中國: 1945-1972』. 東京: 慶應通信.
- 波多野勝, 清水麗. 2004. 『友好の架け橋を夢見て: 日中議連による國交正常化への軌
跡』. 東京: 學陽書房.
- 坂上康博, 高岡裕之. 2009. 『幻の東京オリンピックとその時代: 戦時期のスポーツ・都
市・身体』. 東京: 青弓社.
- 平川幸子. 2012. 『「二つの中国」と日本方式(現代中国地域研究叢書)』. 東京: 勁草書
房.
- 浦辺登. 2013. 『アジア独立と東京五輪: 「ガネホ」とアジア主義』. 福岡: 弦書房.

霞山会. 2008. 『日中關係基本資料集—1972-2008年』. 東京: 霞山会.

- 중문 자료

- 顧維鈞.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譯). 1989. 『顧維鈞回顧錄』 第九卷. 北京: 中華書局.
- 古澤健一. 1988. 『昭和秘史日中平和友好條約』. 北京: 講談社.
- 刘建平. 2010. 『战后中日关系: ‘不正常’ 历史的过程与结构』.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_____. 2013. “理解 ‘廖承志时代’: 战后中日关系的传播政治学.” 『现代传播: 中国传媒大学学报』 34(10), 28-34.
- _____. 2014. “东亚的 ‘脱战后’ 与中日交流的转型.” 『日本学刊』 3, 21-35.
- _____. 2014. “战后东亚秩序的 ‘帝国’ 结构原理: 从 ‘阵营对抗’ 到 ‘正常化’ .” 『开放时代』 6, 126-151.
- _____. 2015. “钓鱼岛问题的 “战后处理论” 话语建构.” 『日本学刊』 1, 55-83.
- 林晓光. 2012. “中日邦交正常化过程中的日本公明党和 ‘竹入笔记’ .” 『当代中国史研究』 5, 94-100.
- 孙乃民. 2006. 『中日關係史』 第3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吳祖勝, 總策劃, 陳立文(編). 2013. 『蔣中正與民國外交II』. 台灣: 國立中正紀念堂管理處.
- 林曉光. 2003. 『日本政府開發援助與中日關係』.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_____. 2008. “《中日和平友好条约》的签订.” 『当代中国史研究』 6, 75-80.
- 田桓, 纪朝钦, 蒋立峰. 1997. 『战后中日关系文献集1971-1995』.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朱建荣. 2013. “辨析日本关于钓鱼岛主权主张的结构性缺陷.” 『日本学刊』 1, 32-34.
- _____. 2014. “对日 ‘两分法’ 过时了吗?——历史沿革, 内涵变迁及其与时俱进之探讨.” 『日本学刊』 4, 21-47.
- 陳鵬仁. 2002. 『中日問題論文集』. 台灣: 水牛.
- 台灣教授協會. 2009. 『台灣國家定位論壇』. 台灣: 前衛.
- _____. 2010. 『中華民國流亡台灣60年暨戰後台灣國際處境』. 台灣: 前衛.
- 冯瑞云, 高秀清, 王升. 2006. 『中日关系史』 第三卷.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何理(編). 1989. 『中華人民共和國史』. 北京: 檔案出版社.

<인터넷 자료>

- 일문 사이트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 (검색일: 2015.9.15.)

日本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2012

<http://www8.cao.go.jp/survey/h24/h24-gaiko/2-1.html> (검색일: 2015.9.15.)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2009. データベース “世界と日本.”

<http://www.ioc.u-tokyo.ac.jp/~worldjpn/> (검색일: 2015.9.15.)

日本外務省. 1973. “外交青書.”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index.html> (검색일: 2015.9.15.)

日本外務省. 2005. “対中国ODAに関する基礎資料.”

<http://www.mofa.go.jp/mofaj/gaiko/oda/data/chiiki/china.html> (검색일: 2015.9.15.)

MOFAJ. 2006. “60 Years: The Path of a Nation Striving for Global Peace.”

<http://www.mofa.go.jp/policy/postwar/pamph60.pdf> (검색일: 2015.9.15.)

日本朝日新聞 <http://www.asahi.com/> (검색일: 2015.9.15.)

NNA.ASIA アジアの経済ビジネス情報(2010) 【第44回】 “日系商社員の逮捕”, 【第45回】 “ある不可解な商社” .

<http://news.nna.jp/> (검색일: 2015.4.15.)

矢吹晋China Watch & Asakawa Studies Room.

<http://www25.big.or.jp/~yabuki/> (검색일: 2015.9.15.)

日本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index.html> (검색일: 2015.9.15.)

川島真研究室. <http://www.kawashimashin.com/> (검색일: 2015.9.15.)

- 중문 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中华人民共和国与各国建立外交关系日期简表”

http://www.gov.cn/test/2012-04/20/content_2117961.htm (검색일: 2015.9.15.)

中華民國外交部

<http://www.mofa.gov.tw/Official/Home/Index> (검색일: 2015.9.15.)

人民数据库资料

<http://data.people.com.cn> (검색일: 2015.9.15.)

朝日新聞中文网

<http://asahichinese.com/> (검색일: 2015.9.15.)

- 영문 사이트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1950-1972. “Meeting Records” ,
“Resolutions” .

<http://www.un.org/documents/resga.htm> (검색일: 2015.9.15.)

The United Nations. 1950-1972. “Voting Results”

<http://unbisnet.un.org/#voterecords> (검색일: 2015.9.15.)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Volume V, United Nations,
1969-1972”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 (검색일: 2015.9.15.)

<부록 1> 중일관계 기본 연표 (1949-1972)

연도	국제관계	중국	중일관계	일본
1949		10.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2.7 중화민국 대만 이전	8.1 중일무역촉진의원연맹 발족	
1950	6.25 한국전쟁발발	1.6 영국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2.14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조인 8.1 맥아더 대만해협유지 성명 10.25 중화인민공화국 한국전쟁 참여		
1951	2.1 유엔, 중화인민공화국을 침략국으로 인정 9.4~9.8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개최 9.8 강화조약에 일본 포함 49개국서명 (52.4.28 발효)			9.8 일미안전보장조약 조인 12.24 요시다시게루 수상이 딜레스 국무성고문에 서한발송(요시다서한)
1952	4월 모스크바 국제경제회의 개최		4.24 일대통상협정 연장 4.28 일화평화조약조인(8.5발효)	1.16 요시다서한 공표 4월 일본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직

	7월 친콰 설치 11.1 미국, 최초 수소 폭탄실험		6.1 제1차 일중민간무역협정조인	11.14 일본이 코콰 가입
1953	7.27 한국전쟁 휴전협 정조인 8.8 소련, 수소폭탄보 유 발표		10.29 제2차 일중민간무역협정조인	
1954		9.3 1차 대만해협위기 12.2 미화상호방위조약조인		9.22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결성 12.10 하토야마이치로 내각성립
1955	4.18~4.24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12.13 소련, 일본의 유 엔가입 거부권		3.15 일화항공협정조인 3.29 제3차 일중민간무역협정교섭(5.4조인) 4.22 일화신통상협정조인	11.15 자유민주당 결성(보수합동)
1956			4.15 대만친선사절단 일본방문 5.29 일화무역협정 조인 여름, 중국이 1000명 이상의 일본인전범 석방, 송환	10.19. 일소공동선언 조인(12.12 발 효) 12.18. 일본 유엔가입 12.23 이시바시탄잔 내각 성립
1957	10.4 소련, 인공위성 발사성공	9.20~10.9 중국 8기확대3중전회개최	3.12 일화협력위원회 설립 6.2-6.4 기시수상 대만방문, 장제스와 회담	2.25 기시노부스케 내각성립
1958		5.5~5.23 중국공산당 제8회 전국대표 대회(당대회) 제2회 회기개최, 대약	3.5 제4차 일중민간무역협정 조인 3.14 중화민국이 일화통상회담중지통고	

		진정책 결정. 8.23 제2차 대만해협위기	4.9 대만, 대일통상금지 해제 5.2 나가사키국기사건 발생 5.21 일화무역 취결 조인	
1959	9.25 미소 정상 캠프 데이비스 회담	6.20 소련이 중소국방신기술 협정 파기 통고	3.3 중화민국, 일본에 대중무역 비난 12.27 요시다 대만방문 9월 이시바시탄잔 전수상이 방중하여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	
1960		5.20 장제스 제3기 총통 취임 6.18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만 방문 7.16, 소련, 중국에서 전문가귀환통고	2.28 일본, 대만청년사 결사. 3.28 일화무역회담개시 8.27 저우언라이 총리가 일중 ‘무역3원칙’	1.19 신일미안전보장조약 조인 7.19 이케다하야토 내각 성립
1961	4.12 소련, 유인우주선 지구일주 성공 12.16 유엔, 중국대표권문제 중요사항 가결	10.19 제22회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저우언라이 총리가 후루시초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를 비판	6.23 일화무역신협정 조인 8.1~8.2 기시전수상 대만방문, 장제스 회담	
1962	10.22~10.28 쿠바 미사일 위기	1.11~2.7 중국공산당 중앙광대공작회의 개최, 류샤오치 국가주석이 대약진정책 비판, 마오쩌둥도 자기비판 10.20. 중인 국경무력충돌	9.19 마츠무라켄조 의원이 방중, 저우언라이와 회담. 오카자키구상에 합의 10.9 장제스, 일본의 대중무역정책 비난 11.9 라오청즈와 다카자키 다쓰노스케가 일중중합무역에관한각서에 조인(LT무역개시) 11.17 대만, 대일차관교섭 중지 통고	

1963	8.5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 조인 11.22 케네디 암살	9.6 장칭궈 방미, 케네디와 회담 10.7 주홍경사건	8.23 일본, 대중 플랜트 연불수출 각의결정 9.21 대만, 대중 비닐론플랜트 수출 연불인허에 항의, 대사소환. 12.30 중화민국, 주홍경사건 항의, 주일대사 소환	
1964	8.2 북베트남이 미주둔함을 어뢰공격(통킹만사건)	1.27 프랑스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교정상화 2.10 중화민국 프랑스와 단교 10.16 중국이 원폭실험 성공	1.10 중화민국, 일본제품 신규 정부매입 일시정지 2.23~2.27 요시다시게루 전수상과 장제스 회담 4.4 요시다가 ‘중공대책요강안’에 동의하는 서한을 송부(제2차 요시다서한 1964년) 5.7 요시다가 ‘요시다서한 송부 7.3~7.5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 대만방문 7.15 중화민국 대일 매입정지조치 해제	7.19 일본공산당이 소련공산당과 결정적 대립 10.10 올림픽 도쿄대회 개최(~24일) 11.9 사토에이사쿠 내각 성립
1965	2.7 미국이 북폭 개시 3.7 미, 남베트남 다낭에 상륙		4.26 일화엔차관교섭이 타결, 협정체결	
1966		5월, 문화대혁명 시작 5.20 장제스 제4기 총통 취임 8.1~8.12 중공 8기 11전회개최 10.27 중공, 핵미사일 발사실험 성공	3월, 일본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관계 단절	

1967	7.1 EC 발족 8.8 아세안 결성	6.17 중국 수소폭탄 실험 성공	9.7~9.9 사토수상 대만 방문, 장제스와 회담. 11.27~12.2 장칭귀 국방부장 방일	10.20 요시다 수상 서거 11.12 사토에이사쿠 수상 방미, 존슨대통령과 정상회담 11.15 일미공동성명 발표(2-3년내 오키나와 반환, 1년 이내 오가사하라 제도 반환 합의)
1968	6.12 핵확산방지조약(NPT) 채택, 조인(7.1) 가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동중국해 해역에서 대규모 석유, 천연가스전매장의 가능성 발표		2.8 LT무역연장교섭 개시 3.6 일중 관서무역으로 개칭	4.5 미일 오가사하라 제도 반환협정 조인
1969	7.20 미국 아폴로 달 착륙 7.25 닉슨독트린	3.2 전바오다오(다만스키섬)에서 중소무력충돌 4.1~4.24 중국공산당 제9회 당대회 미제국주의 타도 명기 당규약 채택 7.8 고르진스키섬에서 중소무력충돌 8.13 중앙아시아에서 중소무력충돌 9.23 중공 지하 핵실험성공		11.17~11.21 사토수상 방미, 닉슨대통령과 정상회담 11.21 일미공동성명발표(일미안보조약 유지, 한국조항, 대만조항 강조)
1970		10.13 캐나다, 중국과 국교수립, 중	4.19 관서무역방중대표단(마츠무라젠조단	

		화민국과 단교 11.16 이탈리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수립, 중화민국과 단교	장)으로 저우언라이 총리가 저우4조건 제시 7.6~7.8 제15회 일화협력위원회 개최, 저우4조건 비난 8.10 아이치외상, 중화민국의 미국 석유회사에 센카쿠제도 석유조사허가에 항의 12.9 일중국교회복축진의원연맹발족	
1971	8.15 닉슨대통령이 금달러 교환정지, 10%의 수입과징금 발표(제2차 닉슨쇼크)	4.7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한 미국탁구팀이 중국에 초청. 미중 평풍외교. 7.9~7.11 키신저 미대통령보좌관 극비방중 7.15 닉슨대통령이 키신저 방중과 자신의 방중예정 발표.(1차 닉슨쇼크) 10.25 중국 유엔가맹결정, 국부는 유엔탈퇴 성명 10.31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대표권 획득	7.25 일화협력위원회 제1회 상임위원회 도쿄 개최 8.9 일화 제2차차관공여문서 교환 12.20 제1회 일화중국대륙문제연구토론회 개최 12.30 중국이 외교부성명으로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 주장	6.17 오키나와 반환협정 조인 11.24 일본이 비핵3원칙을 국회결의
1972		2.21~2.27 닉슨대통령 방중 2.27 미중공동성명(상해커뮤니케)발	5.9 중화민국, 센카쿠제도 일본반환에 항의 성명	5.15 오키나와 시정권이 일본에 반환(오키나와현발족)

		표 5.20 장제스, 제5기 총통 취임 6.1 장칭귀, 행정원장 취임.	6.23 중화민국, 일본수출입은행과 엔차관조인 7.27 다케이리 요시카츠 공명당위원장 방중, 저우언라이와 회담 9.17-9.19 시이나 특사 대만방문 9.25 다나카가쿠에이 수상 방중 9.29 일중공동성명 조인 9.29 오히라외상이 일화평화조약은 존속의 의의를 잃어 종료한다고 표명 9.29 대만이 일본과의 국교단절을 선언 10.29 일중관서무역협정 조인 11.21 일중경제협회설립 12.1. 타이베이에서 일본의 교류협회, 도쿄에 대만 아동(亞東)관계협회설립	7.7 다나카가쿠에이 내각 성립
--	--	---	---	-------------------

* 출처: 分良成 外 2013, 262-265; 川島真 外 2009, 17-19 참조 필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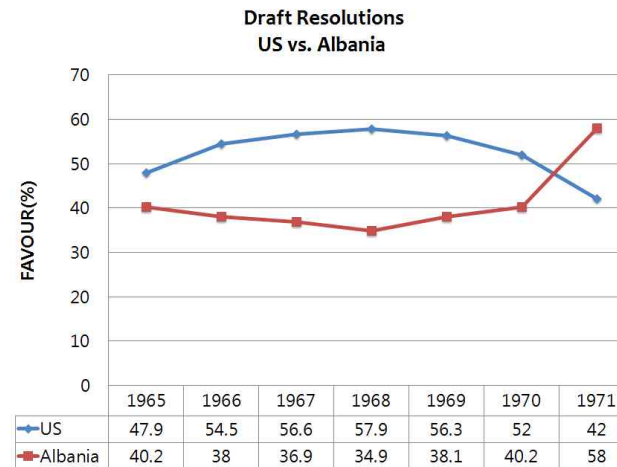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 관련 자료

〈부록 2-1〉 주요국의 중국대표권 문제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 결과(1965-1971)

년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총회 회기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결의안	A/RES/2025	A/RES/2159	A/RES/2271	A/RES/2389	A/RES/2500	A/RES/2642	A/RES/2758
다수의견	Y (47.9%)	Y (54.5%)	Y (56.6%)	Y (57.9%)	Y (56.3%)	Y (52.2%)	Y (58.0%)
China	Y	Y	Y	Y	Y	Y	-
미국	Y	Y	Y	Y	Y	Y	N
일본	Y	Y	Y	Y	Y	Y	N
소련	N	N	N	N	N	N	Y
프랑스	N	N	N	N	N	N	Y
영국	Y	Y	Y	Y	Y	Y	Y
캐나다	Y	Y	Y	Y	Y	Y	Y
이탈리아	Y	Y	Y	Y	Y	Y	Y

* The United Nations 2013;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1966-1972년 참조 필자작성

<부록 2-2> 미국, 일본제안 결의안과 알바니아제안 결의안의 투표 결과 비교(1965-1971) (단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미국,일본 안	47.9	41.9	54.5	39.7	56.6	39.3	57.9	37.3	56.3	38.1	52.0	40.9	42	45
알바니아안	40.2	40.2	38.0	47.1	36.9	47.5	34.9	46.0	38.1	44.4	40.2	38.6	58.0	26.7

* The United Nations 2013;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1966-1972년 참조 필자작성

<부록 2-3>1970년~1971년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투표 행위 유형

1970 1971		A/RES/2758(XXVI)				
		Pro PRC (Favour)	Anti PRC (Against)	Abs	Non (New)	TOTAL
A/RES/2642(XXV)	Pro PRC (against)	51	0	0	1	52
	Anti PRC (Favour)	19	33	12	2	66
	Abs	4	1	2	0	7
	Non (New)	2	1	3	2	2(6)
	TOTAL	76	35	17	3/5	127/131

* 자료: The United Nations ‘Voting Results’ 참고 필자 작성.

1. 그룹1(Pro-Pro):

AFGHANISTAN, ALBANIA, ALGERIA, BULGARIA, BURMA, BURUNDI, BYELORUSSIAN SSR, CEYLON, CHILE, CONGO (BRAZZAVILLE), CUBA, CZECHOSLOVAKIA, DENMARK, EQUATORIAL GUINEA, ETHIOPIA, FINLAND, FRANCE, GHANA, GUINEA, HUNGARY, INDIA, IRAQ, KENYA, KUWAIT, LIBYAN ARAB REPUBLIC, MALAYSIA, MALI, MAURITANIA, MONGOLIA, MOROCCO, NEPAL, NIGERIA, NORWAY, PAKISTAN, PERU, POLAND, ROMANIA, SINGAPORE, SOMALIA, SUDAN, SWEDEN, SYRIAN ARAB REPUBLIC, TUNISIA, UGANDA, UKRAINIAN SSR,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SSR, YEMEN, DEMOCRATIC YEMEN, YUGOSLAVIA, ZAMBIA

2. 그룹2(Anti-Anti) : AUSTRALIA, BOLIVIA, BRAZIL, CENTRAL AFRICAN REPUBLIC, CONGO (LEOPOLDVILLE), COSTA RICA, DAHOMEY,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ABON, GAMBIA, GUATEMALA, HAITI, HONDURAS, IVORY COAST, JAPAN,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TA, NEW ZEALAND, NICARAGUA, NIGER, PARAGUAY, PHILIPPINES, SAUDI ARABIA, SOUTH AFRICA, SWAZILAND, UNITED STATES, UPPER VOLTA, URUGUAY, VENEZUELA

3. 그룹3(Anti-Pro) : AUSTRIA, BELGIUM, BOTSWANA, CANADA, ECUADOR, ICELAND, IRAN, IRELAND, ISRAEL, ITALY, LAOS, MEXICO, NETHERLANDS, RWANDA, SENEGAL, SIERRA LEONE, TOGO, TURKEY, UNITED KINGDOM

4. 그룹4(Anti-Abstention) : ARGENTINA, CYPRUS, COLOMBIA, FIJI, GREECE, JAMAICA, JORDAN, LEBANON, LUXEMBOURG, PANAMA, SPAIN, THAILAND

<부록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외교관계 수립현황

<부록 3-1> 중화인민공화국 인정 국가 및 정부 목록(연도순)

순번	지역	국가	외교관계수립일
1	유럽	소련	1949.10.02
2	유럽	불가리아	1949.10.04
3	유럽	루마니아	1949.10.05
4	아시아	북한	1949.10.06
5	유럽	체코	1949.10.06
6	유럽	헝가리	1949.10.06
7	유럽	슬로바키아	1949.10.06
8	유럽	폴란드	1949.10.07
9	아시아	몽골	1949.10.16
10	유럽	알바니아	1949.11.23
11	아시아	남베트남	1950.01.18
12	아시아	인도	1950.04.01
13	아시아	인도네시아	1950.04.13
14	유럽	스웨덴	1950.05.09

15	유럽	덴마크	1950.05.11
16	아시아	버마(미얀마)	1950.06.08
17	유럽	리히텐슈타인	1950.09.14
18	유럽	스위스	1950.09.14
19	유럽	핀란드	1950.10.28
20	아시아	파키스탄	1951.05.21
21	유럽	노르웨이	1954.10.05
22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1955.01.20
23	아시아	네팔	1955.08.01
24	아프리카	이집트	1956.05.30
25	아시아	시리아	1956.08.01
26	아시아	예멘	1956.09.24
27	아시아	스리랑카	1957.02.07
28	아시아	캄보디아	1958.07.19
29	아시아	이라크	1958.08.25
30	아프리카	모로코	1958.11.01
31	아프리카	알제리	1958.12.20
32	아프리카	수단	1959.02.04

33	아프리카	기니	1959.10.04
34	아프리카	가나	1960.07.05
35	아메리카	쿠바	1960.09.28
36	아프리카	말리	1960.10.25
37	아프리카	소말리아	1960.12.14
38	아프리카	콩고(Leopoldville)	1961.02.20
39	아시아	라오스	1961.04.25
40	아프리카	우간다	1962.10.18
41	아프리카	케냐	1963.12.14
42	아프리카	부룬디	1963.12.21
43	아프리카	튀니지	1964.01.10
44	유럽	프랑스	1964.01.27
45	아프리카	콩고(Brazzaville)	1964.02.22
46	아프리카	탄자니아	1964.04.26
47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1964.09.29
48	아프리카	잠비아	1964.10.29
49	아프리카	베냉	1964.11.12
50	아프리카	모리타니	1965.07.19

51	아메리카	캐나다	1970.10.13
52	아프리카	적도기니	1970.10.15
53	유럽	이탈리아	1970.11.06
5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1970.11.24
55	아메리카	칠레	1970.12.15
56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971.02.10
57	아시아	쿠웨이트	1971.03.22
58	아프리카	카메룬	1971.03.26
59	유럽	산마리노	1971.05.06
60	유럽	오스트리아	1971.05.28
61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1971.07.29
62	아시아	터키	1971.08.04
63	아시아	이란	1971.08.16
64	유럽	벨기에	1971.10.25
65	아메리카	페루	1971.11.02
66	아시아	레바논	1971.11.09
67	아프리카	르완다	1971.11.12
68	아프리카	세네갈	1971.12.07

69	유럽	아이슬란드	1971.12.08
70	유럽	키프로스	1971.12.14
71	유럽	몰타	1972.01.31
72	아메리카	멕시코	1972.02.14
73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1972.02.19
74	유럽	영국	1972.03.13
75	아프리카	모리셔스	1972.04.15
76	유럽	네덜란드	1972.05.18
77	유럽	그리스	1972.06.05
78	아메리카	가이아나	1972.06.27
79	아프리카	토고	1972.09.19
80	아시아	일본	1972.09.29
81	유럽	독일	1972.10.11
82	아시아	몰디브	1972.10.14
83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1972.11.06
84	유럽	룩셈부르크	1972.11.16
85	아메리카	자메이카	1972.11.21
86	아프리카	차드	1972.11.28

87	오세아니아	호주	1972.12.21
88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972.12.22
89	유럽	스페인	1973.03.09
90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1974.03.15
91	아프리카	가봉	1974.04.20
92	아시아	말레이시아	1974.05.31
93	아메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1974.06.20
94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1974.06.28
95	아프리카	니제르	1974.07.20
96	아메리카	브라질	1974.08.15
97	아프리카	보츠와나	1975.01.06
98	아시아	필리핀	1975.06.09
99	아프리카	모잠비크	1975.06.25
100	아시아	태국	1975.07.01
101	아시아	방글라데시	1975.10.04
102	오세아니아	피지	1975.11.05
103	오세아니아	사모아	1975.11.06
104	아프리카	코모로	1975.11.13

105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1976.04.25
106	아메리카	수리남	1976.05.28
107	아프리카	세이셸	1976.06.30
108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1976.10.12
109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1977.02.17
110	아시아	요르단	1977.04.07
111	아메리카	바베이도스	1977.05.30
112	아시아	오만	1978.05.25
113	아프리카	리비아	1978.08.09
114	아메리카	미국	1979.01.01
115	아프리카	지부티	1979.01.08
116	유럽	포르투갈	1979.02.08
117	유럽	아일랜드	1979.06.22
118	아메리카	에콰도르	1980.01.02
119	아메리카	콜롬비아	1980.02.07
120	아프리카	짐바브웨	1980.04.18
121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1982.03.26
122	아메리카	앤티가 바부다	1983.01.01

123	아프리카	앙골라	1983.01.12
124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1983.03.02
125	아프리카	레소토	1983.04.30
126	아시아	아랍에미리트	1984.11.01
127	아메리카	볼리비아	1985.07.09
128	아메리카	그레나다	1985.10.01
129	아메리카	우루과이	1988.02.03
130	아시아	카타르	1988.07.09
131	아시아	팔레스타인	1988.11.20
132	아시아	바레인	1989.04.18
133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1989.09.11
134	아프리카	나미비아	1990.03.22
135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1990.07.21
136	아시아	싱가포르	1990.10.03
137	유럽	에스토니아	1991.09.11
138	유럽	라트비아	1991.09.12
139	유럽	리투아니아	1991.09.14
140	아시아	브루나이	1991.09.30

141	아시아	우즈베키스탄	1992.01.02
142	아시아	카자흐스탄	1992.01.03
143	아시아	타지키스탄	1992.01.04
144	유럽	우크라이나	1992.01.04
145	아시아	키르기스스탄	1992.01.05
146	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1992.01.06
147	유럽	벨라루스	1992.01.20
148	아시아	이스라엘	1992.01.24
149	유럽	모르도바	1992.01.30
150	아시아	아제르바이잔	1992.04.02
151	아시아	아르메니아	1992.04.06
152	유럽	세르비아	1992.04.28
153	유럽	슬로베니아	1992.05.12
154	유럽	크로아티아	1992.05.13
155	아시아	그루지야	1992.06.09
156	아시아	한국	1992.08.24
157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1993.05.24
158	유럽	마케도니아	1993.10.12

159	유럽	안도라	1994.06.29
160	유럽	모나코	1995.01.16
161	유럽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5.04.03
162	아메리카	바하마	1997.05.23
163	오세아니아	쿡 제도	1997.07.25
164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998.01.01
165	오세아니아	통가	1998.11.02
166	아시아	동티모르	2002.05.20
167	아메리카	도미니카	2004.03.23
168	유럽	몬테네그로	2006.07.06
169	아메리카	코스타리카	2007.06.01
170	오세아니아	니우에	2007.12.12
171	아프리카	말라위	2007.12.28
172	아프리카	남수단	2011.07.09

*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3.

〈부록 3-2〉 중화민국 승인 22개 국가(지역별)

동아시아 및 태평양 (6개국)	키리바시
	나우루어
	솔로몬제도
	마셜 군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
	투발루
아프리카 (3개국)	부르키나 파소
	상투 메 프린시 페 민주 공화국
	스와질란드
유럽 (1개국)	교황청
아메리카대륙 (12개국)	벨리즈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출처: 中華民國外交部

<http://www.mofa.gov.tw/AlliesIndex.aspx?n=0757912EB2F1C601&sms=26470E539B6FA395> (검색일:
2015년 9월 15일)

Abstract

Struggle for Recognition in the Sino-Japanese Relations: Japan's Foreign Policy toward China's One China Policy (1949-1972)

Oh, Seung-He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plains Japan's foreign policy toward China in terms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It focuses on the politics of recognition on the level of Sino-Japanese relations. The research analyzes Japan's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the recognizing of the China policy with four case stud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in 1949, the issue of "Recognizing China" has been problematic due to the claim to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government by both the PRC and the Republic of China (ROC). Both governments required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 only one government as the Chinese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o-called "One China Principle." However, Japan tried to recognize both governments based on the diverse interpretations of the One China principle. This research focuses on Japan's original ideas on the recognition policy and its variation from 1949, the establishment of the PRC, to 1972 Sino-Japanese normalization.

Japan's policy on recognizing China seemed inconstant and ambiguous. To make it clear, this research specifies the concept of recognition based on the theories of recognition of Hegel, Mead and Honneth. Then, it draws on an analytic framework with the concepts of "struggle for recognition," "self-justification" and "diplomatic hypocrisy." Self-justification is analyzed with four classified types

insisting on international morality (IM), Cold War ideology (CI), regional cooperation (RC), and history and culture (HC). And diplomatic hypocrisy came from the concept of organized hypocrisy by Stephen Krasner, and it is elaborated with four techniques—shelving, layering, demarcation, and iridescence.

There are four case studies applying the research frameworks to Sino-Japanese relations. In the first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was faced with the issue of determining one Chinese government to sign the San Francisco treaty in 1951. The second case is about the participation of PRC in the 1964 Tokyo Olympics. The third case deals with Japan's position on the PRC's entry into the UN in 1971. And the fourth case is Japan's recognizing China in the 1972 Sino-Japanese normalization.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Japan's recognition of China could be understood in the process of its struggle for recognition, from a defeated nation to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Japan's self-identification led to the policy of recognizing China.

Japan acknowledged PRC's existence in 1949 and PRC's rights in 1962. And Japan accepted PRC's lawful rights from 1971. On the other hand, Japan accepted ROC's lawful rights with the Japan-ROC peace treaty in 1952, respected ROC's rights in 1971, and then tried to preserve its rights in 1972. A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Japan acknowledged the One China Principle, but it tried not to accept the principle. But Japan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legal requirement of the One China Principle with the Sino-Japanese Joint Communiqué in 1972.

In terms of the self-justification, the IM type had been fundamental in every case study. IM was combined with CI (1952), RC (1964) and HC (1972), and led to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policy. And IM-centered self-justification reflects Japan's diplomatic hypocrisy. Finally, this research reveals that diplomatic hypocrisy has played ambivalent roles—as a facilitator and an obstacle—in Sino-Japanese relations.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논문작성지원금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